

서원의 보존관리 매뉴얼



2010. 12.

목 차

제1장 서원의 이해

1. 서원의 역사	1
2. 서원의 역사문화적 성격	3
3. 서원 건축의 시작과 변천	5
1) 시작과 변천	5
2) 서원의 배치형식	9
4. 서원 건축물의 가치	13
5. 서원 경관의 입지적 특성	14
1) 입지 경관	14
2) 전망 경관	16
3) 전저후고의 위요경관	17
4) 위계적으로 분절된 예 경관	18
5) 연못 경관	19
6) 안마당(중정) 경관	20
7) 수목식재 경관	20
8) 서원 주위 자연적 장소 경관	21

제2장 총 칙

1. 목 적	22
2. 관계법령	22
1) 문화재보호법	22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4
3)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26
4) 지침	26
3. 적용범위	26
4. 용어의 정의	27

제3장 서원의 기초조사

1. 필요성	28
2. 기초조사	28
1) 기초조사의 방향	28
2) 기초조사의 실시	29
3) 기초조사의 내용과 범위	29
4) 기초조사 수행자	31
3. 기초조사 기록보존 등 정리분류의 범위	31
1) 서원 기록보존의 분류	31
2) 서원 조사자료집 발간	36
3) 서원지 편찬 수행자	36
4) 서원지 편찬의 범위	36
5) 서원지의 활용	38

제4장 서원의 보존과 정비

1. 보존정비계획의 수립	39
1) 계획 수립의 원칙	40
2) 계획의 내용	40
3) 수립시기 및 주기	42
4) 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43
2. 서원의 보존정비	44
1) 보존·정비의 기본원칙	44
2) 서원 권역별 보수 및 정비	48
3. 보존·정비 절차	52
1) 계획의 수립	52
2) 설계도서의 작성	54
3) 설계감독관	55
4) 설계도서의 승인	55
5) 공사시행	55
6) 공사의 감독	56
7) 시공자의 직무	56

8) 장기계속공사	58
9) 준공검사	58
10) 수리보고서의 작성	58
※ 서원의 정비사례	61~67

제5장 서원의 관리 및 활용

1. 서원의 관리	68
1)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68
2) 서원 건축물관리	68
3) 고문서(서적)의 보존관리	73
4) 경관 보존관리	74
5) 자료의 보존관리	80
6) 제한을 통한 보존	80
7) 서원 보존관리대장 기록	80
8) 서원 건축물 안전점검	85
가) 필요성	85
나) 점검방법	85
다) 점검의 실시 및 기록	100
라) 점검 후 조치사항	104
2. 활용	105
1) 활용의 기본원칙	105
2) 서원 활용을 위한 정비계획의 수립 및 보고	105
3) 서원 활용의 방향 및 계획수립	105
4) 서원 활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사용	108
5) 사후평가	110

□ 참고자료

1. 국가지정문화재 서원	111
2.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서원	157
3. 비지정문화재 서원	160
4. 미철서원(47개) 일람표	169

1. 서원의 이해

01. 서원의 역사
02. 서원의 역사문화적 성격
03. 서원 건축의 시작과 변천
 - 시작과 변천
 - 서원의 배치형식
04. 서원 건축물의 가치
05. 서원 경관의 입지적 특성
 - 입지 경관
 - 전망 경관
 - 전저후고의 위요경관
 - 위계적으로 분절된 예 경관
 - 연못 경관
 - 안마당(중정) 경관
 - 수목식재 경관
 - 서원 주위 자연적 장소 경관



제1장 서원의 이해

1. 서원의 역사

조선시대 거듭된 사회로 지방에 은거한 사림들은 개별적으로 서재, 서당, 강사, 정사 등의 이름을 지닌 교육공간을 마련하고 성리학의 심화와 후학 양성에 노력하였다. 점차 그러한 학문 사상적 기반이 두터워짐에 따라 자신들의 조직을 재생산하고 교육할 수 있었으며, 비로소 선배 유학자들을 기리고 제사하는 사당의 기능을 통합한 서원을 창설하기 시작하였다. 초창기 서원은 조선조 재지사림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육거점이자 선현을 숭앙하는 제향처였다. 서원 건립 세력들은 바로 이러한 우주의 본질과 이성의 탐구, 즉 고도의 철학체계와 군자로서의 인격완성을 가르치는 내면적 학문연마에 주력하고자 서원을 건립하였던 것이다.



주세봉 초상(보물 717호)

1542년(중종 37) 풍기군수 주세봉(周世鵬)에 의해 최초로 백운동서원이 건립되고, 이황(李滉)에 의한 서원 보급운동과 함께 조선중기 이후 향촌사족들의 사회적 활동역량이 강화되면서 전국적인 서원 건립도 보편화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국가도 서원장려책을 실시, 독려하게 되자 서원건립은 매우 활발해졌다. 명종 대에 17개소에 불과했던 것이 선조 때에는 사액서원만도 100개를 넘을 정도로 급증하였고, 흔히 서원 남설기로 지칭되는 18세기에는 전국에 700여 개소에 이르는 서원이 건립·운영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초창기 도학적 연원과 내면적 학문연마의 서원 기능은 점차 변화되었는데, 제향하는 선현과 서원 운영 주체들의 성격에 따라 학연, 당파, 정치적 성향, 그리고 19세기 이후에는 문중적 이해까지 담보하는 복잡한 모습으로 변해갔다.

서원건립이 본격적으로 당파간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결부되기 시작한 것은 효종 대 이후 산림세력이 중앙정계에 진출하면서 부터이다. 서원은 이 시기 향촌유생들의 여론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였으며 따라서 각 정파의 입장에서는 서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본래의 교육적 기능보다는 향사의 기능이 위주가 되었으며, 경제적으로도 면세와 면역의 특권을 남용하여 국가 경제를 위축시키는 역기능도 생겨나게 되었다.

그런가하면 서원이 특정 가문이나 정파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구로 변화되자 향중 공문을 대변하거나 여론을 선도하던 기능마저 퇴색, 부정적 기구로 전락하기도 하였다. 이에 국가는 정책적으로 서원을 통제하게 되는데, 영조는 1741년(영조 17) 약 300여개의 서원을 혁파하는 조치를 강행하였고, 철종 조와 고종 조를 지나면서 전국 47개 서원을 제외한 모든 서원이 훼철(1871년, 고종 8)되기에 이르렀다.



소수서원(사적 55호)

[표1]서원 문화재 지정 현황 : 167건 (국가지정 9건, 시도지정 54건, 문화재자료 104)

(단위 : 건)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700	2	1	30	0	5	1	9	31	13	26	36	108	63	193	182	0
국가지정	사 적	9			1								1	1	1	4	1	
사도지정	시도유형문화재	19								5	3		2			5	4	
	시도기념물	34			1					3		3	1		7	12	7	
	시도민속자료	1														1		
문화재자료		104			3		1	1	1	4		1	14	21	8	15	35	
지정 계		167			5		1	1	1	12	3	4	18	22	16	37	47	
비지정		533	2	1	25		4		8	19	10	22	18	86	47	156	135	

2. 서원의 역사문화적 성격

서원은 복잡한 성격변화를 거치면서 400여 년을 존속한 우리나라의 대표적 교육기관이다. 물론 발전과 변화과정상 여러 모습으로 변화하기도 하지만, 본연적으로 조선후기 서원은 성리학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향촌문화의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 하였다. 또한 사설기관으로서 서원은 성현들을 모시는 사당 또는 사묘의 역할과 더불어 향약 등의 향촌 질서를 정하고 백성들을 계도하는 역할, 단순한 교육이 아닌 학문 연구와 발전을 선도했다.



소수서원(사적 55호)

보는 바와 같은 다양하고 중첩적인 기능들을 지니고 있었다.

유교문화는 인물과 사상, 철학과 정신, 학문과 가치관을 중시하는 정신사적 문화이다. 다시 말하면 서원의 가치는 유형의 건축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곳에서 생활하며 향유했던 사람과 정신, 그리고 문화적 시스템에 있다. 이는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문화이자 복합적인 가치로서, 서원문화의 본질이 바로 그것이었다고 보면 좋을 것이다. 이밖에도 서원은 향촌 지성들의 집회소로서 다음에서

■ 각 서원의 특별한 교육철학

현재 서원의 문화유산적 가치는 인물사와 고건축 분야에 국한되어 있고, 또한 서원 본연의 교육적 기능보다도 전통제례, 또는 원론적 유학의 본산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 서원과 사우가 지녔던 기능은 무엇보다도 교육적 기능이 중심이다. 서원의 고유 기능은 역시 지방교육의 상징적 기구로 강학과 장수를 근본으로 삼은 사학기구였다. 그리고 각 서원은 저마다 교육의 방식과 운영의 모습들이 약간씩 다르며, 이는 서원별로 특별한 교육방침이 엄연히 존재했던 개성적 공간이었다는 점이다. 지역별 학맥의 개성적인 특성은 서원의 운영과 교육방침에 그대로 투영되었다.

■ 지성들의 집회소

서원은 조선시대 각 지방의 고급 인재들이 수시로 출입하고 접촉, 교류했던 상징적 기구였다. 서원 내에서 젊은 인재들과 그들의 선배들은 일방적 지식의 전수교육이 아닌 강론과 학문 토론의 장을 형성하였고 때로는 여론과 공론을 결집하는 집회소를 꾸리기도 하였다. 집회소로서 서원의 기능은 서원에서 배출한 인물들이나 서원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던 수많은 명칭의 각종 조직들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서원에는 당 시기의 지성사적 전통과 정신문화적 유서가 서려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서원을 문화적 길잡이로도 표현할 수 있겠다. 결국 이들 지성들 간의 유대와 결속력의 토대는 지연과 학연을 배경으로 하는 정치세력의 거점이 되기도 하였다.

■ 사회교육의 장소



함양남계서원(사적 499호)사당

조선초기 소학의 보급과 향약실시 등의 일련의 노력이 대부분 향교를 기반으로 정착되었다면, 조선 중기 이후에는 서원으로 그 주도권이 넘어 왔다. 사족활동의 거점은 바로 서원이었고, 서원에서 이루어지는 제향의례나 강학의례, 기타 여러 형태의 생활의례들은 서원이 사회교육의 실현처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처럼 서원에서의 교육은 보편타당한 가치관을 형성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는 향촌사회의 교화에 크게 공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도서관과 출판기능



필암서원(사적 242호)경장각

서원은 교육기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도서의 보존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원생들의 교육을 위해 소장된 도서에는 경서를 기본으로 유가, 역사, 전기가 주류를 이루었음은 물론이며, 특히 각 서원의 제향인물이나 그의 학맥을 잇는 인사들의 문집류 등의 자료들이 보존되었다. 또한 서원의 운영과 관련된 실무적인 고문서 자료들도 많이 보관되어 있는데, 당시 장서의 관리와 점검은 서원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였다. 한편 여러 서원에서는 경쟁적으로 서적을 출판하기도 하였는데, 서원이 도서의 보존기능에 더하여 서적의 출판과 배포라

는 새로운 기능을 겸하게 된 것이다. 이는 임진왜란 이후 상당량 소실된 서적에 대한 보강과, 추배된 제향인물에 대한 유고나 문집 등을 간행해야 하는 사명에서 비롯된 것이다.

■ 도덕적인 실천 장소

서원은 유교문화의 대표적 공간임과 동시에 유학자 개인에게는 ‘천인합일’의 인과 ‘천리절문’의 예를 실천하는 장소이다. 서원에서 유학자들은 배우며 쉬고 노닐며 축적하면서 그들의 가치관·세계관·자연관을 체득 인식하고자 했다. 이에 적합하도록 서원 입지를 선정하고, 경관과 장소를 조성하였다. 서원의 입지는 대체로 연고(선현의 강학처, 유허지, 씨족마을)가 있으면서도 배산임수에 천석이 있는 경승지를 선택하였다. 자연전망을 통해서 천인합일을 체득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원 전면엔 생기 있는 안을 설정하였으며, 경사 있는 지연지형은 상승감을 주는 진입로로 활용하였다. 누문과

강당에서 보이는 자연전망을 확보하고 주위 자연환경과의 조화(형국)를 각별히 중시하여 건물을 배



병산서원(사적 260호)

치하였다. 예의 실천 장소로 서원 내부공간을 만들고자, 위계에 따른 당하·계하의 차별, 비움과 채움의 장소, 오행의 순서, 우회로 활용 등으로 장소경관을 구성하였다. 이처럼 서원문화는 한국 유교문화의 다양성과 특성이 집약된 문화유산이다. 서원은 저명한 성리학자를 추승하고 제향하는 공간이자 지역의 교육,

의례의 거점 공간인 동시에 지성사적 문화전통을 대표하는 곳이었다. 즉 조선시대 선비의 학문성, 도덕적 실천성, 개성을 보여주며, 지역 문화의 역사성과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곳이 바로 서원인 것이다. 그리하여 서원은 유·무형의 다양한 문화유산(역사, 교육, 제향, 건축, 기록, 경관 등)들이 존재하며, 의례, 도서, 출판, 문화예술, 정치 등 복합적인 문화사가 이루어졌던 거점이었다. 서원은 한국 고유의 유교문화(‘한국식 유교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것이다.

3. 서원 건축의 시작과 변천

1) 시작과 변천



도산서원(사적 170호)장판각 내부

우리나라에서 서원은 원래 사문(斯文)의 진흥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강학 장소였다. 최초의 서원으로서 중종 38년(1543)에 세워진 백운동서원은 사묘의 부수적인 존재에 그쳤다. 그 후 퇴계 이황에 의해 강당과 사묘를 같이 갖는 형태를 취하면서 서원은 사자(士子)의 장수처(藏修處) 제공이 설립의 주된 목표가 되었고 사현(祀賢)은 부차적인 것이 되었다.

조선 중기에 들어와 서원이 형식화되

면서 그동안의 서당학원과는 성질을 달리하게 된다. 그것은 선현선사를 봉사하는 사묘를 겸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선현선사를 봉사하는‘사묘’와 자제들을 교육하는‘제’가 결합 성립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서원’이라는 기록이 처음 나타나는 것은 《삼국사기 권46 열전》이다. 이 기록에 나타나는 “서서원(瑞書院)”은 관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헌에 나타난 당시의 관직으로 ‘지서서감(知瑞書監)’, ‘서서랑(瑞書郎)’이라는 명칭이 있어 일종의 행정기관 이었던 것 같다. 고려 성종 때에는 평양에 ‘수서원(修書院)을 설립했다는 기록이 《고려사》에 있다. 이 수서원은 전적을 모아 수장하고, 필사본을 만들어 사생(師生)교육에 편리하도록 하는 기관이었다. 말하자면 일종의 장서각이었던 것이다. 서원이 본격적인 교육기관으로 정착된 시기는 조선 중기이다. 조선 초기에 서원이 있기는 하였으나 ‘祀’의 기능이 생략된 일종의 서당과 같은 것이었다. 《세종실록 18년 10월》에 “평안도관찰사가 보고하였는데 함중현의 강우양이라는 생원이 사사로이 서원을 만들어 학도를 가르친다(平安道觀察使啓咸從縣人生員姜友諒私置書院教授學徒)”라는 기록이 있다. 물론 이 서원은 제사기능 없이 학도를 가르치는 서당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이 당시 기록에 ‘서재(書齋)’, ‘사재(私齋)’와 같은 개인이 만든 강학처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조선초의 서원은 개인이 공부를 하면서 학도를 가르치는 서당의 기능을 넘지 않는 수준이었던 것이라 하겠다.



옥산서원(사적 154호)암수재



옥산서원(사적 154호)체인묘

사묘는 서원의 기능과 달리 별개로 발전되어 왔다. 사묘는 이미 삼국시대부터 있어왔고, 고려시대에 들어와 거의 일반화되다시피 많이 건립되었다. 고려말에 들어와 일반민가에까지 사묘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주자학의 전래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서재와 사묘는 각기 서로 다른 목적으로 발전되어왔던 것이다.

사묘의 기능과 강학기능이 합쳐진 본격적인 서원은 조선 중종38년(1543) 풍기군수 주세붕이 중국의 백록동서원을 본받아 창건한 백운동서원이 그 효시이다. 그 후 명종때에 이르러 군수였던 퇴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가에서 사액을 주는 사액서원이 생기게 되었다. 사액서원은 국가에서 서원 이름을 편액에 새겨 사사하면서 유지관리를 위하여 토지와 노비·전적을 내리고, 면역과 면세혜택을 주어 교화사업을 장려하려는 것이었다. 백운동서원은 ‘소수서원’이라는 사액과 함께 최초의 사액서원이 되었다. 그 후 많은 서원이 창건되었고, 조선조말 대원군의 서원훼철이 있기까지 무려 1173개나 되었다. 이 중 사액서원이 270개나 되었다.

서원 중에는 강학기능만 지니고 있던 서당이 발전하여 서원으로 변한 것들이 많다. 대표적인 것으로 도산서원(경북 안동), 덕천서원(경남 산청), 필암서원(전남 장성), 돈암서원(충남 논산), 노강서원(충남 논산) 외에 여러 곳이 있다. 초기의 서원건립 목적과 달리 후기로 내려오면서 서원의 본래 목적인 향사와 강학의 기능에서 강학기능이 작아져 심지어는 사묘만 건립하고 서원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이 향사기능만 지닌 서원은 문종의 세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건립된 경우도 많아 그 폐단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많은 서원이 만들어지면서 각종 폐단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자 영조때(1741) 한차례 규제를 하게 된다. 이 때 300여개의 사설서원을 없애는 정리가 이루어 졌다. 그 후에 창건되는 서원은 그리 많지 않았으나 서원의 폐해는 극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종8년(1871) 대원군은 극심한 서원의 폐해를 막기 위하여 전국에 47개소의 서원만 남기고 모두 훼손하는 정리를 감행하였다.



덕천서원(경상남도 유형문화재 89호)

정순목은 <한국 서원 교육제도 연구>에서 조선시대 서원의 변천과정을 3기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제1기는 16세기 중엽으로 이때를 ‘장수(藏修)우위시대’라고 한다. 이 시기의 서원은 본래의 기능인 학문 연구에 맞춰 건립하였다. 이에 따라 강학공간의 건물인 강당, 재, 장판각, 경각 등이 주로 건립되어 서원 내에서도 강학공간의 비율이 비교적 많았다. 대표적인 것으로 소수서원을 들 수 있다. 이 서원은 원래 불사가 있었던 자리에 건립하였다. 중심축이나 대칭적인 배치가 아니라 건물들이 산만하게 배치되어 있는 모습이다. 배치의 정형을 볼 수 없는 초기형태이다.



소수서원(사적 55호) 입구 숙수사지당간지주(보물 59호)



소수서원(사적 55호) 취한대

16세기 후반이 되면서 초기와는 달리 일정한 배치형태를 만들게 된다. 즉, 입지하는 장소는 배향인물이 강학하던 곳이나 또는 배향자와 관련 있는 위치에 점지하면서 공간의 중심성, 위계성을 엄격하게 유지하게 된다. 중심축선을 형성하거나 대칭적인 배치가 이때 나타나게 된다. 대표적인 것으로 도동서원, 옥산서원, 병산서원, 필암서원 등을 들 수 있다.



도동서원(사적 488호) 전경



옥산서원(사적 154호) 무변루

제2기는 17세기부터 18세기에 이르는 시기이다. 이때를 '향사(享祀)우위시대'라고 한다. 17세기 중엽부터 급격하게 늘어난 서원은 숙종조에 이르러서는 전국적으로 무려 427개나 창설되었다. 이러한 서원 남설은 결국 중요한 인재양성의 기능보다는 향사위주로 흐르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이 때문에 강학공간이 부실하게 만들어지고 교육과 관련된 부속건물이 생략되기도 하였다. 이시기의 대표적인 것으로 덕양서원, 덕봉서원, 흥암서원 등이 있다.



덕봉서원(경기도 시도유형 8호) 전경



흥암서원(경북 시도기념물 61호) 전경

제3기는 세기 이후의 시대로 서원의 남설로 인해 폐해가 나타나 결국 서원을 정비하게 된다. 이 시대를 ‘서원정비시대’라고 한다.

서원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향사, 강학의 목적이라기 보다는 피역(避役), 여흥의 처소로 변질되기도 하고 심지어 당쟁의 근거지로 변화되는 극심한 폐단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하여 고종 8년에 전국 47개 서원을 제외하고 모든 서원을 철폐하는 령을 내리게 되었다. 19세기 말부터 훼손되었던 서원이 복원되면서 그 중에는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강학기능보다는 향사기능만을 복원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조선시대 서원은 이와 같은 몇 개의 시기를 거치면서 변천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2) 서원의 배치형식

서원의 배치는 크게 두가지 기능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두가지 기능이라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향사기능과 강학기능이다. 즉, 사당이 있는 구역과 강학을 하는 강당 구역으로 구분된다. 배치는 또한 지형조건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렇다고 지형조건이 반드시 배치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형조건이 배치형태에 일반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라는 것이다. 배치형태는 향교에서와 같이 묘당공간과 강학공간의 위치관계에 따라 유형을 분리하게 된다. 가령 강학공간인 강당이 앞쪽에 있으면 전학후묘식 배치가 되고 사묘가 강당 앞에 있으면 전묘후학식 배치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향교에서는 나주향교와 같이 전면에 사묘가 있고 그 후면에 강당을 배치하는 특별한 경우는 있지만 서원에서 사묘가 강당 앞에 배치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간혹 좌우 측면에 나란히 배치되는 경우는 있다.



소수서원(사적 55호)-강학당과 문성공묘가 나란히 배치

서원의 공간구조는 크게 선현을 향사하는 ‘묘당 공간’과 자제를 교육하는 ‘강학 공간’으로 구분하는데 이와 같은 공간구조는 향교의 공간구조와 유사하다. 향교와 다른 것은 서원의 사묘에는 특정인물의 위폐나 영정을 봉안하고 향사를 지낸다. 향교의 사묘에는 어느 향교나 유사하게 중국의 공자를 비롯한 선현과 우리나라 유학자 18현을 봉안하는데, 이에 비해 서원에서는 특정한 인물을 배향하므로 서원마

다 배향인물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향교의 사묘 크기에 비해 서원의 사묘 크기는 작다. 향교의 묘당 공간 내에는 주 공간인 대성전 외에 동무와 서무가 배치되는 경우가 많지만 서원의 묘당 공간에는 부속건물이 거의 배치되지 않고 사묘만 두게 된다. 아주 특별한 경우 묘당구역 내에 전사청을 배치할 정도이다.



함양 남계서원(사적 499호) 전사청



필암서원(사적 242호) 내삼문

사묘 주위는 반드시 담으로 둘러싸고 정면 중심에 묘문(또는 신문)을 설치한다. 묘문은 대부분 삼문이나 일각문으로 만든다. 이와 같이 주위를 담으로 둘러싸게 되면 공간의 분위기가 엄숙해지고 행사를 치를 때 경건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사묘의 명칭도 향교는 어디나 공통된 명칭을 쓰는 반면 서원에서는 서원마다 서로 다른 명칭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소수서원은 문성공묘(文成公廟), 도산서원의 사우(사우)는 상덕사(尙德祠), 옥산서원은 체인묘(體仁廟), 필암서원은 우동사(祐東祠)로 명칭이 서로 다르다. 어떤 서원에서는 사당에 서원의 이름을 붙여 서원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같이 사우의 명칭은 대개 ○○廟, ○○, ○○書院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에서 ○○祠로 이름을 붙인 경우가 가장 많다.



소수서원(사적 55호) 문성공묘



필암서원(사적 242호) 우동사

서원의 두 번째 중요한 기능으로 강학기능을 들 수 있다. 강학기능은 서원내 강당과 동서 양재에서 이루어진다. 흔히 강학공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곳에서 원장이 기거하거나 학생들이 기거하기도 한다.

규모가 큰 서원의 경우 강당과 양재가 같이 있지만 규모가 작은 서원의 경우 강당만 있거나, 혹은 동서 양재만 있는 경우도 있다. 조선후기가 되면 강학공간을 두지 않고 사묘만 두고 서원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경우와 같이 서원 남설이 심했던 시기도 있었다. 이런 것은 엄밀히 서원 이라기보다는 사당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서원내 강당의 위치를 보면 대개 사묘 앞쪽에 두는데 간혹 사묘의 좌우에 두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지형조건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다. 가령 전후로 대지가 확보될 경우 앞쪽에 강당을 두고 뒤쪽에 사묘를 두는 ‘전학후묘(前學後廟)’식 배치형태가 되지만 전후로 대지를 확보할 수 없을 경우 좌측이나 우측에 나란히 사묘와 강당을 두는 ‘좌묘우학’이나 ‘좌학우묘’식 배치가 되기도 한다. 사묘를 강당 앞에 두는 배치형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좌묘우학 식 배치로는 죽정서원(竹亭書院), 수암서원(秀岩書院)이 있고, 좌학우묘식 배치로는 수림서원(繡林書院)을 든다. 이는 대개 후기에 건립된 것들이다.

강당의 명칭은 향교의 명륜당과 같이 공통적인 이름을 쓰지 않고 ○○堂, ○○書院, ○○講堂과 같이 서로 다른 이름을 쓴다. 도산서원의 경우 전교당(典教堂), 옥산서원에서는 구인당(求仁堂), 돈암서원에서는 응도당(應道堂), 무성서원에서는 무성서원(武城書院), 덕양서원에서는 덕양강당(德陽講堂)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 이 중에서 堂, 書院이라는 명칭이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다.



옥산서원(사적 154호) 구인당

서원 내 공간으로 전사청이 있다. 이 공간은 제향시 제수를 마련하거나 제기를 두기도 하는데 간혹 제기고로 겸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전사청은 사묘구역 내에 두지 않고 사묘와 가까운 곳에 별도로 배치해 둔다. 간혹 사묘구역 내에 두는 경우도 있는데 함양의 남계(濫溪)서원에서 볼 수 있다. 전사청을 이렇게 두는 배치는 다른 곳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장관각도 서원에서 볼 수 있는 건축물이다. 간혹 경장각(經藏閣), 어서각(御書閣)이라고도 하는데 선현의 문집을 보관하거나 문집을 펴내기 위한 판각분을 보관하는 곳이다. 일종의 도서 수장고라고 하겠다. 이 건물은 서고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의 위치와 건축구조에 각종 조건을 고려하게 된다. 예를들면 습기가 적고 통풍이 잘되는 위치에 자리잡고,

구조적으로도 습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바닥은 마루로 만들고 창의 크기는 통풍을 고려해 만들었다. 이러한 조건을 고려하여 장관각 전후로는 가능한 다른 건물을 띄워서 배치하고 건물을 둘 경우 바람이 잘 통하도록 배치하였다. 배치형태의 기본은 전면에 강당, 동서 양재 등 강학공간을 배치하고 후면에 구룡지를 대지로 조성하여 묘당공간을 둔다.



돈암서원(사적 363호) 장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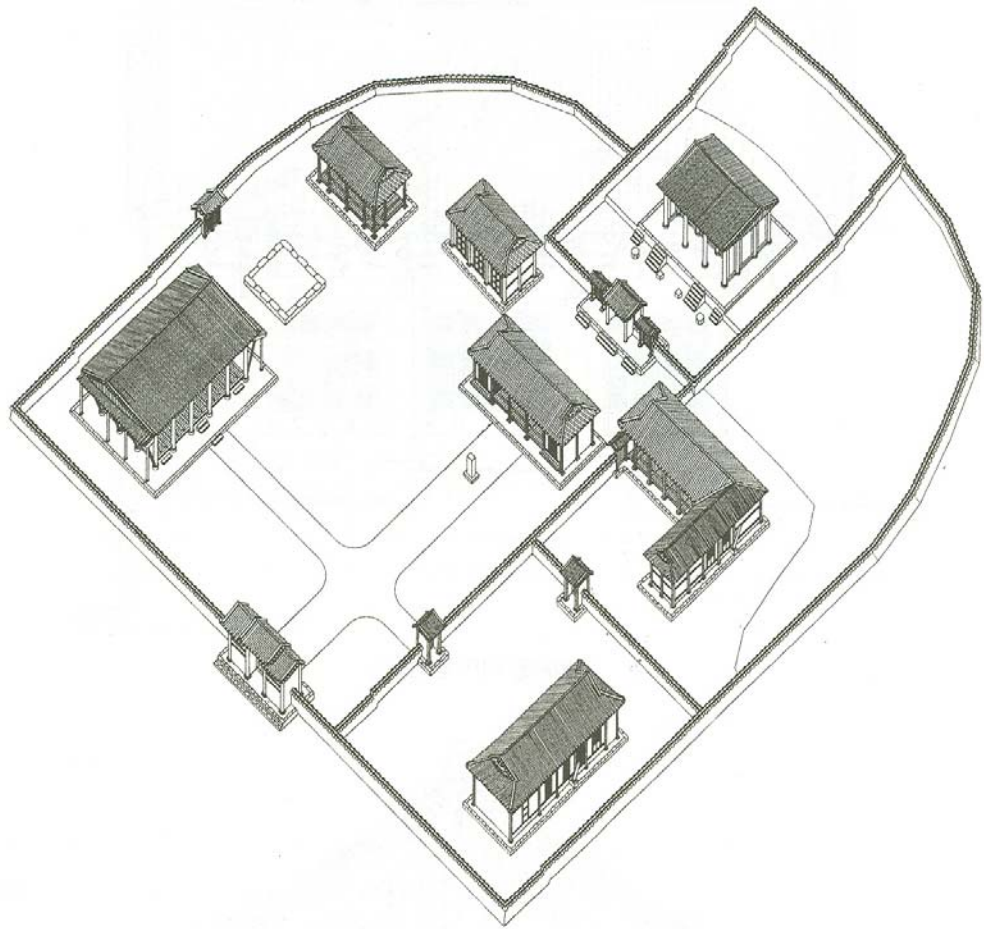
수직사는 한쪽 측면에 치우쳐 배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전학후묘식 배치라 하겠다. 이러한 전학후묘식 배치로는 안동 도산서원, 고산서원, 장성 필암서원, 논산 노강서원 등이 있고 전면에서 약간 치우쳐 있는 것으로 논산 돈암서원, 연기 합호서원 등을 들 수 있다. 강학공간을 묘당의 전면에 두지 않고 중심축에서 벗어나 배치되는 경우 즉, 묘당의 좌측이나 우측에 강당이 배치되는 것을 ‘좌묘우학(左廟右學)’, 또는 ‘좌학우묘(左學右廟)’식 배치라 한다. 강당을 두지 않고 사묘와 재실만 두는 경우도 있다. 재실이 강학기능을 지니고 있기에 강학공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서원으로서 완벽한 공간구조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강당과 동·서 양재 건물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건물 내에 두는 배치형태도 있다. 서원중에는 강학공간을 두지 않고 사당만을 배치한 경우도 있다. 이것은 물론 조선후기에 들어와 서원이 남설되면서 강학기능이 현저하게 축소되어 향사만을 위한 사당에 서원이름을 붙인 경우가 된다. 그 중에는 조선말에 훼손되었다가 복원하면서 강학공간이 필요 없어지자 사당만 복원한 경우, 원래 사당만 있었던 것을 그대로 복원한 경우, 새로 창건하면서 사당만 건립한 경우이다.

4. 서원 건축물의 가치

서원의 건축사적 가치는 조선시대 왕조시대의 시대상과 역사성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비록 현대사회가 되면서 서원의 기능은 상실되기는 했지만 건축은 원형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있다. 동북아 유교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나라들 중 서원건축의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되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이며, 그 중에서도 조선조말 훼손을 면한 47개 서원은 건축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서원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어떠한 역사적 인물이든, 역사적 사건이든 반드시 그 시대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기에 매우 중요한 장소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서원의 건축사적 가치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서원건축의 기술사적 가치와 양식사적 가치 또한 매우 높다. 우리나라 서원 중에는 조선 중기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고 있는 사례를 비롯하여 조선말까지 각 시대에 따라 건립된 사례가 현존하고 있다. 서원의 건축양식을 통해 당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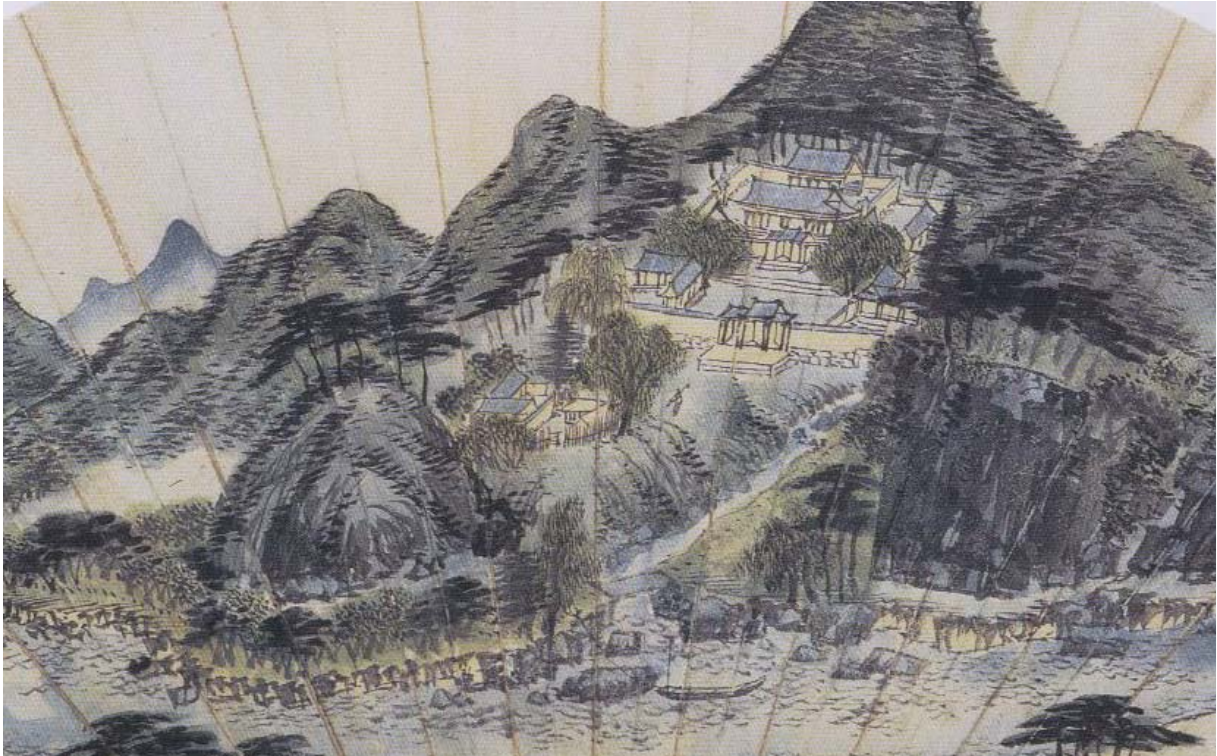
돈암서원 투상도

기술수준과 미학사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원의 건축사적 가치는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다. 서원 건축의 양식사와 기술사는 그 시대의 건축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면서 또한 그 시대의 문화사, 경제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서원건축은 시대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한 분야가 된다. 서원건축의 가장 큰 가치는 완전성과 진정성이다. 현존하는 서원 중에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 지정문화재가 있다. 지정된 서원은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건축적으로 완전성과 진정성이 다른 서원에 비해 특히 잘 유지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이 지정문화재에 대해 특별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문화재로 지정된 서원의 건축사적 가치는 다른 서원에 비해 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5. 서원 경관의 입지적 특성

서원에는 유교가 추구하는 가치인 ‘천인합일(仁)’을 체득하고 ‘천리의 절문(禮)’을 구현하는 경관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서원 경관을 해독하는 주요 경관 요소는 다음 여덟 개 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서원 입지 ②天人對待의 전망 경관 ③前低後高의 풍수적 위요경관 ④위계적으로 분절된 禮경관 ⑤서원의 연못 경관 ⑥비움과 인간적 규모의 안마당(中庭) 경관 ⑦간략한 식재 경관 ⑧서원 주위의 자연적 장소경관 등이다.



도산서원 입지 그림(결재 정선)

1) 입지경관

■ 자연성

우리나라 서원 입지의 가장 큰 특징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있는 곳에 입지한다는 자연성이다. 전면에 경지·강, 그리고 산이 있어 개방적이고 시원한 전면 경관과 여기서 마을에 다가오는 푸른 산색과 반짝이며 굽이쳐 흐르는 물색에서 생의를 깨닫고 마음을 넓히며 지혜를 함축하도록 하는 아름다운 산수경관이 서원의 필수적 입지 요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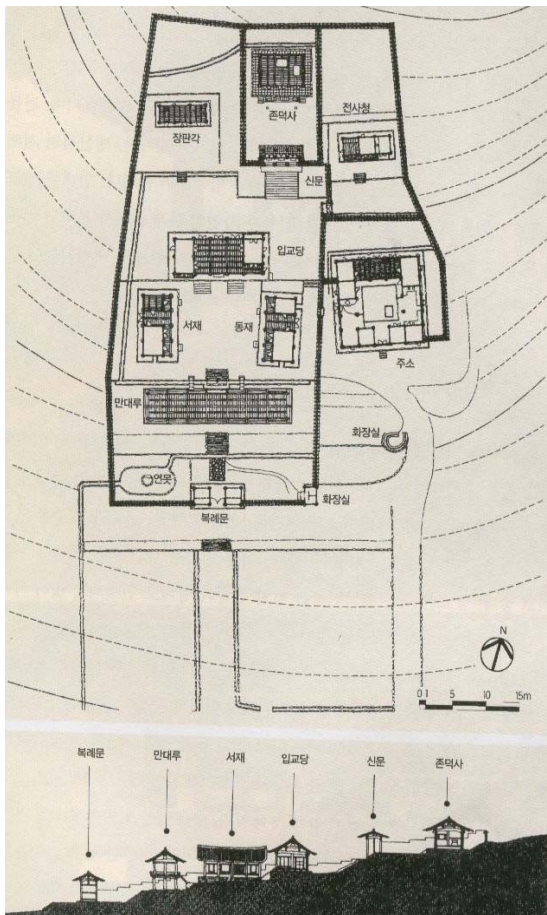
■ 전저후고의 경사지형

우리나라 서원의 다수는 앞이 낮고 뒤가 높은 전저후고의 경사지형에 입지한다. 평지에 세워진 서원도 배산구조를 하기 때문에 예외 없이 전저후고 지형의 서원과 같이 강당을 앞에 두고 사당을 뒤에 두는 입지구성을 취한다. 이는 성균관이나 나주향교에서 볼 수 있는 일부 향교의 전묘후학의 입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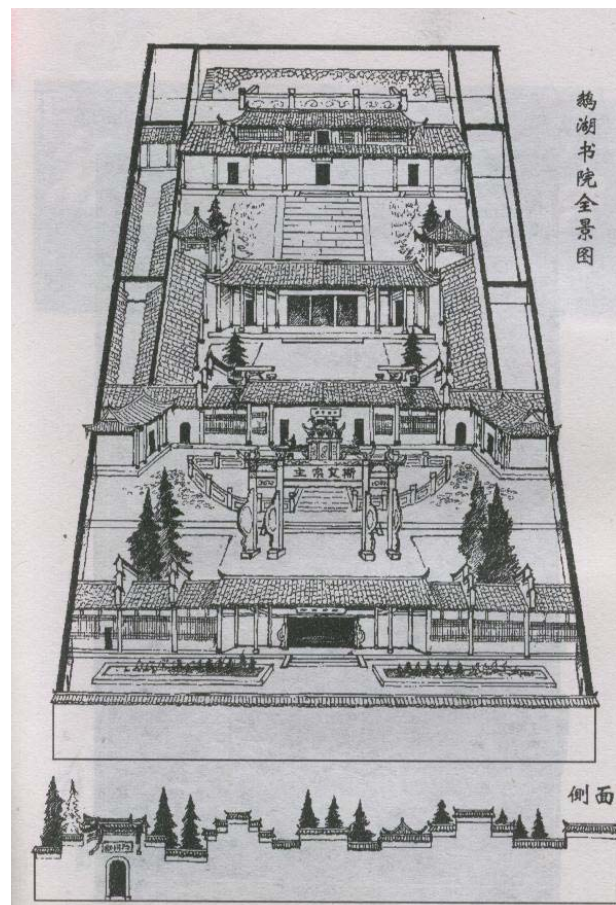
성과 다르다. 이러한 서원의 전저후고의 입지경관은 첫째 안에서 외부로 조망할 때 개방적 자연 경관 시계를 확보함으로써 다양한 장소에서 ‘천인합일’ 을 정감적으로 체득하는 것이 우리나라 서원의 중요한 특성이고 장점이다. 자연적 지형 경사를 따라 자신의 신체조건에 맞추어 올라가는 방식으로 서원에 진입하도록 하고 앞에서부터 외삼문-안마당-강당-사당의 순으로 건물을 배치함으로써, 진입과정에서 느끼는 상승감이 존경 경관에 대한 외경심과 자연스럽게 결합될 수 있다.



중국 아호서원 입지



병산서원 도면



중국 아호서원

■ 개방성

입지적 성격 때문에 우리나라 서원은 공공적 종교적 시설에서 흔히 나타나는 폐쇄성과는 반대로 매우 개방적이다. 낮은 담장과 벽 없는 기둥으로 외부와 차단되지 않는 마루 공간, 자연지형 지세에 순응하는 상대향과 복합적 축선 등으로 나타난 개방성과 자연성은 높은 담과 회랑으로 둘러져 있는 폐쇄적인 중국 서원과 다르다. 또한 이는 수행 기도 도량을 벽으로 구획하고, 내향적인 불교사찰과도 다르다. 풍수적 자연관과 관련된 위요경관도 시각적·심리적으로 장소를 내부화하는 것이지 출입을 통제하거나 시계를 제한하기 위한 위요경관이 아니다. 즉 서원 주위의 사신사, 서원의 안마당 등 둘러싸인 경관도 그 본질이 폐쇄를 통한 내부화에 있지만, 완전히 둘러싸서 막는 모습이 아니다.

2) 전망경관

전망 경관은 서원의 문루나 강당에서 전면의 대자연을 내다보는 경관으로 인간과 대자연이 마주보는 천인대대의 경관이다. 풍수에서는 안대라고 하고 유교적 관점에서는 자연과 생의를 감통 감응함으로써 천인합일의 경지(仁)를 마음과 정신으로 느끼고자 하는 경관이다. 서원의 구체적 입지 유형과 서원 창설자들의 지향하는 바에 따라 천인감통을 느끼는 방식이 다양하다. 서원 문루의 이름과 기문이나, 관련된 인물의 시문을 통해서 전망 경관의 유형을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병산서원(사적 260호) 만대루에서 바라본 전경

[표2] 입지 유형 천인감통 유형

입지	서 원
野景	廓然大公(필암), 吟諷詠歸(남계),
山景	翠屏晚對(병산)
江景	秋月寒水(도동)
溪景	觀水有術(구연)

- 필암서원 : 廓然大公의 필암서원은 탁 트여 시원하게 펼쳐진 평야 경관이다.
- 남계서원 : 風詠樓는 경주 평지에 자리 잡아 낮은 산과 들이 평온하게 생기 있게 보이는 경관이다.
- 병산서원 : 翠屏晚對의 병산서원은 생기 충만한 푸른 山色을 마주하며 生意체득이 뚜렷한 경관이다.
- 도동서원 : 秋月照寒水의 도동서원은 가을 달 찬 강물에 비추는 군자의 마음을 느끼는 경관이다.
- 구연서원 : 끊임없이 흘러오는 물에서 자강불식하는 성인의 마음과 물의 지혜를 읽는 경관이다.



3) 전저후고의 위요경관

- 서원은 주위 산세와 조화를 이루면서 생기를 타고 갈무리 하도록 둘러싸인 풍수 경관을 이룬다. 유교적 관점에서는 서원이 산줄기의 맥을 타는 것으로 연원이 이어짐을 상징한다.
- 위요경관은 바람을 막아 기를 안정시키는 미기후 효과 뿐 아니라, 공간을 내부 장소화 함으로써 보호되는 편안한 장소로 인식하게 심리적·상징적 효과가 크다.
- 四神砂라고 부르는 풍수적 위요 경관은 다음 3 계층으로 인식할 수 있다. ① 주위山勢, ② 담장과 대문, ③ 강당과 동-서재로 둘러싸인 안마당(中庭)

- 한국 전통건축에서 담장은 주로 돌이나 흙 혹은 돌과 흙을 섞어 울타리를 두르는 방식이다. 서원의 담장은 돌과 흙을 섞어 만들되 기와를 얹었다.
- 서원 내부에서 외부 자연경관을 관망하는 서원의 개방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만들어진다. 낮은 담장을 통해서 서원 외부의 자연 경관을 끌어들이면서 서원의 인위적 경관을 담장 너머 대자연과 합일 시킨다.



함양남계서원(사적 499호) 담장

- 서원을 비롯한 한국 전통건축의 위요 경관은 내부를 완전하게 폐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상징적으로 둘러싸서 내부자(insider)라는 지각적 효과를 추구하는 것이므로 산과 담장은 높지 않고, 안마당을 둘러싼 건물도 틈새가 크다.

4) 위계적으로 分節된 禮경관

‘예’란 ‘인’을 이루고 ‘인’을 어기지 않기 위한 실천이다. ‘예’는 구체적이고 사회적 상황에 적절하게 인을 실천하는 절도의 아름다움, 곧 절문이다. 절문의 절은 등차이고, 문은 문채이다. 예를 실천하는 서원경관은 서원의 내부 경관 구조에서 자연스러운 차별화가 느껴지도록 개별 장소로 분절된 공간이다. 전저후고의 경사 지형을 활용하여, 아래 그림처럼 서원의 장소들은 상승 축을 따라서 좌우 대칭적 구조에 기능별로 분절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입구에서부터 지형경사를 따라 차례로 보다 높은 권위를 가진 장소로 진행하도록 한다.



구미 금오서원(경북 기념물 60호)



함양 남계서원(사적 499호)

〈상승적 대칭 구조〉

－ 자연지형 경사 활용 －

사 당

후 원

강 당

동·서재와 마당

외삼문·누문

5) 연못 경관

수경관은 동아시아 주거 입지와 경관 구성에 핵심적 요소이다. 서원경관에서 수경관은 풍수적 취수 집수 기능과 유교적 관조의 대상이라는 상징적 성격이 중복된 연못으로 나타나며, 형태는 사각형(方形)이 많다. 서원 연못은 풍수적 맥락에서 보완경관으로서 의미가 있다. 시골에서 많이 볼 수 웅덩이는 습지의 일종으로 지하수면을 상승시켜 우수시 토양유실을 완화시키고 오염물질을 분해시키는 마당 생태계 균형자의 역할을 한다. 서원의 연못도 취수, 집수, 수구로서 우기 때 집수 장소가 되어 서원 내 배수를 원활하게 하여 마당 토양의 유실을 막아주고 오염물질을 분해시키며 화재 때는 수원의 역할을 한다.



함양 남계서원(사적 499호) 연지

6) 안마당(中庭) 경관

서원 내부는 가능에 따라 많은 분절된 장소가 형성된다. 서원의 중심, 곧 강당 앞에는 보통안마당(중정)이 만들어져 있다. 안마당은 비움의 공간으로 황토로 채우고 화초나 수목을 심지 않는다. 비움으로써 마당은 양기를 충천하는 장소가 되고, 수양의 성찰을 돕도록 침묵의 공간이 된다. 비워진 마당은 여름에는 서원 후면의 숲으로부터 바람을 유도하여 강당을 시원하게 하고 겨울에는 마당의 복사열이 강당과, 동·서재에 반사되어 따뜻하게 하는 미기후 조정 기능이 있다. 서원을 포함한 전통 건축에서 안마당(중정)은 인간적 규모의 반 개방적 사각형 마당으로 설명된다.



필암서원(사적 242호) 안마당(중정)

즉, 사람들이 편안하게 느끼는 일정한 범위의 공간규모로 제한된다고 하여 ‘인간적 스케일’로 부르기도 한다. 그 규모는 첫째, 중정은 건물사이 거리가 대부분 20-25m 정도이다. 이는 건너편 건물에 있는 사람의 얼굴 표정을 읽고 육성으로 대화할 수 있는 간격이다. 둘째, 마당 폭과 건물높이 사이의 비례는 2-3 배이다. 중정에서 건물이 사면을 둘러싸 자신이 보호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답답하지는 않을 정도의 가장 편안한 폐쇄감을 느낀다. 셋째, 마당한쪽 끝에서 반대편 건물 꼭대기를 바라보는 시선의 양각은 18-27도이다. 바라보는 사람이 편안하게 느끼는 양각이다. 넷째, 중정의 사면을 막는 건물들 사이 모서리는 연결되지 않고 벌어져 있는데, 그 각도는 20-25도이다. 중정 사면의 공간은 개방성과 폐쇄성 사이에 적절한 균형감을 느끼는 크기이다.

7) 수목식재 경관

서원은 산수가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입지하므로 의도적 수목 식재는 제한적이다. 식재 수종의 특성을 서원 경외는 진입 공간과 담장주위, 서원 내는 강학공간과 제향공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서원 경외의 진입과정의 공간의 공통적인 수목은 소나무와 느티나무 그리고 행단과 관련된 은행나무가 대표적이



함양 남계서원(사적 499호) 외곽 담장

과나무, 단풍나무, 향나무, 측백과 회화나무(槐木) 등이 있다.

고 노거수가 많다. 느티나무와 은행나무는 유식여가장소인 정자나무 역할을 한다. 담장 주위와 서원 뒤에는 소나무와 대나무가 대표적이다. 경내에 식재되는 나무는 강학공간에는 은행나무, 매화나무, 배롱나무 등이 대표적이다. 강학공간은 안마당이 중심장소가 되기 때문에 비어 있어 나무나 초본의 식재가 적다. 제향공간은 상대적으로 수목식재가 많은 편이다. 목백일홍(배롱나무)과 무궁화 및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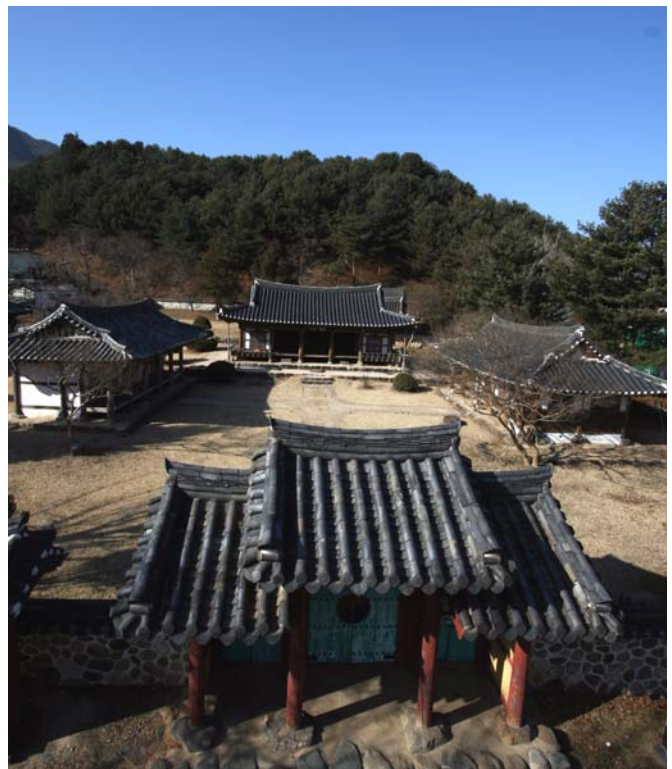
8) 서원 주위 자연적 장소경관

서원 주위에는 서원 창립자의 삶의 자취가 남겨진 많은 장소들이 있고 아름다운 산수가 있어 자연과 합일하려는 서원 창설자의 사상이 바위글자로 새겨져 있다. 의미 있는 장소들을 유교적 가치와 관련된 이름이 부여되고 九曲 등으로 경영되기도 한다.



2. 총 칙

01. 목 적
02. 관계법령
 - 1) 문화재보호법
 -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 3)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 4) 지침
03. 적용범위
04. 용어의 정의



제2장 총 칙

1. 목 적

본 매뉴얼은 서원의 보수 및 정비 활용 등에 대한 기본방향과 서원의 기초조사방법과 기록, 서원 보존 정비의 계획수립 등에 대한 사항, 서원의 수리와 보존,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한 일반적 기준 및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여 서원을 품격 높은 문화재로 보존하면서 살아 있는 문화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2. 관계법령

서원의 보존·정비 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참조하여야 할 법령 및 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재보호법

- (1)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 (2) 제15조(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국가 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 기본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제16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 또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해당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등을 지정할 경우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있으면 그 의견을 들어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문화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등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등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④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등 (이하 "관리단체"라 한다)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관리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 (4) 제17조(수리 등) 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가 해당 문화재를 수리하려면 제22조,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이하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라 한다)에게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를 수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면서 수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문화재 수리 업무를 신의와 성실로 수행할 것
 2. 문화재 수리 설계도서 및 표준시방서 등의 수리 기준에 적합하게 수리 업무를 수행할 것
 3. 문화재 수리공사의 수리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할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재의 원형 보존과 수리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종류 및 그 담당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를 위한 실측(實測), 설계 및 그 대가 지급 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5) 제39조(보조금)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
 2.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 보호, 수리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 그 문화재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에 관하여 감독

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보조금은 시·도지사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사용하게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제85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 (1) 제5조(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계획의 수립) ①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수와 정비에 관한 사항
 - 2.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환경의 보호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 ②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으면 그 날부터 6개월 안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법 제4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2) 제5조의2(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①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도록 지정된 관리단체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이하 이 조에서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정비계획은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정비계획의 목적과 범위에 관한 사항
 - 2. 문화재와 그 주변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사항
 - 3. 문화재에 관한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 4. 문화재의 보수·복원 등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5. 문화재의 관리·운영 인력 및 투자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문화재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

- (3) 제6조(수리) 법 제17조에서 "수리"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수, 복원 및 이를 위한 실측·설계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 (4) 제51조(권한의 위임) 문화재청장은 법 제8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9.26>

1. 법 제34조제1호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중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2. 법 제34조제2호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중 국가지정문화재(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재는 제외한다)의 촬영행위 허가 및 그 취소
3.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다만, 해당 국가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허가 및 그 취소는 제외한다.
 - 가. 건조물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 나. 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한식 담장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 다.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라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 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마. 표석,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 바. 철책이나 석책(石柵)을 설치하는 행위
 - 사. 수목의 가지 고르기, 병충해 방제, 거름 주기 등 일반적인 보호관리
 - 아. 학술·연구목적이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삼수(삼수: 꺾꽂이용 묘목이나 싹)를 채취하는 행위
4.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중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천연기념물을 사육, 재배, 표본, 박제하거나 죽은 것을 매장 또는 소각하는 등의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5.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중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설치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6.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중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한 허가 및 변경허가
7. 법 제38조제8호에 따른 신고의 수리 중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허가에 따른 신고의 수리
8. 법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발굴허가권 중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 또는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규모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한 허가
9.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관할 경찰서장에 대한 통지

10. 법 제59조제3항 전단에 따른 발굴 또는 발견된 문화재의 공고
11. 법 제91조제4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대책의 수립 및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명령 중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나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규모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조치명령
12.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위한 협의 및 제60조제2항에 따른 통지
13. 법 제100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3)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2005. 1. 문화재청)

4) 지침 등



도산서원(사적 170호)

-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수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일반원칙(2009.9.3. 문화재청 고시 제 2009-74호)에 관한 사항(문화재청 홈페이지 정보광장/법령정보 열람)
-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2009.9.24. 문화재청 예규 제77호)에 관한 사항(문화재청 홈페이지 정보광장/법령정보 열람)

-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업무지침(2009.12.14. 문화재청 훈령 제189호)에 관한 사항(문화재청 홈페이지 정보광장/법령정보 열람)
- 문화재안내판 가이드라인

3. 적용범위

본 매뉴얼은 문화재보호법 제7조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한 서원의 보존·정비 관리업무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필요시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와 비지정 서원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령 및 문화재 수리 표준시방서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매뉴얼을 적용한다.

4. 용어의 정의



병산서원(사적 260호)

이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기초조사 : 현황조사 및 학술조사를 포함하는 서원의 역사적 성격규명과 보존·관리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조사를 말한다.
-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정비계획 : 서원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말한다(이하 종합정비계획이라 한다).
- 보존 : 문화재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조치를 말한다.
- 복원 : 문화재의 중요한 가치 또는 원형이 소실된 경우, 고증을 통해 문화재를 원래 모습이나 특정시기의 모습으로 전체 또는 그 일부를 되찾는 행위를 말한다.
- 관리단체 : 문화재보호법 제16조에 의한 관리단체를 말한다.
- 시행청 : 서원의 보존·관리를 위한 사업 발주 기관을 말하며, 발주청 이라고도 한다.
- 감독관 : 서원의 보존·관리를 함에 있어 설계 및 시공전반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산림세력 : 학식과 덕이 높으나 벼슬을 하지 않고 시골에서 지내는 선비세력

- 사우(사당) : 죽은 사람의 위패를 모시고 제향하는 집
- 사족 : 문벌이 높은 집안 또는 그 자손
- 위요경관 : 어떤 지역이나 장소를 빙 둘러싸는 둘레의 경관
- 천인대대 : 인간과 대자연이 마주보는 경관
- 사문 : 유교에서, 유교의 문화를 이르는 말
- 18현 : 동방 18현 또는 동국 18현은 문묘에서 배향하는 한국의 유학자들을 말한다. 본래 동서무에 있었으나 1975년 9월에 대성전으로 옮겨졌다.
- 전사청 : 문묘, 서원, 향교 등에서 제향의 건물을 맡아 보는 집채
- 제기고 : 제사때 쓰는 기구 등을 넣어두는 창고
- 재실 : 능묘등의 제사 지내는 집
- 대성전 : 문묘안에 공자나 대현의 위패를 모신 전각
- 명륜당 : 성균관안의 유학을 강론하는 집
- 동·서무 : 유현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지냄. 또는 유생들이 공부하며 유숙하던 집
- 동·서재 : 명륜당 앞 좌우에 있는 집으로 유생들이 글 공부 하던 곳
- 전묘후학 : 문묘, 서원, 향교 등의 각 건물 배치법으로 앞쪽에 묘당을, 뒤쪽에 학업용 건물을 배치한 것 ↔ 전학후묘

3. 서원의 기초조사

01. 필요성

02. 기초조사

- 1) 기초조사의 방향
- 2) 기초조사의 실시
- 3) 기초조사의 내용과 범위
- 4) 기초조사 수행자

03. 기초조사 기록보존 등 정리분류의 범위

- 1) 서원 기록보존의 분류
- 2) 서원 조사자료집 발간
- 3) 서원지 편찬 수행자
- 4) 서원지 편찬의 범위
- 5) 서원지의 활용



제3장 서원 기초조사

1. 필요성

서원의 보존 정비를 위해서는 서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사와 기본적인 기초조사 자료 등 전반적인 역사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충족되어야 하나 서원의 창건과정, 인물성격 중심의 제한적, 중복적 관심, 건축 중심, 제향의례 중심의 한계성으로 서원마다 확보하고 있는 관련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서원은 종합적 문화 모습을 지닌 상징적 장소이므로 서원 건축, 제향, 인물, 의례를 넘어 서원의 사회문화적 기능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 다양한 성격의 자료들이 총괄적으로 조사, 수집,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기초조사

서원의 보존·정비 관리에 따른 대상물은 유형 무형의 문화자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전통의례와 강학 전통 등의 무형자료 및 전적·고문서·목판·금석문·건축물 등의 유형자료, 그리고 주변 역사문화환경 및 풍광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다음 표에서 보듯 건축·인물 중심에서 분야별로는 교육(강학), 의례, 문학, 경관 등이, 그리고 자료별로는 사회경제, 운영 조직을 보여주는 고문서와 각종의 관찰기록과 문헌, 그런가하면 금석기문, 시문학, 구비문학 등등 폭넓은 사회사 자료가 기초조사 정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표3]서원자료조사의 범위와 대상

사회 문화적 기능별	조사 대상 유형별	서원자료 내용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강학 · 제향의례 · 사족활동(학맥, 정치) · 사회교육 · 출판과 도서관 · 문화예술(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적·관찬기록 · 서원고문서 · 제향인물 문집 및 전적 · 현판, 금석기문 · 교육·제향의례 · 지명, 전설, 일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향 인물 자료 · 연혁 변천 자료 · 조직과 운영 자료 · 교육 제향의례 자료 · 서원경제 자료 · 향촌사회사 자료

1) 기초조사의 방향

- 서원 관련 유·무형의 자원을 총괄 조사하여야 한다.
- 서원 문화사 기초자료의 체계적 조사와 정리가 수반되어야 한다.
- 유형별(건축, 유적, 고문서, 금석문, 현판) 자료조사표와 기록카드를 작성한다



2) 기초조사의 실시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단체는 서원에 관련된 유·무형의 모든 자료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3) 기초조사의 내용과 범위

기초조사는 서원역사와 제향인물자료, 역사문화자료, 건축문화 자료, 경관, 그리고 무형의 의례와 구비 전승자료를 망라하도록 하면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역사문화 조사자료

- (1) 사회문화적 기능별로는 ① 교육, 강학 ② 제향의례 ③ 사족활동(학맥, 정치) ④ 사회교육 ⑤ 출판과 도서관 ⑥ 문화예술(경관)의 자료가 조사·정리 되어야 한다.
- (2) 조사 대상 유형별로는 ① 유적·관찬기록 ② 서원 고문서 ③ 제향인물 문집 및 전적 ④ 현판, 금석기문 ⑤ 교육·제향의례 ⑥ 지명, 전설, 일화가 조사·정리 되어야 한다.
- (3) 서원자료 내용별로는 ① 제향 인물 자료 ② 연혁 변천 자료 ③ 조직과 운영 자료 ④ 교육 제향의례 자료 ⑤ 서원경제 자료 ⑥ 향촌사회사 자료가 조사·정리 되어야 한다.

■ 건축문화제 조사자료

- (1) 건축물 배치조사에서는 ① 서원의 영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건축물 ② 시설물(석조 철조, 목조, 다리, 축대 등) ③ 서원 영역 및 일정 주변의 모든 식재의 위치와 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조사 정리되어야 한다.
- (2) 개별건축물 양식과 구조에서는 서원내 모든 개별 건축물에 대해 ① 평면 ② 입면 ③ 단면 ④ 주요구조부분 상세 ⑤ 공포양식 ⑥ 창호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조사 정리되어야 한다.



병산서원(사적 260호) 만대루

■ 경관 및 입지 조사자료

- (1) 입지 관련 자료는 ①연원과 이동과정, ② 입지 지형유형과 형국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조사 정리되어야 한다.
- (2) 전망 관련 자료는 ① 문루 강당 기문 및 관련 인물의 시문에 나타난 경관의미 해석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조사 정리되어야 한다.
- (3) 경관요소관련 자료는 ① 위요경관의 구성, ② 진입로 구성의 특성, ③ 축선과 대칭구조의 특성, ④건축물의 명칭과 의미, ⑤연지와 내외 수로(구거) 특성, ⑥안마당의 경관구성, ⑦수목식재 특성, ⑧ 서원 주변 장소 경관과 관련 시문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조사 정리되어야 한다.

■ 기타 조사자료

- (1) 서원 일곽에 대한 현황도면 작성과 현황사진촬영을 하며, 주요건물에 대하여는 정밀실측도 병행하여야 한다. 또한 서원내의 주요 특징이나 기타 조사되지 않은 부분까지 상세하게 조사 정리되어야 한다.

- (2) 서원내의 시설물과 주변입지 및 자연환경, 인문사회환경, 역사문화환경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정리되어야 한다.
- (3) 과거의 수리실적 등을 조사 정리되어야 한다.



병산서원(사적 260호)

4) 기초조사 수행자

기초조사는 관계전문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기초조사 수행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서원 역사(서원, 고문서) 분야의 전문가
- 관련 전문 연구기관(서원학회)
- 인문, 건축, 지리, 조경문화재 전문가
- 해당 지역 연구자의 학제적 공동참여



3. 기초조사 기록보존 등 정렬분류의 범위

관리단체는 서원 보존·정비의 효율적인 수행과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서원의 기초조사 결과를 기록으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기능별, 유형별, 내용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1) 서원 기록보존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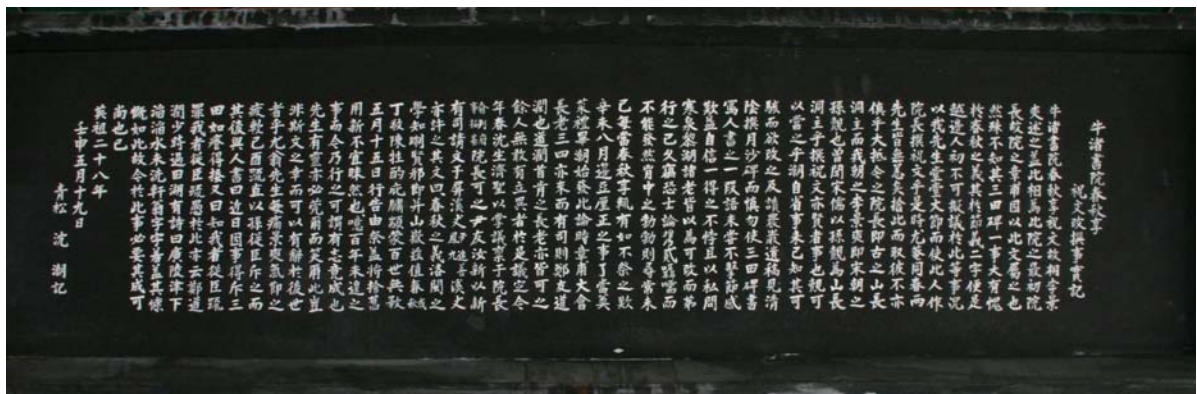
서원의 기록보존을 위한 분류와 그에 따른 작성항목 등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회 문화적 기능별 분류에는 교육, 강학, 제향의례, 사족활동(학맥, 정치), 사회교육, 출판과 장서, 문화예술(경관) 등에 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유형별 분류는 아래 표에 제시한 항목과 같다.

[표4] 유형별 조사자료 항목

항 목	주 요 내 용	
유적	·서원창건 유서, 제향인물 관련 유적	
관찬 기록	·實錄, 法典類, 邑誌類 ·列邑院宇事蹟, 書院可攷, 東國院宇錄, 文獻備考, 典故大方, 書院謄錄 ·司馬榜目, 文科榜目	
서원고문서	조직 운영	·儒生案, 儒案, 菁莪錄, 院生案, 靑衿案 ·院長案, 先生案, 齋任案 ·奉安時 參祭錄, 書堂稷 錄名錄, 慕賢錄, 設壇契券文, 同志錄
	경제	·奴婢案, 額外院生案, 院保案, 院直案, 官·士族의 현물증여, 王의 賜物 문서 ·西齋案 및 願納案, 保奴案이나 良烟保案, 院村除役文書 ·田畝案 田畝·祭器·田畝賭地記, 田民案, 典穀文書, 都錄, 田畝秩 ·位土收賭記, ·守護軍案 . ·傳與記, 傳掌冊, ·用下記, 義捐錄
	교육 의례	·書院規約, 書院節目, 立議, 完文, 講案, 學規
	제향 의례	·笏記類 ·祝文·祭文·告由文
현판 및 금석문	·重修記 上樑文 御製文 院規(學規) 芬芳記 題詠文 ·廟庭碑 繫牲碑 事蹟碑 重修碑 功績碑 紀跡碑	
문집 및 전적	·문집(詩賦와 같은 문학작품, 書疏劄啓와 같은 경세론과 정책건의, 序·記·跋文類, 雜著, 附錄 등)	
지명, 전설, 일화	·해당 인물의 사상, 행적, 저술, 전설, 일화, 특히 해당지역에서의 생활과 관련된 사실 ·제향인물의 문중자료	



- 내용별 분류는 아래 표에 제시한 항목과 같다.

[표5] 내용별 조사자료 항목

항 목	주 요 내 용
제향 인물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향인물 관련 金石文(行狀, 神道碑, 墓碑, 遺墟碑) - 追崇(仲冤, 贈職, 命旌 등) 과정 古文書 자료 - 實記나 遺稿 등의 문집 간행 - 列邑院宇事蹟, 書院謄錄
연혁 변천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列邑院宇事蹟, 書院可攷, 東國院宇錄, 文獻備考, 典故大方, 書院謄錄 - 書院·祠宇志 - 創建疎, 創建通文 - 上樑文, 重修記, 重修碑 - 祝文·祭文·告由文 - 營建日記(重修都錄, 會計錄), 用下記, 義捐錄(扶助記 例扶記) - 建立疏, 請額疏 記文類
조직과 운영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儒生案, 儒案, 菁莪錄, 院生案, 青衿案 - 院長案, 先生案, 齋任案(有司案) - 奉安時 參祭錄, 書堂稷錄名錄, 慕賢錄
교육과 제향의례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書院規約, 書院節目, 立議, 完文, 講案(講規), 學規 - 笏記類
서원경제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奴婢案, 額外院生案, 院保案, 院直案, 書院村문서, 官·士族의 현물증여, 王의 賜物 관련문서 - 西齋案 및 願納案, 보노안이나 良烟保案, 院村(契防村) 除役文書 - 田畝案 田畝祭器·田畝賭地記, 田民案, 典穀文書, 都錄, 田畝秩 - 位土收賭記 - 身貢案 守護軍案 - 傳與記, 傳掌冊 - 營建日記, 重修都錄, 會計錄, 用下記, 各種 扶助記
사회사 관련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尋院錄, 時到記, 義捐錄, 扶助記, 通文類

- 기초조사는 서원의 주요연혁, 제향인물, 유적 소장자료현황, 정비·보수·복원일지, 지원사업 활동개요, 운영조직 및 재산을 아래표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표6]서원·사우 기초조사표

명 칭	(별칭)				창건위치	
지정사항					현재위치	
주요연혁	연대	내용 (창건, 이건, 사액, 훼손, 복설, 추승, 문집 발간 등)				관련인물
제한인물	성명	생몰연대	제한년	위차	주요이력 및 제한사유, 특기사항	
건립유서	사적() 태생지 동쪽기반 (기타 :)					
건립주체	문인 당파 후손 향유(사립) 지방관 (기타 :)					
건물	명칭	창건	중수	규모	변 천 개 략(기록)	
고문서자료	종 류	수량	시 기		내 용 개 략	

현판, 비석	명 칭	연대	찬자	내 용 개 략	
문 집 출판물 참고문헌	명 칭	연도	권책	내 용 개 략	
특 기 사 항	정비 복원				
	지원 사업				
	기타 활동				
운영조직 및 재산					
기 타 (추가)					
임 원					
관리자	주소			전화	
조사일			조사자		

2) 서원 조사자료집 발간

관리단체는 기초 조사된 자료에 대하여 간행물이나 보고서 등의 형태로 서원 자료집(서원지)을 발간한다. 아울러 서원지의 발간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 또는 국가에서 지원한 예산으로 할 수 있다. (단,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국가지정문화재에 한한다.)

3) 서원지 편찬 수행자

서원지의 편찬을 위하여 서원연구자 및 활용자로 편찬위원회를 구성하며, 분야별서원 연구자(인문, 경관, 건축, 문서, 기타)가 집필한다. 또한 해당 지역 교육, 활용자가 자문 등 학제적 공동 참여한다.

4) 서원지 편찬의 범위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표의 내용을 포함하여 서원지를 편찬한다.

[표7]서원자료집(서원지) 편찬 항목

범 위	주요수록내용
기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 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원전경(경관) / 서원건물 / 제향인물(영정, 유목, 문집, 묘역, 유적 등) / 주요 고문서, 현판, 제영문, 기타 ○ 일러두기 / 목차 ○ 서원의 건립연혁(연표)
서원경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원 입지와 전망경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원의 입지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지의 연원과 이동 - 입지의 자연성 - 전저후고 배치 경관 - 개방성 2) 서원의 전망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수 형국 - 전면 전망 특성 2. 서원 경관과 주위 자연적 장소경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圍繞 경관 2) 禮 경관 3) 水 경관 4) 안마당(中庭) 경관 5) 수목식재 경관 6) 주변 장소경관

범 위	주요수록내용
서원역사	<p>3. ○○서원의 창건과 역사변천</p> <p>1) ○○서원의 창건사적 - 건립유서 - 건립 주체세력과 관련인물 - 지역 사족의 동향, 서원운영 주체세력의 변화 - ○○서원의 훼손과 복설, 이건, 중건과 사액 - 사액과정</p> <p>2) ○○서원의 주요활동 - ○○서원의 강학활동과 인물배출 - ○○서원의 정치적 활동과 학맥 - ○○서원의 사회경제 활동</p> <p>4. ○○서원의 조직과 운영</p> <p>1) 서원 조직 2) 제향 의례 3) 교육, 강학의례 4) 경제와 운용</p> <p>5. ○○서원 제향인물의 행적 * 위차 및 추배인물 1) 제향인물의 생애와 저술 2) 주요행적과 서원관련 유서 3) 후학과 추승, 현창활동 4) 관련 유적 기타</p>
서원건축	<p>6. 서원의 입지환경과 배치계획</p> <p>1) 서원의 입지환경 2) 서원의 배치계획</p> <p>7. 서원건축의 양식과 구조</p> <p>1) 사당의 건축양식과 구조 2) 강당의 건축양식과 구조 3) 동서재의 건축양식과 구조 4) 수직사의 건축양식과 구조 5) 기타 서원 내 부속건축물의 양식과 구조</p>
소장자료	<p>8. ○○서원의 소장자료</p> <p>1) 서원건립 관련 고문서 2) 제향인물 관련 문서</p>

범 위	주요수록내용
	3) 문중관련 고문서 4) 관련인물 자료와 금석문 5) 제향인물의 문집류와 옛 서원지
관련유적 과 일화	9. ○○서원 관련 문화유적 1) □□서원(관련있는 타서원) 2) 묘소와 유허지 3) 서원의 옛터 4) 정려와 비석 10. ○○서원 일화와 전설 1) 제향인물 관련 일화와 전설 2) 서원운영과 관련하여 전해지는 이야기
부록	○ 편집후기 ○ 기존 서원지 원문 / 연표 ○ 제향인물 관련 타지역 집성촌 소개 ○ 제향인물의 타서원 제향처

5) 서원지의 활용

편찬된 서원지는 서원문화의 현대적 가치 계승 및 역사문화자원 활용에 기본적 사료가 된다. 따라서 스토리텔링, 교육과 체험의 소재 등 효율적 활용의 최우선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수서원(사적 55호) 취한대

4. 서원의 보존과 정비

01. 보존정비계획의 수립

- 1) 계획 수립의 원칙
- 2) 계획의 내용
- 3) 수립시기 및 주기
- 4) 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02. 서원의 보존정비

- 1) 보존·정비의 기본원칙
- 2) 서원 권역별 보수 및 정비

03. 보존·정비 절차

- 1) 계획의 수립
 - 2) 설계도서의 작성
 - 3) 설계감독관
 - 4) 설계도서의 승인
 - 5) 공사시행
 - 6) 공사의 감독
 - 7) 시공자의 직무
 - 8) 장기계속공사
 - 9) 준공검사
 - 10) 수리보고서의 작성
- ※ 서원의 정비사례



제4장 서원의 보존과 정비

1. 보존 정비계획의 수립

관리단체는 서원의 체계적인 보존과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종합정비계획 수립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 아울러 종합정비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 또는 국가에서 지원한 예산으로 수립할 수 있다. (단,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국가지정문화재에 한한다.)



종합정비 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방향을 나타내며, 정비를 위한 조사의 성과에 기초하여, 사업 전체의 범위 및 정비의 내용을 정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기본계획에 있어서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하여, 해당 유적의 정비에 필요한 기법의 성격을 정하며, 각종 기법의 선택 및 적용에 관해서 전체적인 조화가 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구상에 있어서는, 보존을 위한 기본적 방침을 정해, 적용하는 기법의 방향성에 관해 검토한다. 관리, 운영의 방법에 관해서 검토함과 함께 정비사업을 실시해가는 부분에 관해서는 각각의 기법을 적용하는 기본적인 방침과 필요한 시설의 배치·규모 등을 검토한다. 또한, 정비 사업실시를 위해 필요한 조사와 장기계획에 있어서 사업단계마다의 목표 등의 내용을 정한다. 관리·운영에 관해서는, 각각 적용하는 기술의 기본적 내용을 검토하고, 각 기술의 내용을 반영한 기본안을 작성하면서, 정비계획전체의 정합성을 확인한다. 또한, 각 공사 공정의 검토를 하고, 필요에 따른[설계를 위한 상세한 조사]와[공법시험조사]를 계획하여, 각 조사·공사의 실시수순의 개요를 정해, 이것을 나타낸 연차 계획표를 작성하고, 계획에 나타낸 공사구역·공사기간의 설정이 적절한지 어떤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단계표의 작성에서는 기본 구상의 내용에 기초하여, 토지 매입, 발굴조사 등의 각종 조사,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조정 및 정비의 수순에 유의하고 목표실현을 위한 단계를 검토한다.

1) 계획수립의 원칙

종합정비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서원의 역사성, 사회적 역할, 기능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존·관리·활용방안을 수립한다.
-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복원은 지양한다.
- 관계법 분석 등 제도적, 재정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성 있는 재원투자계획을 수립한다.
- 계획수립 과정에서 관계전문가, 관계기관의 자문, 검토 및 협조를 받아야 한다.

2) 계획의 내용

▪ 종합정비계획의 내용은 유적의 가치보존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1)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증 및 학술조사를 하여야 한다.
- (2) 서원의 역사 및 관련 자료 정리
- (3) 서원의 건축 및 경관 수목 등 각종 현황 조사자료
- (4) 서원의 역사성, 정체성, 고유한 가치, 경관의 가치를 고려한 정비계획의 개념 설정
- (5) 내부 시설물 현황 및 발굴조사 결과에 따른 유구분포도
- (6) 서원의 보존 및 정비계획
- (7) 활용 및 지속발전 방안



▪ 서원 구간에 걸친 경역확인을 위한 측량 등은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실시한다.

- (1) 측량에 의한 현황배치도
- (2) 지정구역과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 (3) 고증에 의한 옛 지도 및 현황 배치도, 조감도 등

▪ 현황도면 작성 및 사진촬영, 내·외부 중요시설물 도면 작성 및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 종합정비계획에 반영할 항목은 아래표와 같다.

[표8] 종합정비계획 수립 항목

<p>I. 계획의 개요</p> <p>① 계획의 배경 및 목적과 필요성에 대하여 작성한다. ② 계획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하여 작성한다. ③ 계획의 수립체계, 진행방법 및 과정에 대하여 작성한다.</p> <p>II. 현황 조사</p> <p>① 문화재와 그 주변의 일반현황(입지 및 자연환경, 인문사회환경, 역사문화환경 등), 주변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을 작성한다. ② 문화재의 지정 현황(개요, 주요연혁, 가치 및 특성 등), 학술조사 및 고증연구 실적을 작성한다. ③ 문화재의 보수정비 및 관리실태, 문화재구역·보호구역·보호물 및 시설물 현황에 대하여 작성한다. ④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대하여 작성한다.(기준이 제정·고시된 경우) ⑤ 국내외 사례조사 및 비교·분석과 현안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작성한다. ⑥ 문화재의 활용 현황에 대하여 작성한다.</p> <p>III. 계획의 기본구상</p> <p>① 정비계획의 기본개념 및 방향에 대하여 작성한다. ② 주요 대상별 정비(유적·유구 정비, 주변정비, 부대시설정비 등), 관리 및 활용(프로그램 개발, 주민참여 등), 인적·물적 자원 확보, 소방방재시설 등의 기본구상을 작성한다. ③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내용을 작성한다.</p> <p>IV. 종합정비 방안</p> <p>① 정비의 원칙, 보존·정비의 대상 및 범위에 대하여 작성한다. ② 관련법규(현상변경 허용기준, 정비사업 등과 관계되는 타 법령)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작성한다. ③ 학술조사(발굴조사 등 학술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불필요)의 목적, 대상·범위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작성한다. ④ 사유지 매입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원칙 및 방향, 대상범위 및 사유 등에 대하여 작성한다. ⑤ 유적 및 유구 정비의 목적과 범위, 수행방법, 대상별 정비방안에 대하여 작성한다.</p>

- ⑥ 주변정비(탐방로, 안내표지판, 식생·조경, 석축·배수로, 경계울타리 등)와 편의·부대시설(안내소·매표소, 전시관·야외전시물, 관리사무소, 화장실, 휴게공간, 주차장 등)의 설치 방안 등에 대한 사항을 작성한다.
- ⑦ 소방방재시설(소방시설, 감시시스템 및 도난방지시설)의 설치 방안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⑧ 문화재의 활용방안(관광·교육프로그램 및 스토리텔링 개발, 콘텐츠 구축, 전시공간 이용 활성화 등) 및 홍보방안에 대하여 작성한다.

V. 사업추진 및 관리운영계획

- ① 정비사업의 추진방향, 추진전략 및 체계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② 정비사업 개요, 사업내용, 사업비 산출 및 사업성 검토 등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③ 관리운영계획에 대한 기본방향, 관리운영 주체 및 체계, 세부계획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④ 관리운영인력 확보와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 작성한다.

VI. 미래상 및 기대효과

- ① 학술적·사회문화적·경제적 측면 등에서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을 작성한다.
- ② 문화재의 생애주기비용·편익을 분석하여 작성한다.
- ③ 종합의견을 작성한다.

VII. 부 록

- ① 학술조사보고서, 고증자료 및 자문결과 등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확보·참고한 자료 목록을 작성한다.
- ② 문화재구역·보호구역의 토지조서(필지별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등)를 첨부한다.

3) 수립시기 및 주기

관리단체는 서원의 특성, 지역적 차별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정비계획을 최소 10년 마다 재수립 할 것을 권장하며, 천재지변 등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계획수립 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서원에 대하여는 세계유산 정기보고 주기에 맞추어 6년 단위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장한다.

4) 계획수립시 유의사항

관리단체는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서원별 특징 및 성격 등에 맞게 그 가치를 살려서 특성화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역사적 사실과 연구고증을 바탕으로 보수정비를 추진한다. 또한 문화재의 진정성과 활용가능성 그리고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타당성·적절성과 함께 실효성을 확보하며,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현황조사, 사유지 매입, 발굴조사 및 고증, 정비사업 및 활용 등의 추진과정으로 진행되도록 한다. 아울러 관계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이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합리성을 강구하고, 주변의 역사문화경관 외에도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활용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와 문화재의 가치 및 효용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2. 서원의 보존·정비

서원의 수리는 원형유지를 위하여 훼손된 부분을 보수하거나 원형을 확인할 수 있는 훼손된 건축물 복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필요에 따라 화장실 신축도 보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보수 탈락부분의 미장공사와 같이 간단한 보수에서부터 신축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넓다. 보수공사는 아니지만 서원 주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접대지를 매입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서는 서원 수리의 기본원칙, 절차, 보존관리 계획의 수립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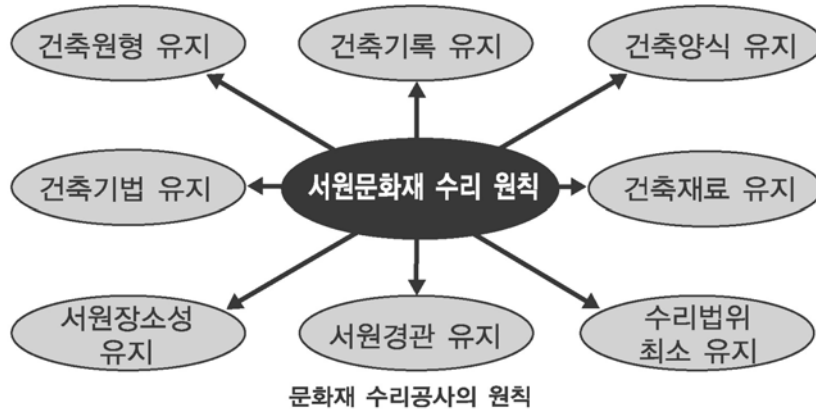
1) 보존정비의 기본원칙

문화재란 인류와 함께 한 역사를 가진 문화 산물로서 시대성, 장소성이 포괄적으로 아우러져 있다. 따라서 인류의 문화가 지속하는 함께 존속해야 할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문화재는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여러 유형의 문화재 가운데 특히 건축물, 석조물, 단청, 지류, 철제품 등은 물적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문화재의 소멸을 방지하고, 지연시키기 위한 조치는 보수공사, 복원공사, 수리 등의 행위로 이어지는데 우수한 시공품질이 전제되어야 한다.



서원문화재 수리 목적

특히 서원 문화재는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문화재는 그 자체로 가치가 충분하지만 대중과 함께 할 때 그 가치는 증가한다. 따라서 일반 대중에게 문화재의 그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려 주는 교육자를 문화재 수리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



■ 서원 건축물과 경관의 원형유지

서원의 수리공사는 반드시 그 원형을 유지하면서 시행되어야 한다. 수리공사는 원형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였을 때 시행하여야 하며, 원형을 알 수 없을 때는 현 상태를 지속해야 한다. 함부로 상상하거나 추정하여 문화재를 수리하는 것은 원형 훼손을 초래하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원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나중에 원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하고 변형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복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 두도록 한다.



병산서원(사적 260호) 전면의 낙동강

■ 서원의 기록 유지

서원의 건축물을 수리함에 있어서 원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확인 가능한 모든 사항을 조사, 기록해두어야 한다. 기록이나 자료가 잘못되거나 오류를 목인할 경우 원형은 영원히 회복될 수 없으며 오히려 왜곡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재난과 같은 불의의 사태로 인하여 소멸되거나 훼손된 서원을 복원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서원의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병산서원(사적 260호) 만대루

■ 건축양식 유지

서원의 건축물 수리시 반드시 전통적인 건축양식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 건축양식을 바꾸거나 변형해서는 안된다. 양식이 불확실하다고 추정하여 수리할 경우 원형이 변형될 뿐만 아니라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양식에 맞게 철저한 고증을 통해 수리해야 한다.

■ 건축기법과 기술 유지

서원건축물 수리는 양식과 함께 당대의 기술과 기법도 수호해야 한다. 즉, 기술자 집단의 기술과 기법, 가공수단, 건축도구를 충분히 재현하여 당대의 기법과 기술이 유지되도록 수리하여야 한다. 이 때문에 서원건축물 수리는 국가 수준에서 능력을 검증한 수리기술자와 기능자가 수행하는 것이 좋다.



■ 건축재료 유지

서원건축물을 수리할 경우 가능한 원래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건축재료의 변화는 곧, 물적 특성의 변화를 초래하고, 서원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수리는 가능한 원래의 재료를 유지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서원의 장소성 유지

문화재는 원칙적으로 처음 만들어진 장소를 떠나서는 안 된다. 동산문화재는 보존과 도난을 예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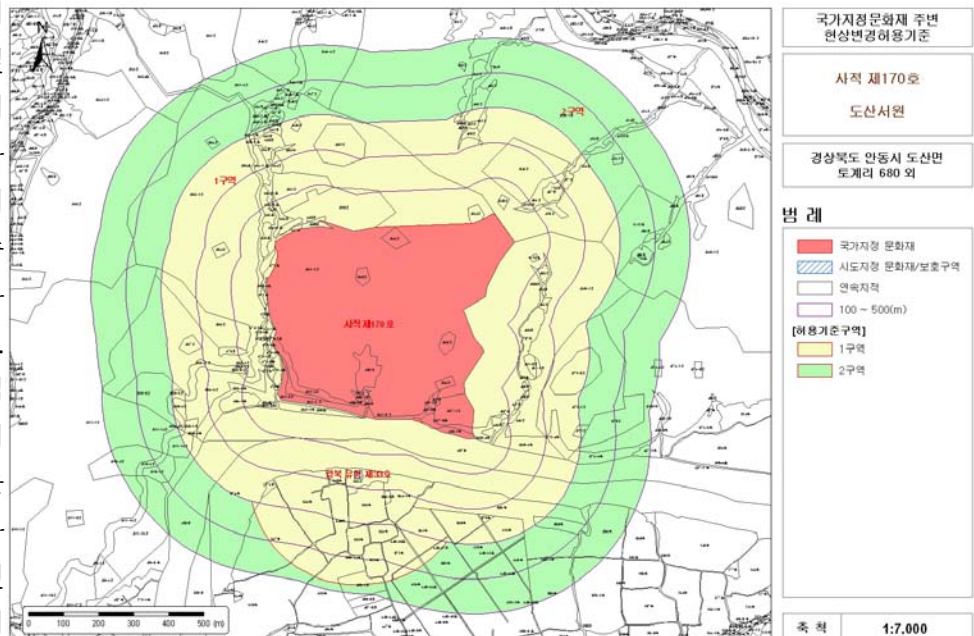


위해 특수 장소로 옮겨 수장할 수 있으나, 부동산문화재는 원 위치에 존재할 때 그 가치가 발휘된다. 건물의 경우 건물을 에워싼 자연환경을 비롯하여, 풍수지리의 좌향 같은 철학적 배경이 있으므로 해서 그 가치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되도록 원래 장소를 떠나지 않도록 장소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병산서원(사적 260호) 입구

■ 서원 경관 유지

서원 및 주변 경관이 도시개발, 특히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산업화에 따라 도시가 확대되면서 개발행위가 서원의 주변경관을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해 지고 있다. 이제, 문화 가치가 산업 가치와는 비교하기 어려운 의미를 지녔다는 것을 재인식하고 문화재는 물론 서원의 주변경관까지 보호, 유지되어야 한다. 서원 주변 경관을 보존하기 위하여 사전에 서원 주변에 대한 현상변경기준을 만들어두어야 할 것이다.



도산서원(사적 170호)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도면

■ 건축물 수리범위 유지

건축물 수리 범위는 가능한 한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무리 당시의 기법을 사용하고, 같은 재료를 사용한다 해도 당초 물적 특성을 그대로 재현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부재를 교체해야 할 경우 그 범위를 최소화 하는 것이 좋다. 수리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장점검 단계부터 철저하고 치밀하게 점검이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러나 해체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은폐된 부재의 경우에는 해체 후 보수범위를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서원 권역별 보수 및 정비

서원 권역별로는 서원 내 건축물과 서원 주변건축물, 경관조경, 편의시설 및 조형물의 보수 및 정비사항에 대한 사항들을 제시하였으며, 서원내 건축물로는 사당, 강당, 외삼문, 내삼문, 협문, 동재, 서재, 제기고 등 부속건물, 수직사, 담장, 마당, 공동화장실 등을 포함한다.

(1) 서원 내 건축물

- 서원 건축의 전통 구조·양식을 변형시키지 않는다.
 - 기존 부재는 최대한 재활용 한다.
 - 전통기법을 기본으로 하여 수리 한다.
 - 수리는 고증에 의하며,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한다.
- ① 보수는 원래의 형태가 남아있거나, 원형에 대한 고증이 가능 한 경우, 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시행할 수 있다.

② 복원은 멸실된 부분의 원형고증이 가능한 경우 시행할 수 있다.

- 수리 완료와 동시 수리 전 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도면, 사진을 첨부하여 수리보고서를 작성하여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소수서원(사적 55호) 경림정 건물보수

- 문화재 주변의 환경까지 보호 유지 하여야 한다.
- 원래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 담장은 원래 형태와 규모로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의 형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원의 건축양식과 규모를 감안하여 크기와 형태를 결정한다.
- 마당의 표면은 흙바닥이나 마사토 깔기하며, 전통적인 옛 모습을 유지하여야 한다.
- 공중화장실은 가능한 한 서원외부에 건립하되 불가피하게 서원내에 건립할 경우에는 전통한옥 형태로 한다.

(2) 서원 주변 건축물

- 주변경관은 현재의 경관구조를 유지하고 인위적으로 변형된 자연경관은 가능한 한 원형으로 회복한다.
- 서원 주변에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반드시 지하 매장유구조사를 실시한다.
- 서원 주변에 신축되는 건축물의 외형은 전통한옥 형태로 한다.
- 건축물 외부에 현대식 재료 사용은 가능한 최소화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통재료나 문양으로 서원 경관과 어울리도록 한다.
- 난방기의 실외기 등 난방시설 등 외부에 설치되는 기기나 도구는 가능한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전통재료를 이용하여 차단시켜야 한다.
- 계량기, 점검구 등은 가능한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실내에 설치한다.
- 외부 조명등은 전통건축과 어울리는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 건물 외부에는 현대식 간판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3) 경관 조경

- 서원의 경관과 주변경관은 서원의 입지와 의미를 보여줄 수 있도록 진정성이 보존되어야 한다.
- 서원 내외의 경관은 전통적인 경관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 외래수종 식재를 배제하고 전통조경으로 한다.

- 경관 상 어울리지 못하거나 전통조경과 맞지 않는 수종들은 제거하거나 이식하여야 한다.
- 과거에 조성된 견치석쌓기 등 외래조경 시설물 등은 점진적으로 전통방식으로 정비한다.
- 배수로는 노출형, 매립형 등 지형여건에 맞게 설치하며, 우수로와 오수로는 분리 설치한다.
- 우수로는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매립형으로 하며, 정화시설로 연결한다.
- 배수로 석축은 전통양식으로 정비한다.
- 배수로는 자연재해 우려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위적으로 직선화하거나 폭을 넓히지 않고 자연그대로 정비한다.

(4) 편의시설 및 조형물

- 소화전을 설치할 경우 외부에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장내 매립, 지중화 등 고려)
- 소화전 함은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재료와 형태로 제작한다.
- 음료대, 간이의자, 휴지통, 이정표, 안내표지판 등 관람편의시설은 서원의 특성을 감안하여 간결하고 친환경적으로 제작, 설치한다.
- 가로등의 수는 최소한으로 설치하며, 서원의 특성에 어울리는 형태 및 재질로 제작하여 설치한다.
- 가로등은 가능한 한 담장 내에 매립하거나 담장 높이 이하로 하여 노출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 전기 통신 간선시설은 가능한 지하에 매설하도록 한다.



(5) 안내판의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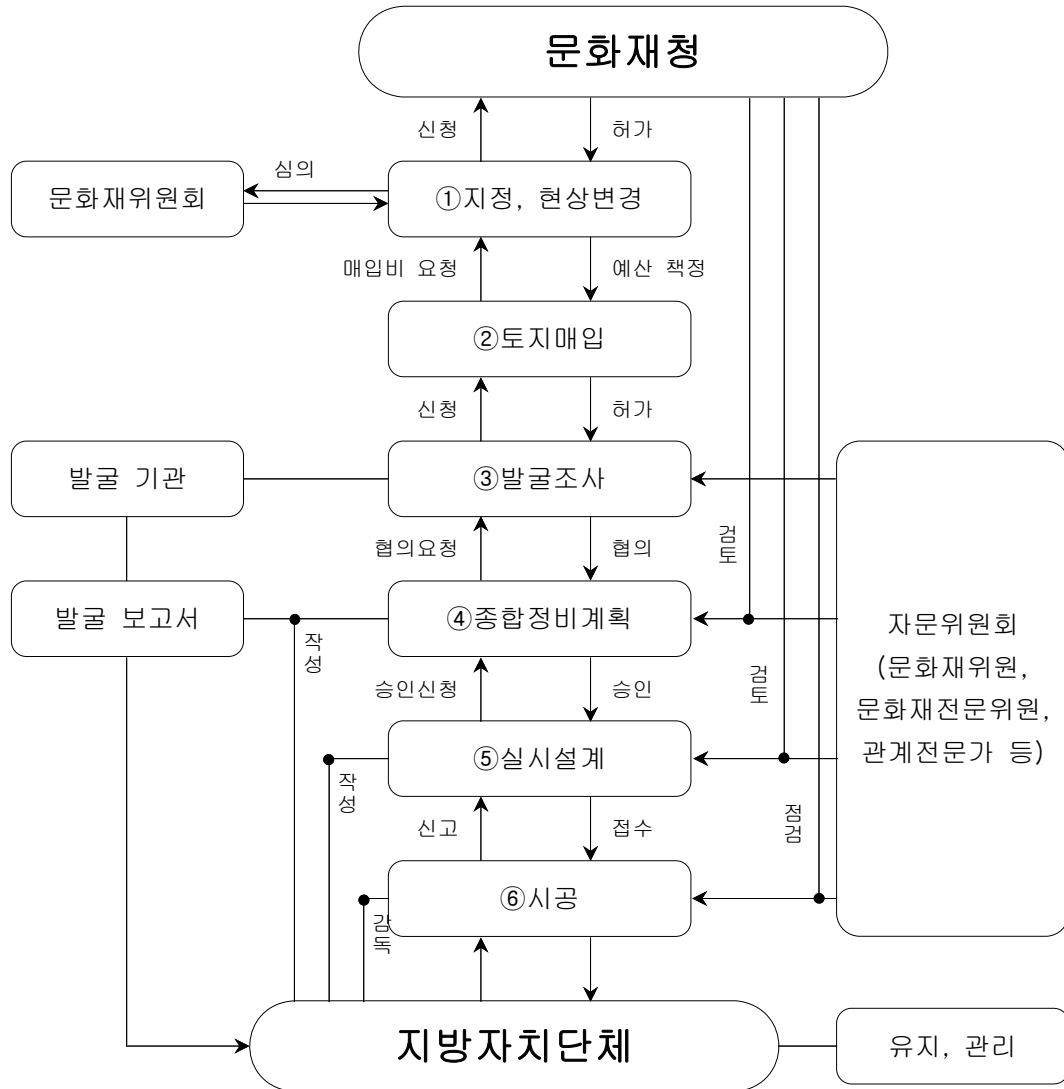
- 서원 문화재의 특색을 반영하되 전체적인 디자인 시스템에 있어 일관된 분위기는 유지해야 하며, 무분별한 안내판 설치의 경관 저해 요인이므로 최적의 수량 설치, 대상 문화재에서 문화재 주변 경관까지가 문화재의 한 요소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또한 안내판은 정보전달 매체와 연계하여 안내판의 기능, 역할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문화재 안내판은 해설안내판과 기능성 안내판으로 구분하며, 해설안내판은 종합안내판, 권역안내판 등으로 분류되며, 이 중 한 개 이상 설치하도록 한다. 종합안내판은 유적 규모가 크고 다수의 건축물이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곳에 설치하며, 권역안내판은 유적 내 여러개의 공간이나 건축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 안내판 설치 수량은 최소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문화재 규모 및 관람자의 편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 및 분석에 따라 적정 수량을 결정한다.
- 안내판의 크기는 관람객 입장에서 최적의 편의를 줄 수 있는 크기를 선택하고, 문화재 및 건축물의 규모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지나치게 웅장하거나 비대하여 문화재를 가리거나 관람객에게 위압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
- 전반적인 안내판 형태는 가능한 한 장식적 요소가 없는 단순형태로 유적이거나 건축물 자체가 더 돋보이도록 하며,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과거의 안내판 형태를 지양하고 해당 문화재 특성에 어울리는 크기와 형태를 선택하되 문화유산의 격에 맞는 미적 가치를 지니도록 한다.
- 색상은 원색위주의 자극적인 색상을 지양하고 눈의 피로를 감소하고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색상을 사용하며, 2~3가지 색상 이내 최소색을 사용하여 현란하거나 화려하지 않도록 한다.
- 재질은 대상문화재의 특성, 주변경관에 가장 잘 어울리는 재질을 사용하고, 기존의 반사성이 강한 스틸 위주의 재질을 지양하고 다양한 소재(비철금속, 목재, 합성재료)를 사용하며, 가급적 친환경적인 소재 사용으로 인공소재 사용시 자연소재에 가까운 느낌으로 표면마감을 한다.
- 안내판 설치위치는 문화재를 직접적으로 가리지 않아야 하며, 관람자의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동선과 연계되도록 하고 각각의 기능을 충족시킬수 있는 적정 위치에 설치한다.
- 안내문안은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하며, 간결하고 쉽게 표현하도록 하고, 건축구조 및 형식 등 전문적인 용어사용을 지양하며, 학습 목적의 전문적 지식은 리플릿 등 타 매체를 통하여 보완한다. 다른 매체와의 역할분담과 연계활용을 고려한 정확하고 기본적인 정보위주로 작성하며, 관람자의 이해와 흥미유발을 위하여 스토리텔링 기법의 가미도 고려한다. 또한 다국어 표기로 인한 안내판의 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문안은 2개국어(국/영)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기타 외국어는 리플릿 등 타 매체로 대체)
- 글자의 크기는 관람객이 식별 할 수 있는 적정 크기로 작성하고 가독성을 높이는 정직한 서체가 바람직하며, 장식적인 서체는 가급적 배제한다.



3. 보존·정비 절차

수리는 보존계획의 수립, 설계도서의 작성, 설계승인, 공사발주 및 시공, 준공(수리보고서 작성) 절차에 따라 시행 한다.



[표9]사적 정비흐름도

1) 계획의 수립

■ 기초적인 자료조사 실시

서원의 유형적인 현황자료 뿐만 아니라 인문사회적 기초자료를 조사한다. 건축, 전적, 문서와 같은 유형적인 문화유산과 더불어 전통적인 서원생활, 食문화, 衣문화,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각종 전통의례 등을 조사한다. 이러한 조사는 영상자료와 함께 기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원의 역사적 문화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물적 조사를 실시하면서 이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 보존상태와 훼손상태 등을 조사한다. 이와 함께 인문사회적 배경에 관한 사항도 함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자료는 서원 활용에 있어서 중요한 문화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 서원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의식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서원의 소유주는 대부분 문중이나 유림단체이다. 이들에게 서원의 역사적 가치, 지역과 서원의 관계성, 서원 주변경관의 의미와 가치와 등을 인식시킴으로서 서원이 지역의 문화중심이라는 의식을 고취시키도록 한다.

■ 역사 문화환경과 관련된 법규 조사 및 적용법 근거 모색

문화재보호법, 건축관계법, 도시관계법, 시 조례 등 역사 문화환경을 포함하여 보존을 위한 개발방법과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이러한 계획에 있어서 법적 근거가 미비할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규검토를 실시한다. 시 조례로 이와 같은 법적 근거가 적용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검토결과 법적 보완이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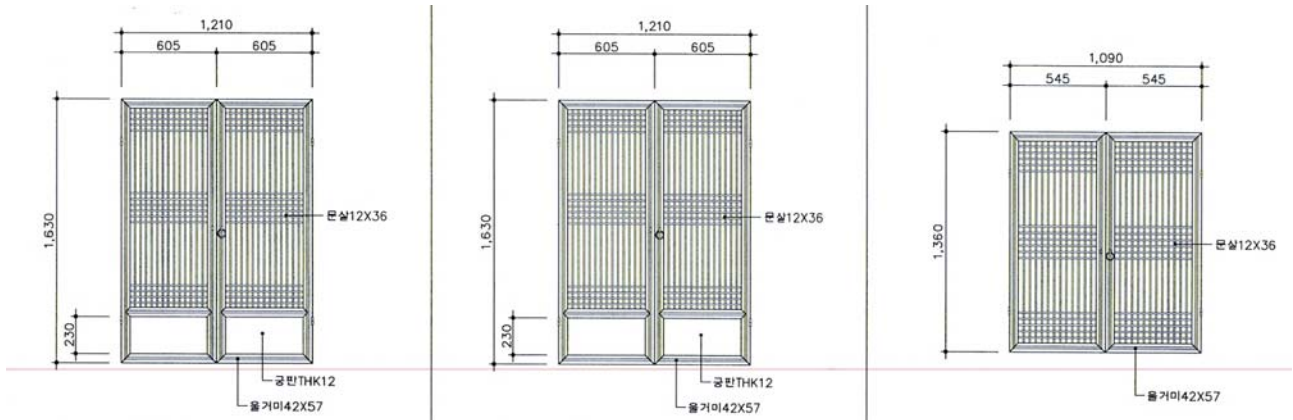
병산서원(사적 260호) 만대루

■ 계획의 기본적인 대안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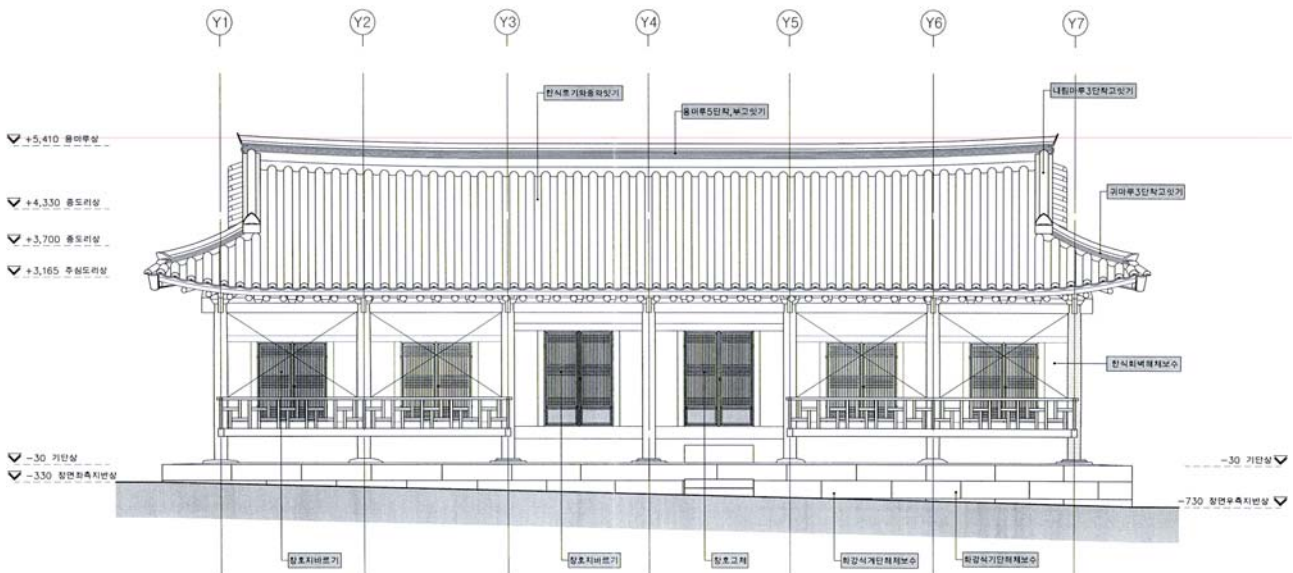
보존대상으로서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특성과 실정에 맞게 물적 계획을 실시한다. 지금까지의 현황조사와 실측자료, 현실적인 법 적용 문제 등을 바탕으로 건축문화재를 포함한 그 주변에 대한 효율적인 보존과 활용방안을 계획한다. 이것은 최근 새로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2(99.5.24.개정) 및 동 시행령 제4조의2(99.6.30.개정)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이 수립」 조항을 적극 준용하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2) 설계도서의 작성

- 수리구간에 대한 현황 측량을 실시한다.



- 설계 전에 관리단체로부터 기초조사 결과와 종합정비계획을 제출받아 수리구간에 대한 현황조사를 면밀히 해야 한다.
- 시방서는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에 따라 일반시방서와 특기시방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건물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상세도면을 작성한다.
- 자재수급 방안을 구체적으로 시방서에 명기한다.
- 기타 발주자의 요청사항을 설계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는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문화재 실측·설계업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3) 설계감독관

- 시행청은 설계발주와 동시 설계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감독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 설계감독관은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설계 전반에 대하여 관리 감독 하여야 한다.
 - (1) 기초조사 및 종합정비계획내용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사전에 설계자에게 설계도서 작성 지침을 명확히 지시하여 설계도서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2) 설계단계에서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도자문단을 구성 운영하여 설계도서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자문 및 검토를 받아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관계전문가의 자문 또는 설계검토의견으로 갈음할 수 있다.
 - (3) 설계도서 작성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문화재청에 기술지도 또는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설계가 완료된 후에는 감독관의 설계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에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 (4) 설계자로부터 작업일지 등 설계관련 일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5) 기타 시행청에서 정한 조례 등 타 법령에서 정한 감독업무를 준용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의 승인

- 시행청은 작성된 설계도서를 성실히 검토한 후 문화재청에 승인을 요청한다.
- 시행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시·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에 승인요청 할 수 있다.
- 문화재청은 시행청에서 승인 요청된 설계도서를 검토·승인한다.
- 문화재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청에서 승인 요청된 설계도서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검토·승인할 수 있다.



5) 공사 시행

시행청은 문화재청에서 승인된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발주하여야 하며, 내역 및 단가에 대하여는 지자체 여건에 맞추어 할 수 있다.

6) 공사의 감독

- 시행청은 착공과 동시 공사 감독관을 임명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에 따라 수리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한다.
 - (1) 수리공사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및 관리감독을 한다.
 - (2) 기술자문 등 문화재청과 업무협의를 전담한다.
- 착공 후 15일 이내에 문화재청에 착공보고를 한다.
- 공사규모에 적절한 수리기술자, 기능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시공의 품질을 높이도록 한다.
- 시공자로부터 작업일지 등 공사 관련 일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착공과 동시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기술지도자문단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 설계변경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계변경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필요할 경우 문화재청에 기술지도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준공 후 15일 이내에 수리보고서(CD 포함)와 관련 서류 및 사진첩을 첨부하여 문화재청에 준공 보고를 하여야 한다.
- 기타 시행청에서 정한 조례 등 타 법령에서 정한 감독업무를 준용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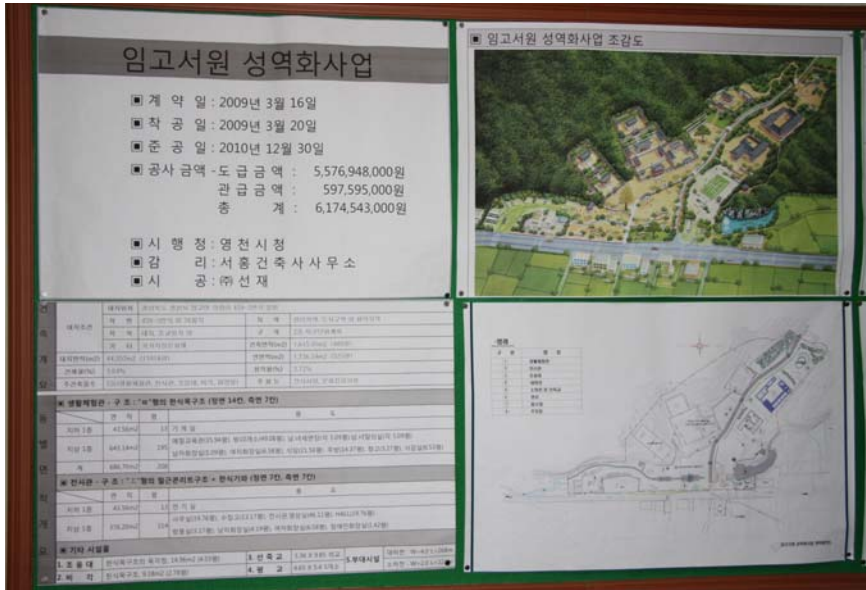


7) 시공자의 직무

시공자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수리업자로서, 시공전반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수리업자가 해당 현장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였을 경우 시공자는 현장대리인을 말한다.

- 수리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기능자를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 착공 전 구체적 공사추진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받는다.
- 작업일지 및 자재 수불부, 안전관리 대책수립, 공정표 등 공사와 관련된 서류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자재수불부, 수습자재 관리대장, 재료 분석표, 준공검사서, 자문의견서를 작성한다.
- 재료의 반입 및 반출은 감독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도록 한다.
- 화재예방 등 재해 및 재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 기록보존을 위하여 수리내용 및 고증조사 등의 상세한 내용을 수록한 수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책자와 CD로 제작하여 시행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시공 전 기술지도자문단의 자문 및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수리구간에 대한 해체를 하도록 하고 설계도서 작성 시 조사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한 조사·사진촬영·도면작성을 하여 기록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기술지도자문단의 자문결과에 따라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공사마무리 단계에서 기술지도자문단의 자문을 받는다.
- 감독관이 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장기계속공사

서원의 수리공사를 함에 있어 시행청에서는 공사의 성격과 범위 등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장기계속공사로 수리 할 수 있다.

9) 준공검사

준공검사는 공사완료 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 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준공검사 이전에 설계도서대로의 시공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기술지도자 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시공자는 다음의 준공관련 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준공도면 및 공사 전·중·후 사진
 - (2) 기술지도자문단 자문결과 및 고증조사 자료 일체
 - (3) 공사일지 등 공사관련 서류 일체
 - (4) 수리보고서
 - (5)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 일체
- 준공검사자는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소수서원(사적 55호) 경렴정 보수전·후

10) 수리보고서의 작성

- 수리보고서는 시공자가 유적정비의 기록방법, 항목 등을 정하고, 사업 진행 중에는 상황에 따라 그 방법, 항목 등을 적절하게 수정 하면서 진행한다.
- 기록은, 일지 등의 기록과 회의록, 도면·사진 그 외의 기록 매체를 사용하여, 필기, 그림, 촬영 및 컴퓨터의 데이터 파일 작성 등에 의해 행한다. 작성한 기록은 적절히 정리·보관하고, 중요한 기록에 관해서는 반드시 백업을 여러 곳에 설치하여 자료 분실 방지를 도모한다.
- 사업 진행 과정에서 작성·편집하여 사용하는 도면에는, 지형도 등의 기본도면, 발굴 조사 등의 각종 조사의 성과를 기록한 도면, 계획·설계·시공에 관한 도면 등이 있다. 기록이나 자료 담당자는 계획·설계의 변경에 따라 불필요해진 도면에 관해서도 검토의 과정을 나타내는 자료로서 공사의 담당원 등의 승인을 받아 주요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보관한다.
- 사진은, 정비 전·정비 후의 상태 및 시공 기술 적용과정을 기록한다. 촬영에 있어서는 정비사업 보고

서의 작성, 출판을 염두고 두고, 기록하는 내용, 목적에 따라 공사 담당자와 긴밀한 연락을 통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공정을 빠짐없이, 조사·공사의 공정에 맞추어 촬영 계획을 세워 실시한다. 또한, 사진은 다양한 소개와 전시·인쇄물의 제작에 있어서 사용되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현상 후의 필름과 디지털파일의 적절한 정리·보관에 유의하고, 특히 사용빈도가 많은 것과 중요한 것에 관해서는, 분실 방지에 유의한다.



도동서원(사적 488호) 강당 보수

- 수리보고서에는, 조사와 공사 등의 경과·내용을 나타내고, 해당 유적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유적의 개요, 정비 방침과 내용·경과뿐만 아니라, 관리·운영 및 공개·활용, 이후의 과제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유적 표현의 근거와 복원 방침, 전통적인 기술과 새로운 기술의 적용 등 정비에 있어서 실시한 특수한 조사와 적용한 재료·공법에 관해서는 상세히 기재한다.
- 수리보고서는 준공완료 후 전체 공사 과정에 대한 수리공사보고서로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현장대리인이 작성한 후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실측 등 전문분야는 해당분야 전문가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
- 시행청에서는 제출받은 수리보고서는 기록보존을 위하여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및 국가기록원에 각 3부씩 배포한다.
- 수리보고서의 작성항목은 아래표와 같다.

[표10]수리보고서 작성 항목

항 목	내 용	
지정	사적 등 지정의 경위, 지정 연월일, 지정 범위, 지정 설명 등	
관리단체 지정	지정 년월일의 외에 관리 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 등	
소재지		
사업의 기획	사업 책정의 경위, 사업에 관한 검토 내용, 미팅, 회의에 있어서 검토의 경과·내용 등	
상위 계획	계획책정의 경위, 타 부처·기관·조직과의 관련된 사업의 경과, 회의에 있어서 경과·내용 등	
기본계획	기본계획 책정에 관한 위원회에 있어서 검토의 경과·내용, 보고서의 편집·인쇄 등	
보존·수리를 위한 기초 조사	보존·수리를 위한 기초 조사에 관한 검토 경과, 조사의 경과·내용, 성과 및 위원회 등에 있어서 검토의 과정·내용, 조사의 성과 등	
인허가 신청	인허가 신청의 경과·내용·신청 연월일, 신청 내용 등	
실시 설계	실시설계에 관한 위원회 등에 있어서 검토의 과정·내용, 설계 내용 등	
시공·감리	공사 및 공사 감리의 실시 내용·경과 등	
예산	소요된 예산	
공사추진내용	1) 계획공정표	
	2) 실시공정표	
결산내역		
세부공사내역	1) 재료 수급방법	
	2) 공사전 현황(사진 첨부)	ㄱ. 전경 ㄴ. 건축물 ㄷ. 담장 등
	3) 해체공사	ㄱ. 해체 방법 ㄴ. 수리 전 방식 ㄷ. 자문의견
	4) 설계 변경 내역(변경 전/후 도면 수록)	
	5) 시공 방법	ㄱ. 인력 ㄴ. 목재가공방식 ㄷ. 담장 축조방식 ㄹ. 조경 정비
	6) 자문의견서	
	7) 준공검사서	
<p>※ 부록 : 공정별 세부사진, 계획도면, 해체도면, 준공도면 ※ 상기 항목은 기초조사 및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를 전제로 하며, 공사 시 조사된 고증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수리보고서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그 외, 관계 기관과의 협의와, 해당 사적 등의 조사·정비에 있어서 전문가 등으로 부터 받은 지도·조언 등을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관리·운영의 단계에 있어서는, 유지관리 등의 기록 등에 관해서도, 정리·보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p>		

※ 서원의 정비사례

<잘못된 사례>



도산서원(사적 170호) 담장 보수전(1970년 이전)



도산서원(사적 170호) 담장 변형(사고석 담장)



서원 증정에 잔디식재 및 조경은 어울리지 않음



전통 석축과 맞지않게 견치석 형태로 석축쌓기함



견치석 석축쌓기와 계단설치 재료 및 형태의 부조화



누각 기단석의 가공처리 마감의 흔적



기단의 변형(적벽돌 시공)



난간 설치 형태의 변형



기단을 시멘트로 설치함



건물 외벽에 덧달아낸 보일러실



서원 중정을 잔디식재와 자갈을 부설하여 진입공간 구성

<주변경관을 저해하는 요소>



서원 누각 전면에 수목을 식재하여 경관 저해



서원 입구에 주차장 설치로 경관 저해



서원 입구에 설치된 도로표지판이 경관 훼손



확성기 설치로 어울리지 않음



건물과 바로 인접하여 가로등 설치



건물에 전기배전함 및 덧달아댄 시설물



서원 전면에 안내판 설치로 전체적인 입지경관 저해



기단의 변형·화강석 가공설치로 건물과 부조화



서원내 소화전 설치의 부적절

5. 서원의 관리 및 활용

01. 서원의 관리

- 1)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 2) 서원 건축물관리
- 3) 고문서(서적)의 보존관리
- 4) 경관 보존관리
- 5) 자료의 보존관리
- 6) 제한을 통한 보존
- 7) 서원 보존관리대장 기록
- 8) 서원 건축물 안전점검
 - 가) 필요성
 - 나) 점검방법
 - 다) 점검의 실시 및 기록
 - 라) 점검 후 조치사항

02. 활용

- 1) 활용의 기본원칙
- 2) 서원 활용을 위한 정비계획의 수립 및 보고
- 3) 서원 활용의 방향 및 계획수립
- 4) 서원 활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사용
- 5) 사후평가



제 5장 서원의 관리 및 활용

1. 서원의 관리

1)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 문화재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단체는 서원의 역사문화자료, 건축문화재, 경관 등이 원형대로 보존·관리되고, 효율적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관리단체는 서원의 보존·관리가 주변 역사·문화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서원의 진정성이 유지 되도록 보존·관리 하여야 한다.
- 관리단체는 서원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지역주민 등에게 이해·홍보시키기 위하여 접근성 제고, 교육장으로서의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소수서원(사적 55호) 학구제

2) 서원 건축물 관리

■ 목적과 필요성

서원은 인류의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서원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는 서원의 원형을 지속가능한 문화유산으로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고양시키고 인류의 문화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가 있다. 서원건축은 사찰이나 살림집과 같이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문화재와는 달리 활용빈도가 낮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 질 가능성이 있다. 서원의 보수공사를 제외한 건축물 유지관리는 소유자가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능력이 부족하면 보존상태가 불량해 지므로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서원의 관리는 크게 건축물 관리와 운영관리로 구분된다. 본 항에서는 건축물을 중심으로 관리방법에 대해 언급하도록 한다.

■ 서원 건축물 관리과정

서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초조사, 종합정비계획, 세부정비계획, 정비공사, 일반관리의 단계로 관리계획이 진행되어야 한다. 서원의 성격과 문화적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서원의 건립 및 연혁, 성격, 건축물 현황, 주변 경관, 관리 현황 등 기본적인 자료가 준비되어야 한다. 서원에 대한 기초자료는 서원에 대한 기록유지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서원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서원의 문화유산적 성격과 가치판단에 따라 종합적인 정비계획이 이루어지게 된다. 종합정비계획은 계획단계에서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에 의해 서원 고유의 문화유산적 가치가 변형되거나 원형유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에 의한 대한 평가를 거치도록 한다. 평가를 거친 종합정비계획은 정비계획 추진 일정과 예산수립과정을 거쳐 세부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즉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세부 정비계획은 서원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 정비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소수서원(사적 55호) 학구재

■ 서원 건축물 관리방법

각 분야별로 관리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기초자료조사는 서원의 역사적 배경, 사건, 서원의 배향 인물과 서원과 관련된 인물, 현존하는 건축물 현황 및 보수·수리 이력, 주변 경관 현황, 현재 건축물 관리 및 활용현황 등이 포함된다. 기초자료는 문화적 가치의 높고 낮음에 관계 없이 모든 서원이 필요한 기록이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다. 두 번째 종합정비계획은 서원의 기초자료조사를 근거로 문화유산적 가치가 있고, 주변경관과 함께 서원의 보존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실시해야 한다.

종합정비계획에서 반드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변형되거나 훼손된 서원의 원형을 회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종합정비계획으로 인해 서원의 문화유산적 가치가 고양될 수 있어야 한다. 서원의 영역, 실존했던 건축물 등 원형을 고증하기 위해 시굴이나 발굴의 필요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다른 문화유산과 달리 서원은 주변의 경관이 매우 중요성하다. 따라서 주변경관을 보존하기 위한 계획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간혹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소유단체 또는 관리단체의 요구에 의해 유산의 가치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시설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서원 종합정비계획은 사전에 문화재청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진행해야 한다. 서원 정비계획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서원이 지니고 있는 원래의 경관과 가치를 되살리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는 세부정비계획이다.



김포 우저서원(경기도 유형문화재 10호)

이 단계는 종합정비계획을 구체화 하기 위한 실시설계 단계가 된다. 세부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 양식이나 재료, 기술 등이 원형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서원을 관리하기 위해, 또는 문화의 원형을 지속하기 위해 추가시설이 필요한 경우 원형 경관을 크게 훼손하지 않도록 추가시설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세부정비계획은 그대로 정비공사로



광주 월계서원(광주광역시 기념물 9호)

이어지기 때문에 특히 면밀한 검토과정이 필요하다. 이 단계에서 오류가 있을 경우 원형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 단계를 거치면 마지막 네 번째 정비공사로 들어가게 된다. 정비공사 단계에서는 세부정비계획에서 결정한 내용이 정확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단계이다. 특히 서원건축의 원형, 특히 양식, 재료, 기술, 기법, 경관에 대한 내용을 세밀하게 감리하도록 한다. 현장 사정에 따라 원형유지가 어려울 경우 대안을 마련하는 차선책도 필요

하다. 특히 공사 관계자는 문화재와 전통기술에 대한 지식과 식견이 풍부해야 할 것이다.

■ 서원 건축물 관리 과정 및 방법은 다음표와 같다.

[표11]서원 건축물 관리과정 및 방법

단계	조사단계	정비계획단계		실시단계
항목	기초자료조사	종합정비계획	세부정비계획	정비공사
내용	연혁 인물 건축물 현황 주변경관 관리현황	문화재 원형 회복 문화유산의 가치 고양 시·발굴조사 필요성 검토 주변경관의 보존여부 검토 변형의 범위 설정	변형양식 검토 변형재료 검토 변형기술 검토 추가시설 적정성검토 변형의 범위 설정	세부정비계획 확인 원형양식 유지 확인 원형기법 유지 확인 원형재료 사용 확인 원형경관 유지 확인

■ 종합정비계획 관리

서원의 종합정비계획은 서원의 역사적 가치, 건축약식 및 시대적 가치 등 서원의 문화유산적 가치, 도시개발 등에 의한 주변경관의 훼손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종합정비계획을 작성한다. 종합정비계획에서 우선적으로 설정해야할 것은 정비계획의 기본방향과 개념 설정이다.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은 서원의 성격과 역사성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서원의 기능과 역할을 완전히 벗어나서는 안된다. 역사적으로 서원의 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지속가능한 서원으로 존재



할 수 있어야 한다. 전통적인 서원의 기능이 현대사회에서도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비계획 기본 방향과 개념을 찾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서원의 경관보존이다. 경관보존은 서원내 경관과 서원 주변 경관으로 구분된다. 같은 학교기능이지만 서원은 향교와 달리 배치계획에서 주변 경관을 매우 중요한 결정요소로 보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서원은 경관이 수려하고 위치적으로 읍내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원 내 경관은 건축물의 배치계획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서원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배치방법을 공유하고 있었다. 즉 향사공간과 강학공간으로 분리되어 각각의 기능에 맞게 공간을 구성하게 된다. 지형조건, 창건당시 경제규모, 역사적 변천에 의하여 서로 다른 건축경관을 만들어 왔다. 따라서 서원건축의 중심공간은 역사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관을 관리해야 한다. 건축물 복원 작업은 서원의 역사성을 회복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원형에 대한 고증은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다. 서원 주변 경관은 가능한 한 원래의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

되어야 한다. 근래에 들어와 개발로 인해 주변경관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 훼손으로부터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서원 주변경관 관리지침을 종합정비계획에 포함시켜야 서원의 창건 취지와 의미를 지속시킬 수가 있다. 세 번째는 서원의 역사와 경관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원의 중심공간(향사 공간과 강학공간)에는 가능한 한 건축물을 추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훼손된 시설물 복원은 예외로 한다. 이것은 서원건축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다. 서원 주변에 서원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시설물의 신축은 경관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한다. 가령 교육관, 박물관, 관리사무소 등 역사적으로 서원에 없었던 건축물을 건립할 경우 서원 본 건물을 제압하는 규모와 경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득이 규모가 커질 경우 서원과 일정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12] 종합정비계획 관리

항 목	항목별 정비요소	구성요소의 정비계획 내용	정비계획 관리내용
정비계획 기본방향	현대사회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원의 역사성 보존 서원 기능과 역할의 현대적 재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원이 현대사회에 지속가능한가
경관보존	서원 내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원 중심구역 경관은 원형 유지 서원 역사성유지에 필요한 원형경관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원의 주요 공간이 원래의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는가
	서원 주변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원의 창건당시 경관의 의미 유지 최소한 보존해야할 완충공간 확보 서원 주변경관 관리지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원주변의 개발계획은 없는가 서원 주변경관이 원래의 모습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가
건축시설물 신축	박물관, 기념관, 교육체험관, 관리사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원 중심영역을 피할 것 서원건축물과 일정한 거리 유지 서원 건축물 규모 압도하지 않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축 건물이 서원 옛 모습을 지속 시키는데 도움이 되는가
편의시설 신축	화장실, 안내판, 매표실, 가로등	서원의 특성과 전통건축물에 어울리는 규모, 색깔, 형태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적 시설물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현대적 시설물이 얼마나 되는가
조경계획	수목, 수석, 화회류식재, 수로설치, 바다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원 전통성과 성격 맞는 조경요소 외래수종, 국적불명 조경요소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전통 조경요소와 부합되는가 현대적인 조경요소를 어떻게 최소화 할 것인가



병산서원(사적 260호) 입구 안내소

네 번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편의시설이다. 편의시설에는 화장실, 안내판, 매표실, 가로등 각종 현대적인 시설물이 이에 해당된다.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시설물을 건립하거나 설치할 경우 위치, 규모, 색깔, 조형성 등 신중하게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서원의 특징과 경관을 고려하여 전통건축과 어울릴 수 있는 시설물 설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시설물이 모든 서원에 똑같은 형태로 적

용되어 획일화 되는 것은 방지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수목식재, 화회류, 수석설치, 수로설치, 바다포장 등 조경계획이다. 서원의 조경은 일반 살림집이나 관청과 다른 조경계획은 하였다. 정비계획에서 서원과 어울리지 않는 수목을 식재하거나 외래수종을 식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전통에 맞지

얇은 괴석, 수석, 수로를 설치하는 일은 서원의 역사성을 그르치는 일이 될 것이다. 서원 및 경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3) 고문서(서적)의 보존관리

서적을 최적 상태로 보관, 관리 및 취급하는 것은 유물을 보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보관장과 선반은 난방기, 난로, 배수관, 자연광, 창문과 거리를 두어 배치한다. 또한 공기가 잘 순환되도록 벽면과 떨어진 공간에 설치하며, 오동나무 또는 삼나무와 같은 재질로 보관장을 제작한다. 서적은 각 선반에 1권씩 가로로 평형하게 놓혀 보관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보관장의 공간이 부족한 경우 3~4권의 서적을 포개서 보관할 수도 있으나 그 이상 포개서 보관하면 안된다. 손상이 심한 서적은 한지로 포장한 후 선반에 놓혀 보관하거나 중성용 박스에 넣어 외부로부터 추가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서적의 관리와 취급을 위한 추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다.



함양 남계서원도



필암서원 목판

- 서적을 펼치거나 펼쳐서 뒤집은 상태로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방법은 서적의 물리적 손상을 발생시킨다.
- 서적을 옮길 때 양손으로 서적의 중간 부분을 잡고 안전하게 옮긴다. 한 손으로 책등을 잡아서 이동시키면 안되며, 여러 권을 옮길 때에는 운반용 트레이를 이용하여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 3~4권 이상의 서적을 가로로 놓혀 포개서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밑에 놓린 서적에는 외형적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서적 내부에 수분의 적체 현상으로 인해 곰팡이 등 생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 서적의 표면이나 모서리에 쌓인 먼지는 부드러운 붓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청소해준다.
- 종이의 앞, 뒷면에 유리테이프 등과 같은 압착 테이프를 붙이지 않는다.
- 습기는 종이에 매우 해로우므로 습도가 높을 경우에는 방습제를 사용하여 보관한다.
- 종이가 잘 찢어지지 않을 때에는 그대로 두고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는다.

4) 경관 보존관리

■ 경관의 보존

서원 경관의 보존과 관리는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관리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 (1) 자연지형의 원형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 (2) 서원 내 적정인원 수용을 위한 절제된 장소 조성 및 지원시설이 배치되어야 한다.
- (3) 전저후고의 경사지형과 개방적 조망 경관을 보호하여야 하며, 자연지형을 변형하거나 높은 담장, 서원 전면 경관을 변형시키는 과도한 인위적 시설조성 등은 하지 말아야 한다.
- (4) 진입경관의 원형을 변형하거나 계단설치 등 획일적인 진입공간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 (5) 균제미 중심의 대칭적 경관 구성에 주의하여야 한다.
- (6) 서원의 중정(마당)에는 수목을 식재하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간략하게 수목을 식재할 수 있다. 되도록이면 후면에 수목을 식재하도록 한다.



산청 도천서원(경남 유형문화재 237호)

- 이러한 서원경관 요소의 원형을 보존 관리함으로써 한국 유교문화의 고유한 진정성을 보존해야 한다. 전통문화유산의 하드웨어 경관은 진정성이 생명이다. 특히 유교 경관은 정형화, 대형화, 획일화되어서는 안 된다. 유교경관은 비슷해보여도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개성과 다양성을 보존하고 정비관리 해야 한다.
- 서원 경관에 나타난 유교문화의 진정성을 보존하고 국민들이 그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서원경관의 '물리적 자연적 경관으로서 하드웨어가 정비 관리되고, 서원경관에 함축된 의미를 해석하고 이를 경관체험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서원 경관을 체험하도록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관리 운영하는 인적 체계로서 휴먼웨어가 제도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 서원 정비사업이 시작된 이래 최근까지 전국적으로 국비지원을 통한 서원 복원과 대규모 정비사업이 활발하다. 그러나 서원의 복원과 정비 사업이 건물의 복원이나 증축, 경관의 진정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반시설 확충에 초점을 두었고, 그 결과 ‘서원경관’은 보존이 아닌 훼손 혹은 변형으로 나타났다. 서원의 문화적 가치에서 서원경관의 중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서원 경관의 보존과 정비는 지금까지 무시되어 왔다.

(1) 입지경관

■ 자연성

수물·도시화 등 입지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서원이 다른 곳으로 재입지하는 경우, 원래의 자연적 입지 유형을 존중해야 한다.

■ 전저후고의 경사지형

·대규모 정비공사에서 차도 확보 등을 위하여 대로를 개설하면서 진입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산에서 내려오는 진입로를 만들거나, 주차시설이나 광장 혹은 새로운 지원시설을 건축하면서 자연적 경사지를 축대를 쌓아 평탄지로 만들게 되는 사례가 흔히 나타난다.(도산서원 진입로의 사례)



김포 우저서원(경기도 유형문화재 10호)

·이러한 자연지형 변형의 결과, 서원 외부의 강이나 산을 전망하는 시계가 차단되고 자연적 경사로는 인위적 계단으로 대체되어 자연적 상승감은 사라지고 강요되는 권위라는 느낌을 주게 된다.

·특히 계단은 석재 혹은 시멘트로 규격제품으로 제작되어 있을 뿐 아니라, 획일적으로 직선화되고 높이나 보폭이 청장년층의 신체규격에 맞추어 설계되어 진입에 부담감을 주기도 한다.

■ 개방성

서원정비 사업에서 한국 서원의 개방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 현대건축의 양식으로 설계 배치함으로써 서원의 개방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2) 전망경관

- 서원의 전면 경관은 서원 경관의 핵심이다. 따라서 전망경관을 보존하기 위하여 서원의 전면에는 주차장·대형건물 등의 인위적 시설을 원칙적으로 배제하여 자연 원형을 보존한다.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시설을 설치하고 녹지로 차폐하도록 한다.



병산서원(사적 260호) 풍광

- 서원 정비사업에서 조경을 위하여 서원 전면에 키 큰 대형 수목을 식재하는 것도 전망 경관을 훼손하므로 대형 수목은 유서 있는 수목을 제외하고는 배제한다.
 - * 필암서원 사례 : 전면의 전망 경관이 자연 농지에서 인공적으로 채워짐으로 경관원형이 훼손되었다. 경관원형은 전면에 펼쳐진 경지와 낮은 산들이 아늑하면서 시원해서 廓然大公의 의미에 부합한다.
- 서원 전면에 들어서는 상업시설은 녹지로 차폐하고, 시설농업의 경우도 생태농업으로 전환하도록 권장하여 전망경관을 보호한다.

- * 남계서원 사례 : 대형 정비사업을 하는데, 風詠樓 전면경관 보존이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전면의 자연적 농업경관 유지가 필요하다. 이런 점들이 정비사업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고, 풍영루 전망경관을 훼손하는 남계서원 앞 시설농업을 생태농업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서원과 관련된 브랜드화를 추진하는 방법도 고려.



함양 남계서원(사적 499호)

- 새롭게 문루를 설치하는 경우, 강당에서 전망하는 시각을 고려해서 기와지붕의 높이를 낮추고 문루의 개방성을 확대하여 강당에서 내다보는 전망경관 차폐현상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 * 병산서원 만대루 사례 : 강당에서 보는 전망경관을 문루가 차폐하지 않는 적절한 문루 구성이 주목.
- 도시화 주거지화로 전면 전망경관이 근본적으로 변경된 경우는 서원 이전을 고려해야 한다.
- * 臨川書院의 사례 : 경관원형은 전면에 펼쳐진 江景과 靑城山 石門亭을 마주하는 案對가 탁월했으나, 전면에 주택이 밀집함으로써 안대 경관을 완전히 훼손하였다.

(3) 전제후고의 위요 경관

- 서원 담장이 높아서 안에서 바깥 경치를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밖에서도 서원이 보일 수 있도록 평균인의 키보다 낮은 담장이 바람직하다.

(4) 위계적으로 분절된 예 경관

- 한국의 서원은 중국의 서원 묘우와 달리 권위 공간으로 진입하는 축이 하나로 획일화되어 있지 않다. 거의 모든 사당의 축은 강당의 좌측에 형성되어 있어 강당 축과 어긋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대칭성도 중국의 엄격한 구조로 다르다.
- 정비사업에서 경관원형 고증에 철저하되, 전체적으로 한국서원의 축과 대칭성은 입지한 장소의 자연 지세에 조화롭게 순응하도록 구성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예) 경관에서 엄숙정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획일적 단선 축 적용과 엄격한 대칭적 건물 배치는 피해야 한다.

(5) 연못 경관

- 사각형(方形)이 대부분이지만 반드시 사각형의 획일화해서는 안 된다.
- 연못은 유교적 상징성 뿐 아니라, 서원의 토양 유실방지, 습도보전, 수질정화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생태경관이므로 잘 관리 되어야 한다.



함양 남계서원(사적 499호)

- 원래 연못이 없었던 서원의 경우에도 우수 시에 자연스럽게 물이 모이는 곳에 연못을 조성하는 것이 전통적 생태지혜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6) 안마당(中庭) 경관

- 안마당은 서원의 중심 공간이므로 수목 식재와 잔디 포장 등 조경이나, 비석 등을 세우고자 하는 수요가 나타난다. 그러나 역사적 전거가 뚜렷한 사례 외에는 일체의 조경이나 기념물을 세우지 않고 비움의 공간으로 보존 관리하는 것이 서원 경관의 진정성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소수서원(사적 55호) 중정

(7) 수목식재 경관

- 서원내부에는 큰 나무를 심지 않는다.
- 수목 식재는 유교문화의 상징적 수목으로 제한한다.

소수서원(사적 55호)
중정



(8) 서원 주위 자연적 장소경관

- 서원 밖에 산재하는 자연적 장소들은 서원 관리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 그러나 도산서원의 天光雲影臺와 天淵臺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서원과 관련된 자연적 장소들은 한국서원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주요 경관요소이므로 보존 관리 되어야 한다.

5) 자료의 보존관리

- 서원자료의 보존을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분산 보존된 자료를 통합관리하여야 한다.
- 소장자료의 유실과 분실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6) 제한을 통한 보존

관리단체는 통행인의 안전을 위협할 소지가 있거나 안전관리에 장애가 되는 경우에는 통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건물의 변형이나 기타 출입 시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원형보존과 관람 및 탐방객의 안전을 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기타 보존과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원 내 주요 시설물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소수서원(사적 55호)

기 서원보존관리대장 기록

관리단체는 법 제33조에 따라, 서원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서원 보존·관리 및 변경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다음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록을 유지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1]

서원 보존관리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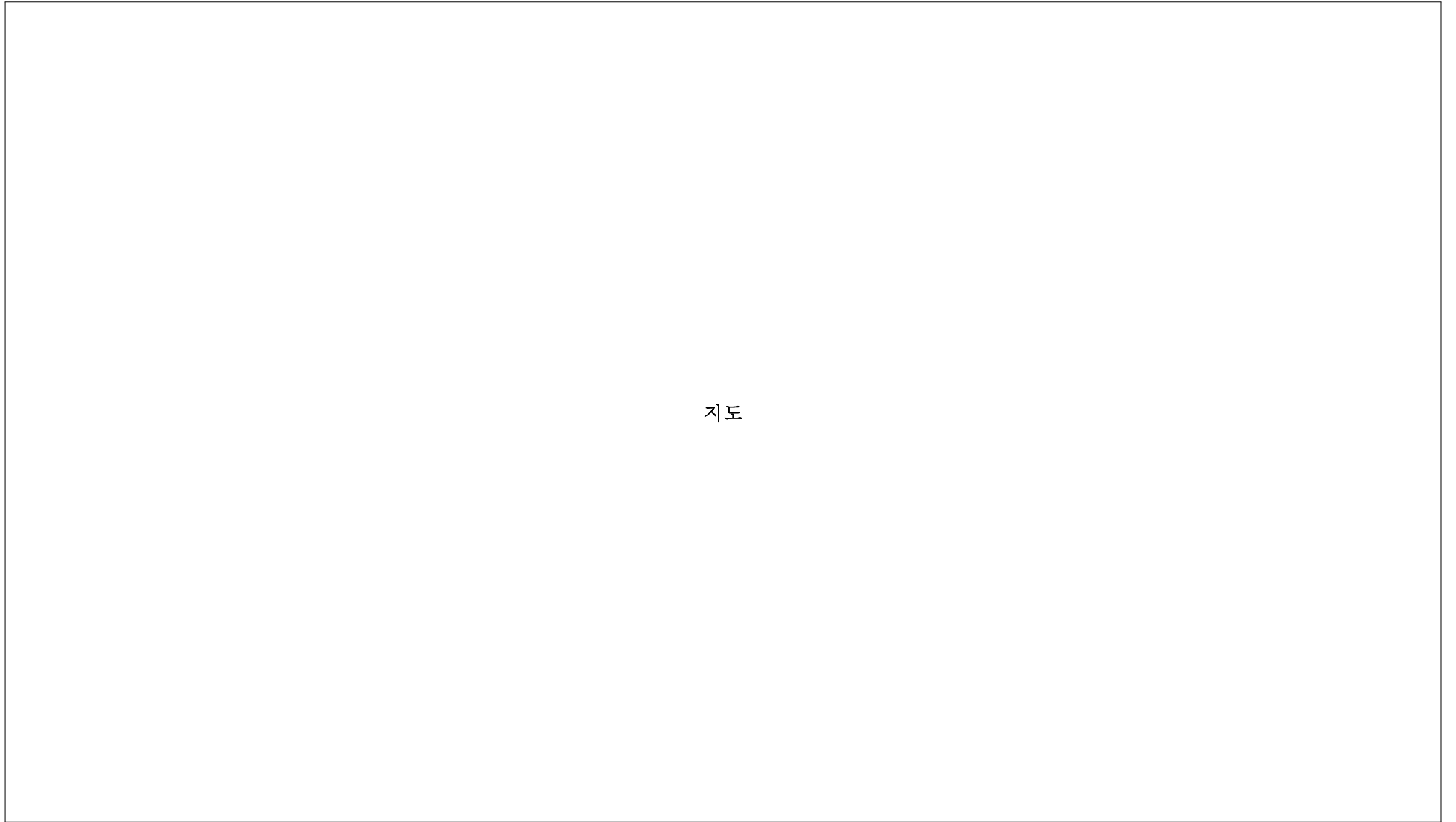
작성자 : (인) 작성날짜 :

문화재 종별		등급		지정번호		정식 명칭		지정년월일	
소재지							관리자		
부속 시설물							건축 및 제작 년대 및 시대		
지정사유									
관리상황									
일시	내용					일시	내용		

[별지 제1호 서식-2] (위치도)

(명칭 :)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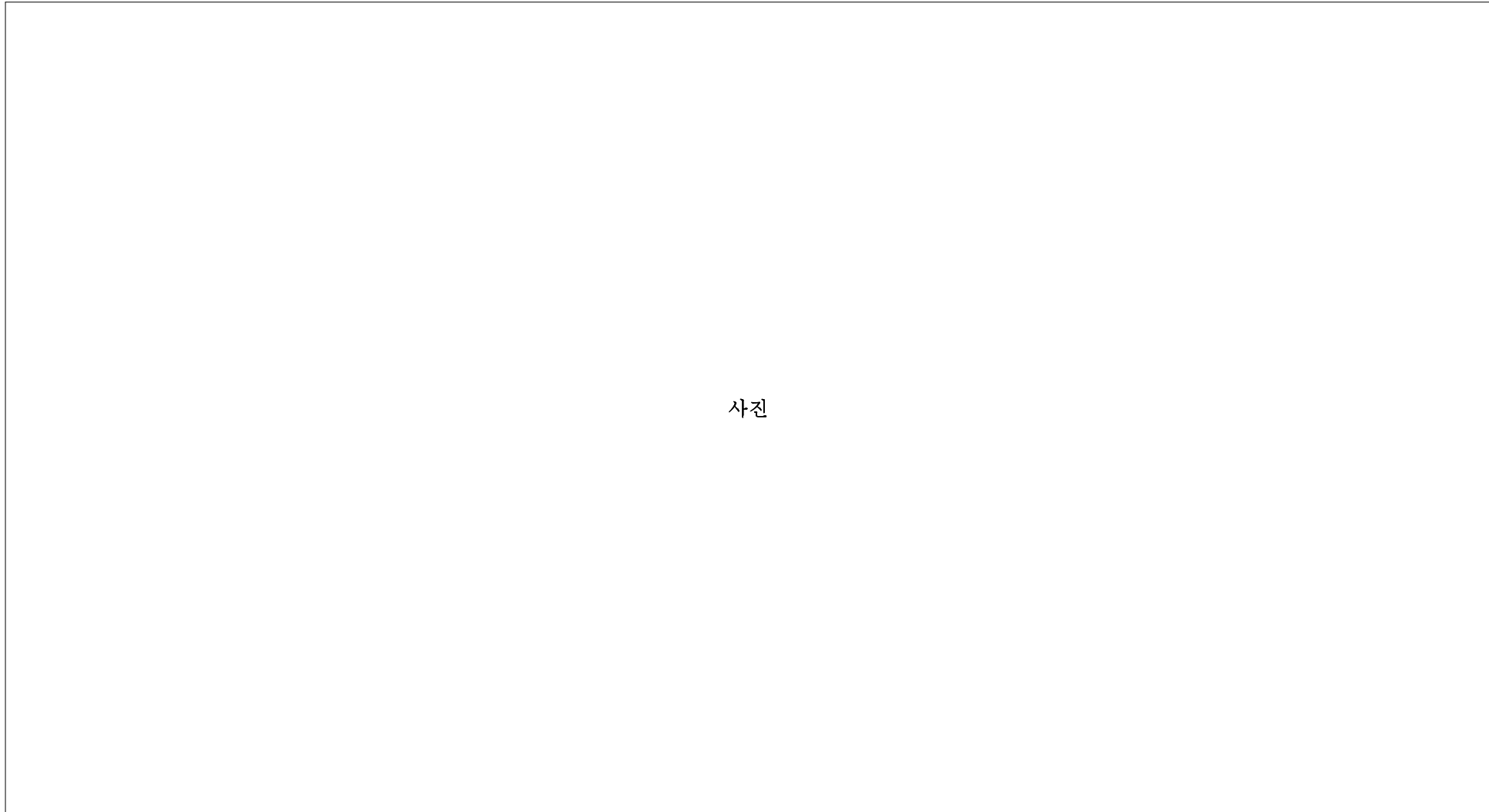


지도

[별지 제1호 서식-3] (사진)

(명칭 :)

전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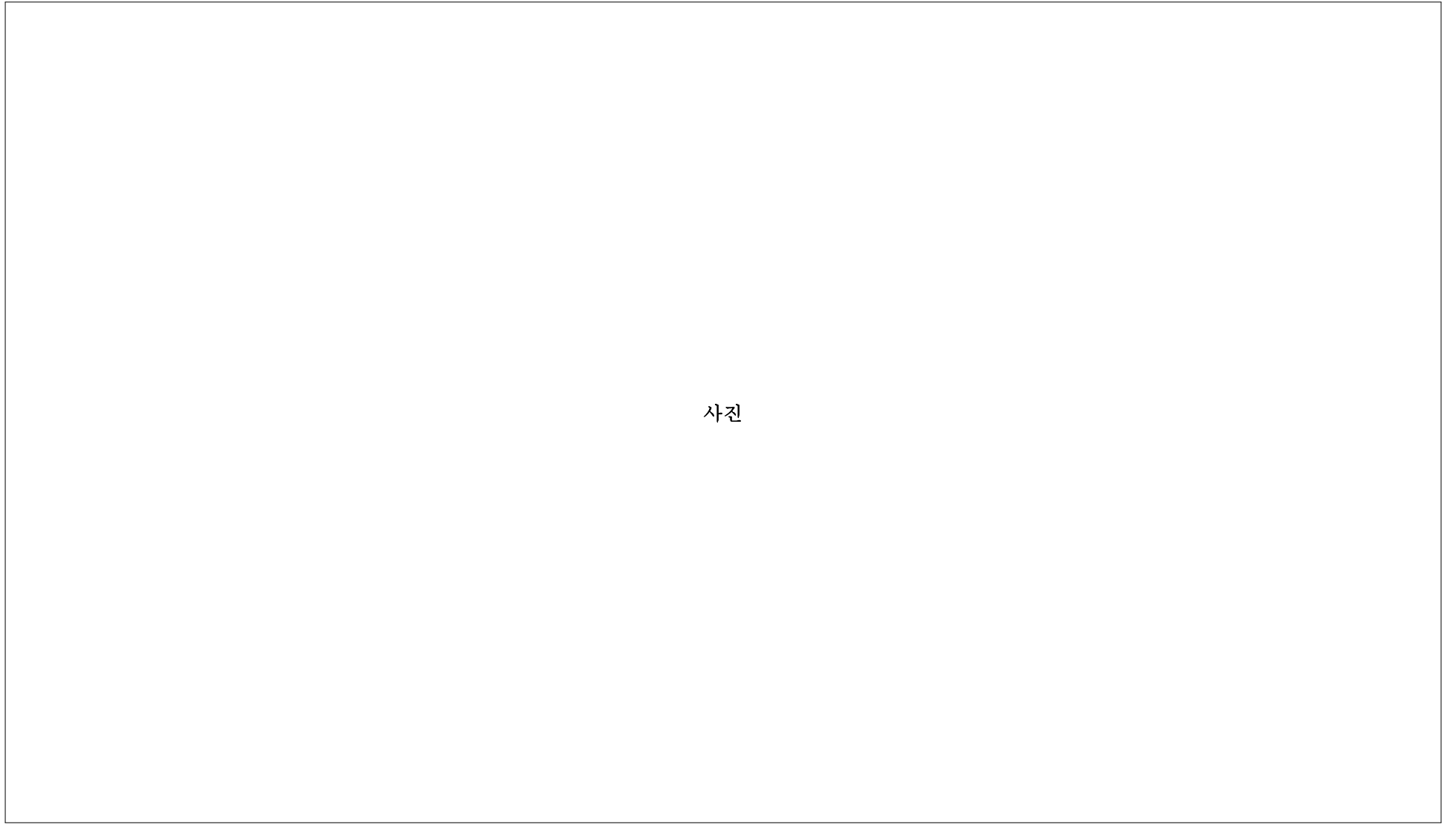


사진

[별지 제1호 서식-4] (사진)

(명칭 :)

상세사진(시설물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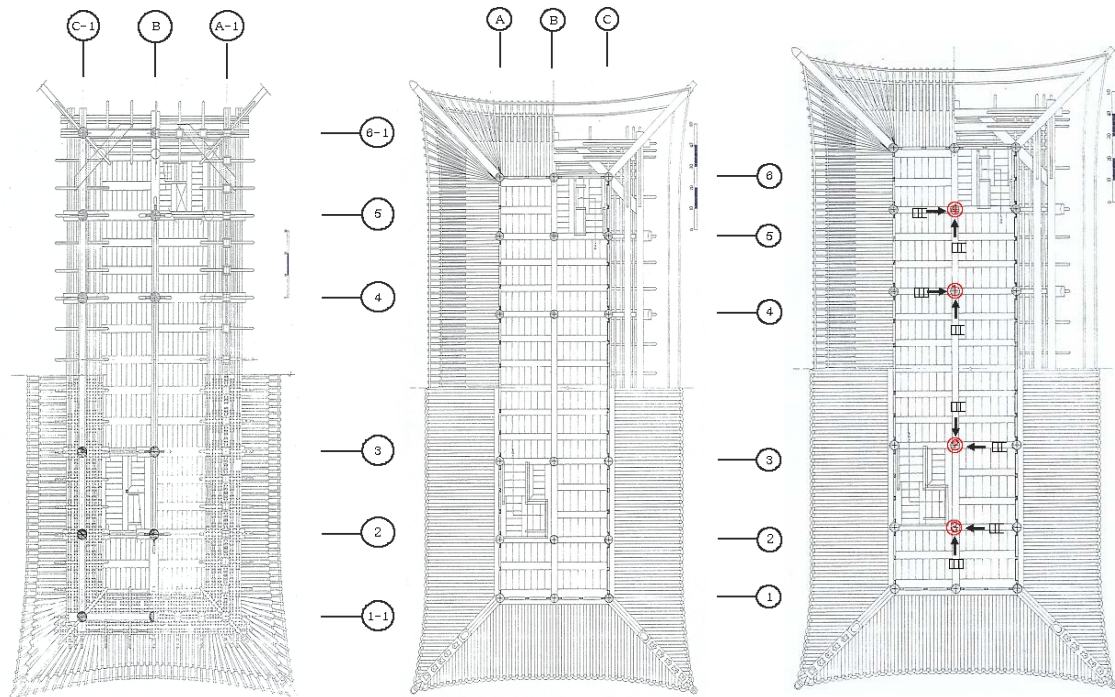


사진

8) 서원 건축물 안점점검

가. 필요성

안전점검은 서원 건축물의 현상을 지속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다. 안전점검은 육안이나 장비 등을 이용하여 노후상태나 훼손부분에 대한 기초자료를 작성하며, 이 기초자료는 보수, 보강을 결정하는 근거로 사용하도록 한다. 안전점검의 목적은 문화재의 원형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행위라 하겠다.



나. 점검 방법

■ 초기점검

문화재관리대장에 기록되는 최초로 실시되는 점검을 말하며, 초기점검은 문화재 관리대장 및 평가자료, 관리자가 수집하는 관련자료를 확보하고, 해당 문화재 상태의 판단 및 문제점 또는 문제 가능성이 있는 구조 부위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후 실시되는 점검 및 진단시에 초기 점검 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 정기점검

계획된 정기적 점검으로서 해당 문화재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 변화를 확인하며, 안전 상태를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면밀한 육안검사와 간단한 측정기구에 의한 점검을 말한다. 점검은 숙련된 경험이 많은 관리자가 시행하거나 전문가의 지시를 받아 표면점검은 물론 변형점검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점검자는 해당 문화재의 전

반적인 외관형태 및 구조적 상태를 관찰하여 심각한 손상·결함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결과는 문화재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다음 점검 및 진단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긴급점검

손상점검과 특별점검으로 나눌 수 있으며, 손상점검은 비계획적인 점검으로서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인 손상을 평가하는 것이다. 손상점검은 정밀점검의 보완수단으로 손상의 정도와 보수 의 긴급성 및 보수작업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시험장비에 의한 현장측정 및 사용제한기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특별점검은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 혹은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점검으로 정밀점검 수준의 점검이다.



진동계측



진동계측

■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과정을 통해서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훼손부위를 발견하기 위하여 비파괴 현장 시험 등 검사 측정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근접 점검이다. 필요한 경우 주변 통제를 하여야 하며, 점검용 접근장비, 비계 및 작업선과 같은 특수장비 및 관련 기술자와 문화재 전문가가 필요하다. 결과는 관련 도면 등에 기록하며, 건조물 전체에 대한 조사결과 분석 및 상태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노후화 또는 훼손 정도에 따라 건조물의 잔존수명을 평가하기 위한 안전성 평가가 포함되어야 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건조물의 해체 보수시에는 폐자재 등에 대해서도 재료분석까지를 포함하여 진단을 할 수 있으므로 매우 유용하다.



등자주와 뜯창방 이격

■ 점검수준에 따른 방법

(1) 표면점검

주로 육안으로 관찰하는 수준의 점검으로 육안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망원경을 이용하거나 사진촬영을 하여 사진을 통해 판단을 하거나, 손으로 만져보는 촉진, 손마치 타진 정도의 점검이다. 재료, 부재 및 부위의 어긋남, 벌어짐, 벗겨짐, 탈락, 부식, 비 샌 흔적 등을 점검한다.

(2) 변형점검



동자주 대들보 이격

표면점검을 통해 구조적으로 변형이 심한 경우에 변형 정도를 측정하는 점검으로 자를 이용하여 계측하거나, 추, 물수평호스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수직 및 수평줄을 설치하고 변형정도를 측정한다. 보다 정밀하게 변형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트랜싯, 광파기등을 이용하여 변형 상태를 측정한다. 숙달된 경험이 많은 관리자가 시행하거나, 문화재의 손상이 우려될 경우에는 전문 문화재 기술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한다.

■ 점검기구에 따른 방법

(1) 육안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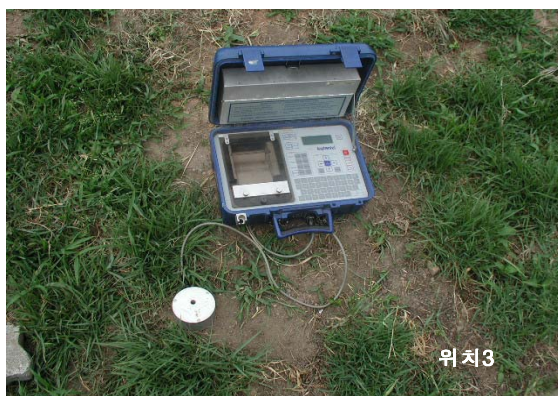
눈으로 관찰하여 점검하는 방법으로 육안만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망원경을 이용하거나, 사진촬영을 하여 사진을 통해 변형을 판단한다. 육안점검은 세밀한 관찰력이 요구되고, 자주 관찰하게 되면 안목을 높일 수 있다.

(2) 촉진

표면을 손으로 만져보는 방법으로,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이 가능하며, 재료의 다듬은 정도, 압축 정도 및 결로 혹은 습기에 의한 축축한 느낌 등을 판단할 수 있다.

(3) 타진

조그만 손망치 등으로 타진하여 울리는 소리와 압축 정도 등을 점검하는 방법으로 점검자는 훈련을 통해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



(4) 간단한 기구점검

추, 물수평호스, 자 등 간단한 기구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변형에 대한 계측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현장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트랜싯 및 광파기 정도의 장비까지를 포함한다.

(5) 정밀장비점검

비파괴 현장시험장비 등 초정밀장비를 이용하는 것으로 정밀 전진단시에 사용된다. 장비는 비파괴 시험장비가 원칙이나, 해체 수시에는 폐자재로 나오는 재료에 대해서는 성분분석 등 과학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



장비를 이용한 점검

■ 기단부

(1) 표면점검

균열, 기단상면 벗겨짐(강회다짐 외), 주저 앓음, 이완 등

(2) 변형점검

① 기단에 균열이 생기거나 처짐현상이 발생하면 기단 하부 즉 지반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돌쌓기 기단의 경우 균열의 발견은 쉽지 않으나 석재 가구식 기단에서 균열은 지반의 문제와 관련이 깊다. 기단의 처짐 현상 역시 지반문제와 관련이 있다. 지반에 지하수가 흘러가거나 동공현상이 있으면 기단의 처짐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런 현상은 건축물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단 강회 벗겨짐

② 기단석의 탈락과 석회다짐 탈락은 부실시공이거나 오랜 시간이 흘러 접착력 부족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간단한 수리를 통해 형을 회복 하도록 한다. 수리시에는 가능한 전통적인 재료를 이용하고 탈락 원인과 상황을 기록하여 추후 보존관리에 참고가 되도록 한다.



주초석 균열 및 박리

③ 초석의 균열, 뒤틀림, 주저앉음 현상 : 초석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석재의 강도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균열이 더 진행되기 전에 드잡이 등을 통해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균열된 초석을 보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초석의 뒤틀림이나 주저앉음 현상은 단순한 초석문제가 아니라 지반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러한 현상은 건축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에 매우 심각하므로 조속한 시간 내에 지반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지붕

(1) 표면점검

지붕면에 나무, 잡풀 등이 자라고 있는가. 지붕 재료가 어긋났는가. 지붕재의 표면 동파(벗겨짐), 깨짐, 비뚤어짐(벌어짐), 떨어짐(탈락) 현상이 발생했는가. 지붕재가 부식되었거나 비가 샌 자국(홍두깨흙이 흘러내리는 등)이 있는가. 와구토의 이완 및 탈락 현상이 있는가.

(2) 변형점검

① 용마루 : 집에 이상이 있으면 이 부분에 외견상 가장 먼저 이상이 발생하므로 세밀한 관찰이 요구된다. 지붕의 변형은 지붕재 자체의 결함에 의해서라기보다 하부 구조체의 변형이 최종적으로 용마루에 전달되기 때문이다. 육안관찰 : 어긋남, 벌어짐, 탈락, 처짐, 균열, 휘어짐 등



② 용마루 선 : 용마루 상부에 수평줄을 띄우고 용마루 곡의 변형 여부를 살핀다. 수직곡은 중앙, 1/4 지점 등 3군데만 계측해도 되며 전체적인 곡은 사진을 찍어 둔다. 수평곡 역시 좌우 양쪽에서 사진으로 찍어두면 그 변형 여부를 살필 수 있다. 가장 좋지 않는 현상은 용마루가 함몰했거나 전체가 낙타 등처럼 물결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구조체에 결함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가끔 지붕마루 홍두깨흙을 치밀하게 채워 넣지 않거나 솟마루장을 아구지게 잇대어 놓지 않으면 태풍 등의 영향으로 수키와장이 벗겨지거나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동선으로 적당히 묶어둘 필요가 있다.



③내림마루 : 합각지붕에서 내림마루가 처진 것은 추녀의 처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추녀는 집의 날개이므로 추녀가 처지거나 혹은 내림마루가 내려앉으면 집의 어깨가 무너진 것처럼 볼품이 없어진다. 육안 관찰은 용마루와 같다. 박공지붕에서 내림마루의 처짐은 박공에 실린 기와의 무게를 도리가 지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도리는 도리의 맞춤, 도리와 보의 맞춤을 할 때 서로 따내기 때문에 따낸 단면 부분이 꺾어지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까치발로 받치는데 원형은 아니다. 이런 상태는 지붕 속에서 목기연을 지탱하는 별도의 부재(적심목)를 종과 횡으로 설치해서 처짐을 방지토록 하는 구조보강을 요한다.

④내림마루 선 : 망새 끝과 내림마루 꼭지에 실을 띄우고 실의 기울기(1/100로 표시한다)와 중앙의 곡을 잴다. 내림마루선이 불룩해진 것은 처마의 처짐에 의해 발생한 것이고 비뚤어진 것은 물려 있는 암키와, 착고, 부고 등 자체의 결함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내림마루선이 처진 것은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것으로 집우새(솟을 박공널 뒤에 보강한 널판), 적심 등을 넣어 보강할 필요가 있다.

⑤처마선 : 처마선의 변형은 추녀의 처짐, 서까래에 결함이 발생해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집의 구조체 전체가 기운다던가 하는 이상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양쪽 추녀에 못을 박아 실을 매고 처마 안허리와 처마곡을 측정한다. 큰 이상이 없는 한 5군데 정도 측정하면 된다. 단 매년 측정하는 위치가 일정해야 하며 평고대를 기준으로 한다. 올라가기 어렵고 긴급한 경우가 아닐 때는 트랜싯을 이용해 일정한 장소에서 측정하는 것이 좋다. 처마선의 변형에 있어 가장 두려운 현상은 처마선이 물결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집이 전체적으로 구조적 결함이 발생한 것이므로 그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요즘은



기와가 예전보다 무겁고 지붕에 알매흙을 너무 많이 올리는 경향이 있어서, 큰 규모의 전각에서는 그런대로 견디지만 민가나 관아등의 건물은 이를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붕 공사시 지붕 하중이 너무 올라가지 않았나, 진새는 적절한(방수적) 성능을 가졌는가 하는 점을 살펴야 한다. 처마곡은 구조체의 변형에 비해 변형이 크게 진행되는 것이므로 처마길이의 1/200 이내의 변형은 허용하되 그 이상 진행되면 반듯 전문가에 의한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 ⑥ 지붕면 : 수키와의 선이 바른 지 혹은 기와가 내려 앉은 것은 없는 지 혹은 처마끝 기와가 떨어진 것은 없는 지 살핀다. 기와 가락선은 각 부재 중심선을 벗어나면 안된다. 이것은 암키와도 중요하지만 특히 수키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붕의 물매도 일매지게 되었는가 혹은 처지거나 배부르게 되었는가 하는 점을 점검한다. 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실을 띄우고 계측해 둘 필요가 있다.



안전점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변형의 진행 속도이기 때문이다. 지붕면의 점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면의 물결현상이다. 한쪽에 변형이 발생했을 때는 지붕 자체의 결함일 수 있지만 물결현상은 하부 구조체 전체의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기 때문이다. 특히 조가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면 이는 틀림없이 비가 새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긴급한 사항은 망원렌즈를 이용하여 사진촬영을 하거나 혹은 기구를 활용하여 근접촬영을 한다.(특히 비가 썩을 때는 즉시 보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마른 날씨에 건물 후면의 기와 면을 만져 봤을 때 축축하고 습기가 찬 듯하면 이것은 겨울에 동파될 가능성이 많다. 반드시 흡수율을 측정해 봐야 한다. 홍두깨흙이 흘러내리는 자국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면 비가 썩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특히 기와지붕인 경우 진새를 쓰지 않고 단순히 알매흙만 쓰기 때문에 기와가 샌다는 것은 곧 비가 새고 있다고 봐야 한다. 특히 지붕머에 나무나 잡풀이 돋아나고 있으면 이는 비가 썩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즉시 잡풀등을 제거하고 비가 새지 않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하며 지붕 시공에 문제

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근래의 지붕공사는 홍두깨흙 혹은 알매흙을 잘 개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을 성실하게 퍼지 않기(나무 도드락 망치로 치면서 틈새가 없도록 해야 한다)때문에 기와 틈사이로 비가 새면 곧바로 집에 해를 끼치게 된다. 또한 홍두깨흙과 수키와 크기가 맞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수키와장이 흔들린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초가지붕에서는 알매흙을 올리지 말고 짚을 섞어 이긴 진새를 올려서 진새가 방수층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와구토의 이완은 출입자의 안전에도 위험하므로 반드시 제거하고 견실하게 충전하여 재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와구토의 이완 및 탈락은 수키와의 탈락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⑦회첩 : 한옥에서 맨 먼저 비가 새는 부분은 집이 그자로 꺾어지는 안쪽 회첩 부분이다. 고려 이후에는 회첩 기와를 별도로 제작하지 않고 기존 기와를 깨뜨려서 사용했기 때문에, 양쪽에서 쏟아지는 골기와 물이 일정하지 않고 수키와 아래쪽에 물끊기가 없으므로 빗물이 자주 암키와골을 넘어간다. 비가 새는 지를 꼭 점검하고, 혹 암키와장이 깨졌는지 3겹 이기가 되었는지 점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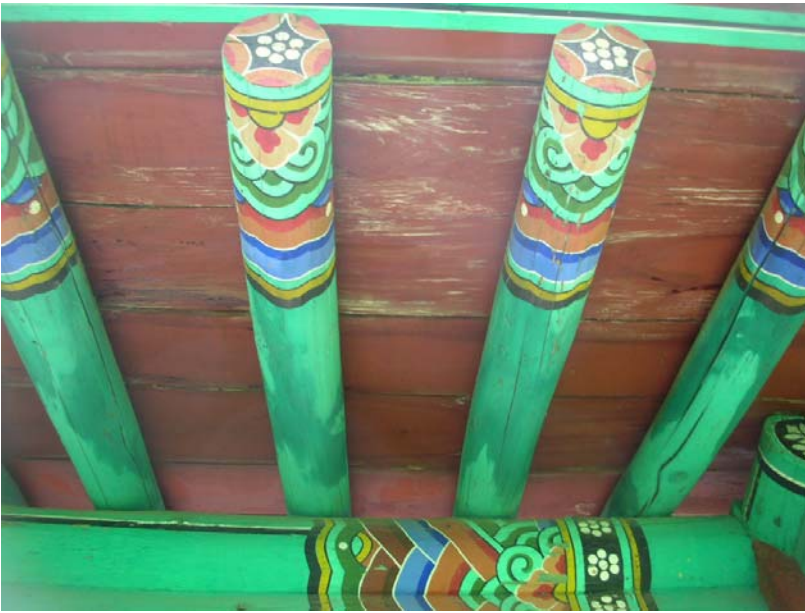
(판정) : 대개 변형이 5mm 이내에서 진행되고 있을 때는 안전에 지장이 없지만, 1~2cm정도 진행하고 있으면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아야 한다. 변형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주의해서 관찰해야 한다. 변형이 전체 길이의 1/100 이상 진행되고 있을 때는 구조체가 안전하지 않다고 보아야 하며 1/50 이상 진행되었는데도 집에 이상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면 계측이 잘못되었을 것이다. 특히 용마루나 처마, 지붕면에 물결현상이 발생했으면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에 의한 판단해야 한다. 지붕재가 어긋나거나 벌어짐, 벗겨짐 등의 현상이 현저히 진행되어 비가 샌다고 판단될 때는 가능한 빨리 보수를 시행해야 한다.

■ 지붕틀

(1) 표면점검

지붕의 물이 새고 있는가 - 비 흘림 자국/ 변색/ 썩음/ 재료의 갈라짐 (자체의 갈래 혹은 힘의 변형에 의한 뒤틀림, 터짐, 꺾어짐) / 이음과 맞춤의 이완 여부(벌어짐, 벗겨짐) 등, 특히 중요한 것은 지붕재가 가장 함수율이 낮아야 한다. 12~15% 정도이면 최상이고 최소 18% 이하여야 한다. 만일 18% 이상이면 지붕 하부의 통기가 불량한 것이고 이미 부재의 부패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2) 변형점검



누수현상

알 수 있다. 만일 지붕의 하중에 불균형이 있으면 집이 기울기 시작한다. 특히 한옥에서 문제가 되는것은 벽체가 없었을 때 집에 뒤틀림 현상이 일어난다. 이것은 오금 기법과 복잡하게 얽히기 때문에 계측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다. 처짐과 뒤틀림 현상은 기둥이 썩어 내려앉는 경우에도 발생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① 연목 : 비가 새는 것이 가장 문제이다. 썩거나 벌레 먹는 것과 지붕의 하중을 이기지 못해 처짐이 발생한다. 이 경우 처마끝이 중요하므로, 서까래의 재 중심에 실을 띄우고 중심 실이 서까래 부재 밖으로 지나갈 때는 대단히 위험한 상태이다. 부재 변형이 2cm 이상 발생하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최근 지붕에 하중을 많이 싣고 연목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서까래가 휘는 경우를 자주 본다. 연목이 꺾어졌을 경우에는 처마선이 변형이 오기 때문에 금방



대들보와 동자주 이격

② 대공 혹은 동자주 : 대공이나 동자주는 그 길이가 작기 때문에 압축력에 의해 꺾어진다면 변형을 일으키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이들은 횡력을 많이 받는 부재이기 때문에 집의 전후 균형이 안 맞는 다던가 혹은 집이 뒤틀릴 때 대공의 하부 맞춤에 하자가 발생하여 기울어지는 수가 많다. 또한 대공 하부에 물(빗물이나 결로현상에 따른 물기)이 들어가서 썩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마루대(종도리) 받침장혀 중앙에 실을 다림추로 내리고 변형을 관찰한다. 종단, 횡단 모두에서 1/200

이하가 허용치이고 1/100~1/50 이상 진행하고 있으면 대단히 위험한 상태이다. 특히 횡단에서 관대공의 중심선이 재 밖으로 벗어나고 있으면 위험한 상태이므로 즉시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다.



대량 균열로 임시조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은 보의 중앙 옆구리에 횡으로 일어나고 있는 갈라짐이다. 보는 부식과 균열이 구조적인 불안정 요인이 되나 기둥 위에서 사괘맞춤을 하면서 떠낸 부분이 절단(꺼어짐)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보를 완전 교체하지 않고 보 속에 부식되지 않은 철재(스테인레스 스틸)로 심을 박고 수지처리 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방법으로 고재를 최대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충량하부와 보아지 이격



의 중심이 기둥의 중심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하는데 이는 전문가가 아닌 경우 판별하기 힘들다. 따라서 주심도리는 도리 표면 내·외부에서 실을 띄워 살피고 기타 도리는 밀

③ 보 : 대체로 한옥의 보(특히 대들보)는 등을 구부려서 상부의 하중을 받고 있다. 이것은 목재의 형상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1/50 정도의 기울기인데 만일 이것이 일직선이 될 정도로 처진다면 위험한 정도이다. 마찬가지로 일직선의 대들보라고 하더라도 처짐(크리프) 혹은 휨 현상이 1/100 이상 진행되면 위험한 상태이다. 특히 대들보인 경우는 집의 가장 중요한 부재이므로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보는 큰 부재이므로 부재의 건조에 의해 갈라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과 휨의 불균형에 의해 발생한 갈라짐과 잘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④ 도리 : 집에 쓰여지는 모든 부재 가운데 모두 비뚤어진 나무를 쓸 수 있지만 도리만큼은 똑바른 나무를 쓰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도리가 어긋나 있으면 지붕면도 비뚤어질 수 밖에 없다. 집을 짓는 대목은 모두 이 도리가 놓이는 위치를 기준으로 집을 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도리의 변형 상태를 관찰하면 집이 비뚤어졌는지 혹은 기울거나 뒤틀리고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집에 오금이나 귀숫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집짓기는 모두 좌우대칭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도리

등 중심에 실을 띄워 다림추가 지면에 그리는 점들이 일정하게 네모꼴을 형성하고 있는가를 관찰한다. 물론 수평도 계측해야 하는데 좌우대칭이 아닌 경우, 어떠한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도리 하나만 변형이 일어났다면 판단은 간단하지만 전반적으로 변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위험하다.

(판정) : 빗물이 샌다던가 용마루 혹은 중도리가 처졌을 경우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가 지붕재의 변형을 외형적으로 쉽게 나타내 주기 때문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대들보의 처짐인데 처짐의 진행이 연간 1/300 이상이면 요주의 대상이 된다. 또한 대들보는 보머리 부분의 벌어짐 여부를 살핀다. 중심도리·외목도리는 집의 뒤틀림을, 중도리는 집의 처짐을 판정할 수 있다.

■ 천장

(1) 표면점검

비 흘림 자국, 변색, 썩음, 처짐, 이음과 맞춤의 이완 여부(벌어짐, 벗겨짐) 등



(2) 변형점검

천장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처짐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천정 안쪽으로 통풍이 좋지 않아서 천장 위로 결로가 발생한다던가, 또는 비 샘 등에 의해 지붕의 흙이 떨어져서 천장이 하중을 받음으로서 처짐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천장의 변형은 구조체의 변형과 관계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조체의 변화와 연관이 있는 지에 대한 여부를 관찰한다.

(판정) : 천장의 변형은 네모난 천장의 대각선으로 줄을 띄워 처짐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허용의 범위는 1/300 정도이고 1/100 이상 진행되었으면 위험하다. 특히 1/50 이상 진행되고, 구조체의 변형에 의해 함께 일어나는 것이라면 대단히 긴급한 상황이므로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다.

■ 떠대(기둥, 창방, 평방, 중하방)

(1) 표면점검

부식, 이완(벌어짐), 벗겨짐 등, 문드러짐, 뒤틀어짐

(2) 변형점검

① 기둥 : 기울어졌거나 비틀린 상태를 계측해야 한다. 기둥의 기울음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므로 모든 기둥에 대해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창방 혹은 장혀 뿔목의 중심에 못을 박고 다림추를 내려 종횡에서 관찰해야 한다. 자연목을 사용하여 굽기가 일정하지 않은 기둥은 이를 감안하여 측정한다. 또한 기울기 측정시 기둥과 창방, 주선, 문얼굴 등과의 이완여부를 점검한다. 변형이 1/50 이상 진행되고 있으면 위험하므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허용 변형은 1/100이하이고, 민가 등 기둥 부재가 작은 집은 1/200 이하이다.) 기둥에는 오금기법이 있기 때문에 모든 기둥의 변형을 점검해서 파악해야 한다.



기둥의 변위(기울어짐)

기울거나 비틀어졌을 때 모든 기둥이 같은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오금기법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 기둥머리의 중심에 다림추를 내렸을 때 다림추 선이 채 밖으로 나가면 이미 무너졌어야 하므로 계측이 잘못되었거나 혹은 다른 어떤 요인이 있을 것이다.



주초석 균열 및 박리



기둥하부 주초석 단면부족

말하자면 기둥의 수직선이 채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기둥은 밑둥이 썩어서 내려앉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망치로 두드려 보면 알 수 있다. 둔탁한 소리가 나는 것으로 판별하는데, 썩은 정도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표준 기둥을 만들어 놓고 연습해 볼 필요가 있다. 정확한 테



기둥-대들보 접합부 이격



기둥뿌리 손상 및 단면손실



기둥뿌리 갈라짐

스트는 여러가지 기기가 있지만 요즘 포터블 조사기가 있으니 활용하면 된다. 권위건축에서 기둥 단면은 허용응력에 대해 대체로 2배의 여유가 있고 주택 등의 건축에서는 1.25~1.5배 정도 밖에 여유가 없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개산치는 대략 권위건축인 경우 간사이에 대해 직경이 1/15~1/20 정도면 되고, 민가 등 소규모 건물은 1/25까지도 허용되므로 썩지 않는 부분의 단면이 이 범위 이내에 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특히 기둥의 변재가 썩었을 때는 대단히 위험하므로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 갈람은 강도에 별 지장은 없으나 재질을 절단하는 부러짐은 위험하므로 세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문제는 기둥굽이 썩으면서 내려앉아 상부 도리가 함께 처지는 경우이다. 이때에 기둥의 기울음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등자주와 뜬창방 이격



어칸 평방 갈라짐

② 창방, 평방, 중하방

창방은 기둥머리를 결구하고 지붕의 하중 일부를 받는 역할을 하므로 창방 머리가 기둥에 잘 결구되어 있는지 혹은 처짐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관찰하여야 한다.



평방 간 이격



평방 간 이격

[표13]서원건축물 점검 내용과 원인

점검요소	점검내용	원인분석
기 단	쌓기식 기단석이 탈락되었다.	접착강도가 약해져 생기는 현상
	가구식 기단석에 균열이 생겼다	지하수위 변형 또는 지반의 부동침하 현상
	기단이 침하되었다	지하수위 변형 또는 지반의 부동침하 현상
초 석	맑은 날에도 습기가 찬다	배수나 환기가 잘 안된다. 인접된 곳에 배수로나 누수 가능성
	균열이 발생했다	초석이 약해 건물의 무게를 견딜 수 없다
	석질이 부석부석해 진다	석질이 약하다
	기울어져 있다	한쪽 지반이 약하다. 적심 설치가 불량하다. 지진, 지하수 등에 의해 변형
	다른 초석에 비해 낮아졌다	지반이 약해 침하가 생겼다.
	적심석이 드러나 보인다	기단토 또는 지정이 깎여졌다. 기단 및 토사가 유출되었다.
마 루	다닐 때 삐걱삐걱 소리가 난다	동귀틀 또는 장귀틀이 빠지거나 부식되었다.
	처지고 다닐 때 가구가 흔들린다.	동귀틀 또는 장귀틀이 부러지거나 부식되어 내려앉았다.
	불거지고 휘어져 있다	기둥이 기울거나 마루틀이 신축되면서 마루판을 밀었다.
	마루청판 사이가 벌어져 밀이 보인다	마루청판이 신축되어 마루판 사이에 틈이 생겼다.
	비바람이 들어쳐 빗물이 고인다	추녀 또는 처마가 짧거나, 기와에 누수현상이 생겼다.
기 등	하부에 빗물이 들어친다	추녀 또는 처마가 짧다. 기둥이 높다.(중층건축물)
	밀둥이 썩었다	비바람이 들어친다. 해충이 생겼다.
	파란 곰팡이가 생겼다	습기가 심하다. 단청이 안되어 있다.
	흰개미가 돌아다닌다	흰개미가 생겼다.
	작은 구멍이 여러 개 생겼다	해충의 피해가 우려된다.
	위 아래로 틈이 벌어져 있다	목재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틈의 폭에 따라 점검 수준 결정
	기울어지거나 뒤들려 있다	지반의 부동침하, 주요 구조부재 부식에 의한 현상
	두드리면 속이 빈 소리가 난다	흰개미의 피해 또는 균에 의한 부식

[표 14] 서원 건축물 점검내용의 단계별 조치 사례

점검요소	점검내용	단계별 조치				비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 단	기단 상부에 잡초가 생겼다	●				관리인 보수
	기단석 일부가 내려앉았다	●				"
	기단 상부 강회마감이 떨어졌다	●				"
	기단석이 많이 떨어졌다		●			전문가 점검
	기단석 밑으로 물이 스며든다		●			"
	기단이 흘러내려 초석밑이 보인다.				●	긴급보수
초 석	맑은 날에도 습기가 찬다		●			전문가 점검
	균열이 발생했다			●		"
	기울어져 있다			●		"
	다른 초석에 비해 낮아졌다			●		"
	태풍 후 적심석이 드러나 보인다				●	긴급보수
마 루	다닐 때 삐걱삐걱 소리가 난다			●		전문가 점검
	쳐지고 다닐 때 가구가 흔들린다			●		"
	불거지고 휘어져 있다		●			"
	마루청판 사이로 밑이 보인다			●		"
	동기틀이 내려 앉았다		●			"
기 등	하부에 빗물이 들이친다	●				관리인 보수
	기둥에 청태가 끼었다		●			전문가 점검
	기둥 밑이 희게 변했다		●			"
	밑둥이 썩었다			●		전문가 점검
	뒤틀이고 기울어 졌다			●		"
	흰개미가 돌아다닌다			●		"
	작은 구멍이 여러 개 생겼다			●		"
	기둥을 두드리면 빈 소리가 난다		●			"
지 붕	지붕 위에 와초가 생겼다	●				관리인 보수
	천정에 빗물자욱이 생겼다		●			전문가 점검
	천정에서 빗물이 떨어진다			●		"
	추녀나 처마에 벌집을 지었다	●				관리인 보수
	추녀에서 흰가루가 떨어진다		●		●	긴급보수
	추녀에 빗물자욱이 생겼다		●			전문가 점검
	추녀끝이 약간 처졌다			●		"
	추녀가 눈에 띄게 내려앉았다				●	긴급보수
	서까래에 빗물자욱이 생겼다		●			전문가 점검
	서까래 끝이 약간 내려앉았다			●		"
서까래 끝이 많이 내려앉았다				●	긴급보수	
창 호	문(창)종이가 찢어졌다	●				
	문(창)고리가 떨어졌다	●				
	문(창)의 돌쩌귀가 떨어졌다	●				
	문(창)이 바람에 펄럭인다	●				
	문(창)이 잘 열리지 않는다		●			
	문(창)살이 떨어졌다		●			
	문(창)이 틀어졌다			●		
	문(창)틀이 틀어졌다			●		
	문(창) 목재가 부식되었다			●		
	문(창)을 도난당했다				●	

다. 점검의 실시 및 기록

서원 문화재에 대한 정기적 점검을 통하여 예방차원의 문화재 보존관리 강화와 효율적인 문화재 행정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점검은 앞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초기점검, 정기점검, 긴급점검과 필요시 정밀안전진단을 통한 방법을 통하여 실시한다. 또한 세부적인 사항으로 표면점검과 변형점검 및 육안점검, 축진, 타진, 간단한 기구점검, 정밀장비 등을 이용한 점검방법과 각 부위별 특성을 감안한 방법을 참고하여 점검에 임해야 한다.

■ 점검시기

관리단체 및 서원을 관리하는 관리자는 년2회 정기점검을 실시할 것을(4, 10월) 권장하며, 관할 특별시, 광역시 및 도(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필요한 경우 총괄담당자 지정과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점검주체

안전점검은 문화재를 관리하는 담당자, 관계전문가 및 서원관계자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점검기록의 작성

관리단체 및 서원관리자는 안전점검대장과 안전점검일지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 점검기록의 활용

정기점검 결과를 비교 분석하고 그에 따른 경상관리 및 문화재 보수정비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문화재 수리 각종 업무평가 자료로 활용한다.



장성 내산서원

안전점검대장

문화재명		지정별		지정년월일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연혁					
보수실적					
전경사진					

B4(257×364mm)

안전점검일지

문화재명			
점검자	소속·직·성명 : 소속·직·성명 :	점검일시	
주위 환경	해안/ 평야/ 산간/ 시가지/ 공업지대/ 사찰/ 사지/ 기타()		
	대기오염		진동·소음
	통풍상태		배수·습기
	주변수목상태		기 타
주변 건물			
전체 현황			
기단부·초석			
마루·구들	마 루		
	구 들		
기둥·벽체	기 둥		
	벽 체		
공포·지붕틀	공 포		
	지붕틀		
지 붕			
부대시설	담장 및 안내판등		
	기 타		
종 합 점 검 결 과			
종합의견 및 대책			

[별지 제2호 서식-3] 안전점검

세부 중점점검내용

기단부·초석

1. 기단 및 계단이 완료되거나 침하된 곳이 있는가
2. 기단바닥이 파여 물이 고이는 곳이 있는가
3. 초석이 침하되거나 훼손된 곳이 있는가
4. 초석과 기둥이 잘 밀착되어 있는가
5. 강회다짐 또는 전돌·박석등이 완료되거나 훼손된 곳이 있는가
6. 기타 훼손된 곳이 있는가

마루구들

1. 건물내부 바닥의 강회다짐·전돌·박석 등이 훼손된 곳이 있는가
2. 마루부재가 부식되거나 이완·탈락된 곳이 있는가
3. 마루밑의 환기가 잘 되고 청결을 유지하고 있는가
4. 구들이 함몰되거나 장판이 부식, 훼손된 곳이 있는가
5. 아궁이 및 굴뚝이 훼손된 곳이 있는가
6. 기타 훼손된 곳이 있는가

기둥·벽체

1. 기둥이 부식·파손되거나 흰개미·벌 등의 벌레로 인한 피해가 있는가
2. 기둥의 기울어짐의 현상이 있는가
3. 기둥의 갈래·벌어짐·파손된 곳이 있는가
4. 기둥이 주선·인방·창방 등 다른 부재와의 연결부에서 벌어진 곳이 있는가
5. 각 부재 및 벽체 등의 연결부에서 이완된 곳이 있는가
6. 벽체 및 벽화에 균열·들뜬 부분이 있거나 탈락된 곳이 있는가
7. 창호가 부식되거나 훼손된 곳이 있는가
8. 사용된 칠물의 상태는 양호한가
9. 단청의 탈락·퇴색된 곳이 있는가
10. 기타 훼손된 곳이 있는가

상부가구·지붕틀

1. 상부가구의 부식·이완 및 훼손된 곳이 있는가
2. 벽화가 균열·탈락되거나 들뜬 부분이 있는가
3. 도리·장여·보가 부식·균열·이완 및 훼손된 곳이 있는가
4. 각 부재의 연결부가 이완 및 훼손된 곳이 있는가

5. 천장 및 반자의 부식·이완 및 훼손된 곳이 있는가
6. 단청의 탈락·퇴색된 곳이 있는가
7. 연목·부연·추녀·사래부재의 부식·처짐 및 훼손된 곳이 있는가
8. 기타 훼손된 곳이 있는가

□ 지붕

1. 지붕기와의 파손·이완 및 탈락된 곳이 있는가
2. 잡초가 자라거나 누수되는 부분이 있는가
3. 홍두깨흙이 흘러내리거나 와구토가 이완되거나 탈락된 곳이 있는가
4. 회침부의 상태는 양호한가
5. 박공 및 풍판의 상태는 양호한가
6. 기타 훼손된 곳이 있는가

□ 주변(부대)시설

1. 외부지역으로의 배수 상태는 양호한가
2. 석축의 이완·침하·균열 및 붕괴된 곳이 없는가
3. 담장이 붕괴되거나 붕괴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는가
4. 전원 및 배선·안전기 등 전기시설은 양호한가
5. 건물내·외에 화재 우려의 시설이 있는가
6. 정기적인 소방 및 방범점검은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태는 양호한가
7. 홍수로 인한 사태 우려가 있는가
8. 안내판 등은 주변경관에 지장을 주고 있는가
9. 화장실 및 관람 편의시설은 청결한가
10. 마당에 잡초가 자라고 있거나 주변환경은 청결한가
11.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물건은 없는가
12. 경사지 법면의 붕괴우려는 없는가
13. 기타 훼손되거나 불량한 곳이 있는가

라. 점검 후 조치사항

안전점검 후 관리단체는 자체적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년도 점검결과 등에 따라 문화재 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목의 제거
- 구조가 취약하거나 붕괴우려가 있는 구간의 인원통제 및 응급조치
- 기타 서원 내 외부 청결유지 등
- 평상시 청소를 자주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시켜 줄 것
- 점검결과 이상시 수선에 필요한 조치를 위해 전문가에게 의뢰

2. 활용

1) 활용의 기본원칙

서원 활용은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사항들에 대한 활용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 관리단체는 서원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고려하여 지역 주민 등을 위한 적절한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관리단체는 서원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 ; 전시 ; 체험, 출판, 도록 등 지속 가능한 활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서원 내 건물을 직접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관리단체는 구체적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의 승인 등 적절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지속가능한 활용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리체계 구축방안

2) 서원활용을 위한 정비계획의 수립 및 보고

- 관리단체는 서원 활용을 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수리에 대한 사항은 제18조를 준용한다.
- 관리단체는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되기 전에 문화재청장에게 시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3) 서원활용의 방향 및 계획수립

관리단체는 서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에 유의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서원문화의 본질, 종합성 활용

- (1) 고품격, 선택된 철학적 의미와 경관요소를 최대한 특화
- (2) 소규모를 지향하되 도제식 전문 인력의 도움으로 운영되는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 (3) 효과적인 교육자료의 제작 등 수요층과 주제별 보조 아이디어 개발
 - (4) 서원의 기문, 시문자료의 조사와 해석을 통한 다중 매체를 이용한 활용방안 강구



■ 다양한 콘텐츠의 확보와 개발

- (1) 서원과 연관된 건축물의 유·무형의 모든 자원에 대한 총괄 조사
 - (2) 서원의 특징, 개성적인 문화소재를 활용한 프로그램의 개발
 - (3) 지역의 지성사적 전통, 학문, 강학 유서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 역동적, 체험적 프로그램의 접목

- (1) 실제적인 체험형 프로그램
- (2) 연령, 성별, 수요자의 성격 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 (3) 조선사회를 이끌은 지성인들의 삶과 생활문화를 자원으로 재생 활용

■ 경쟁력 있는 문화체험공간의 활용

- (1) 과거식 교육방식
- (2) 서원 품위에 맞는 활용법



■ 서원 문화의 활용, 프로그램의 개발 유형은 아래표와 같다.

[표15]서원 문화의 활용, 프로그램의 개발유형 항목

프로그램	주요 내용 예시
교육의례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원제향의례 등 유교의례 이벤트 프로그램 - 단순제례→전통과 현대의 만남, 유림과 대화, 의미 해설체험 - 교육의례 : 강학, 시회 - 향약, 향음례, 향사례, 향회, 새로운 의례의 발굴 개발
전통교육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원교육 및 학문활동과 관련한 프로그램 . : 교육과정, 교과서, 운영 실제, 재정, 규약(고문서, 현판 자료) - 고강(시험), 동서재 기숙 등등 서원생활문화 체험 - 유림과의 토론(대화)
문화유적 (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교문화 성격별, 권역별 코스 개발 - 건물, 전적, 목판, 고문서, 금석문, 생활사 유적 유물 포함 - 관련 유적 : 서당, 종가, 누정, 재실, 정려 등 포함 - 관련 역사 사건이나 인물 일화와 저술, 업적, 유적 등 포함
인물사상 (교육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물연구, 교육 프로그램으로 특화 - 시대, 인물, 주제(의병 도학, 사림 정치) 교육 - 인물유적 탐방, 인물관련 유적 유물(저술, 생애, 일화 등) - 주요 인물관련 (동족)마을 탐방 및 종가체험 - 서원의 記文, 詩文 자료의 조사와 번역
공간활용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교육과 연계, 문화 교육행사장으로 적극 활용 - 기존 문화유적 최대 활용, 주제별 답사와 체험 - 고전 강독, 한문, 족보 특강, 정신 학술 교육 등등 - 대학연구소, 학술행사 유치, 교육청과 연계
자료관 (전시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물 및 소장자료 전시(학습장화) - 인물유품, 유교문화재, 고문서 전적, 금석문 - 정례 특별전시회 개최, 기증 및 위탁 전시기능 - 자료 종합 정리(교양서 안내서 발간), 학술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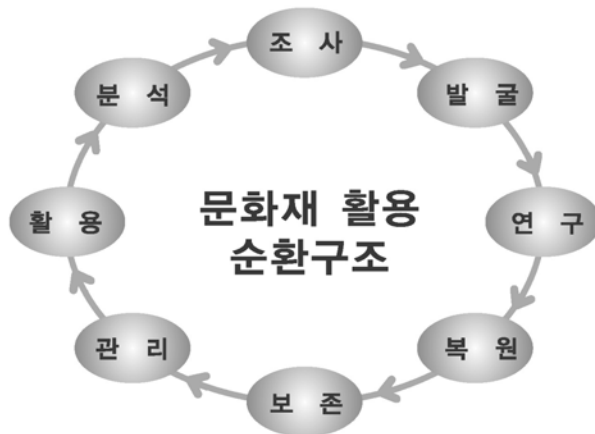
4) 서원활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사용

■ 관리단체는 서원활용을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설치 및 사용하여야 한다.

- (1) 서원 내 별도로 지정된 단위문화재는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한다.
- (2) 건축물의 높이와 규모는 과도하게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 (3) 건축물의 전체적인 형태는 서원의 경관에 어울리도록 하여야 한다.
- (4) 외부로 노출되는 기단부와 초석은 반드시 석재를 사용하되 건축물의 기능과 용도, 규모에 맞게 하여야 한다.
- (5) 건물 외부로 현대재료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 (6) 이미 원형을 훼손한 건물은 원형으로 복원한다.
- (7)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8) 인위적으로 변형 된 자연경관은 가능한 원형을 회복한다.

■ 서원 건축물을 사용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1) 사당, 재실, 전사청의 활용 : 제향 인물에 대한 향사
- (2) 강당, 재실의 활용 : 서원과 집단학습을 목적으로 한 예절교육 등
- (3) 동재, 서재, 수직사의 활용 : 서원 숙박체험



서원문화재 활용의 개념



[표16]서원의 프로그램 및 활용현황

활용방법	활용내용	활용장소	활용시간	활용대상	비 고
제 향	제향인물에 대한 향사	사당, 재실, 전사청	제향시간대	유림, 문중	모든 향교
한자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집단학습	강당, 재실	주말 또는 방학	초,중등 학생	도시 또는 도시 인접 서원
예절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집단학습	강당, 재실	주말 또는 방학	초,중등 학생	도시 또는 도시 인접 서원
동아리 학습	취미나 학습 등 공동목적으로 결성된 동아리 활동	강당, 재실	주로 하절기	대학생 일반인	역사성 있는 서원
한옥체험	전통적인 한옥 경관을 느끼고 휴식을 위하여 인근 전통가옥과 연계	재실	주말 또는 방학	가족 일반인	전통마을과 인접된 서원 무성서원
현장답사	서원의 역사와 건축, 경관에 대한 답사학습, 인근 유적 또는 문화재와 연계	서원 전체 및 주변경관	불특정 시간	학생 및 일반	역사성 있는 서원.문화재와 인접된 서원
전시관 관람	서원의 역사와 인물, 유물을 중심으로 전시	전시장 및 서원영역	개관 시간	학생 및 일반	소수서원 도산서원 자운서원

5) 사후평가

서원 활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리단체는 서원을 활용한 경우에는 매2년마다 사후평가를 하여야 하며,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 계획 및 실적에 대한 비교·분석
- 참여자의 호응도 및 사용자 만족도
- 해당서원 문화의 특화 여부, 서원자료의 조사와 활용여부
- 참여인원, 관리인원, 소요금액, 활용효과 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 활용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 참고자료

01. 국가지정문화재 서원
 - 도동서원(道東書院)
 - 돈암서원(遯巖書院)
 - 무성서원(武城書院)
 - 필암서원(筆巖書院)
 - 소수서원(紹修書院)
 - 옥산서원(玉山書院)
 - 도산서원(陶山書院)
 - 병산서원(併山書院)
 - 남계서원(濫溪書院)
02.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서원
03. 비지정문화재 서원
04. 미철서원(47개) 일람표



1. 국가지정문화재 서원

지역	서원명	주소	종별	번호
대구	도동서원(道東書院)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사적	488
충남	둔암서원(遯巖書院)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입리 74	사적	383
전북	무성서원(武城書院)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 원촌마을	사적	166
전남	필암서원(筆巖書院)	전라남도 장성군 황용면 필암리	사적	242
경북	소수서원(紹修書院)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사적	55
경북	옥산서원(玉山書院)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2리 8	사적	154
경북	도산서원(陶山書院)	경상북도 안동시 녹전면 원천리 899	사적	170
경북	병산서원(倂山書院)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	사적	260
경남	남계서원(濼溪書院)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사적	499

■ 도동서원

◆ 문화재 개요

- 지정별 : 사적 제488호 ('07.10. 10지정)
- 지정면적 : 8,891㎡(지정구역)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35
- 연혁 및 특징
 - 도동서원은 조선 5현(五賢)의 수위(首位)인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을 배향하고 있는 서원으로 선조 원년(1568) 현풍현(玄風縣) 비슬산(毘瑟山) 기슭에 세워 쌍계서원(雙溪書院)이라 했으나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
 - 선조 37년(1604) 지금의 자리에 사우(祠宇)를 중건하고, 제당(祭堂)과 다른 건물은 한강(寒岡) 정구(鄭逵)와 퇴계(退溪) 이황(李滉)이 사림의 협조로 건립하였다.
 - 선조 40년(1607)에 도동서원(道東書院)으로 사액(賜額)되었으며, 고종 8년(1871)의 서원철폐령 때 훼손되지 않은 전국 47개 서원 가운데 하나이다.



○ 주변현황

-서원의 주변 환경을 보면, 전면에는 낙동강이 200여m 앞에 흐르고 수령 약 400년의 은행나무가 자리하고 있으며, 후면에는 임야로 송림이 있고 서편에는 도동리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 건물현황 및 배치형태 : 전학후묘

-강당, 사당, 동재(거인재), 서재(거의재), 장관각, 내삼문, 전사청, 곳간채, 문간채, 증반소, 환주문, 수월루, 비각, 유물전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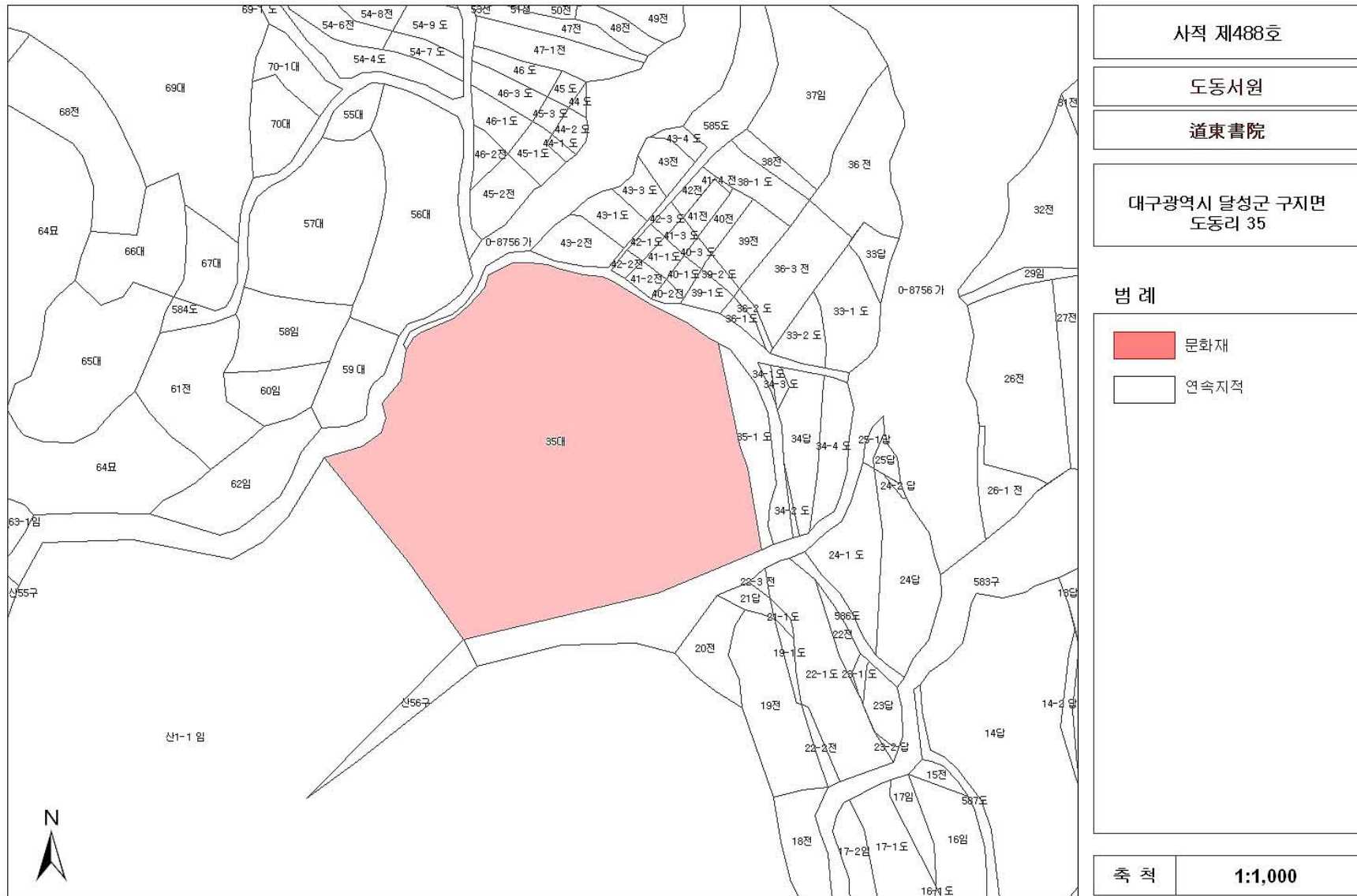
- 관리단체 : 달성군, 서흥김씨 한훤당영남파종중(대표 : 김태완)
- 배향인물 : 김굉필, 정구
- 서원내 지정문화재 현황 : 도동서원강당사당부장원(보물 제350호)
- 서원 소장문서 등 : 고서 10종 26책, 책판 1종 71판, 제기 및 현판 28건
- 고유행사(향사) : 두 제향(김굉필 선생, 한강 정구 선생)을 받드는 제사로 봄, 가을 2회 시행
- 주요 보수정비 추진실적
 - 2005 침단도난방지시설
 - 2006 강당, 사당 기단보수, 사당 단청 보수
 - 2009 강당 산자이상 해체 보수, 수월루 및 비각 단청, 안내판 이전 및 진입로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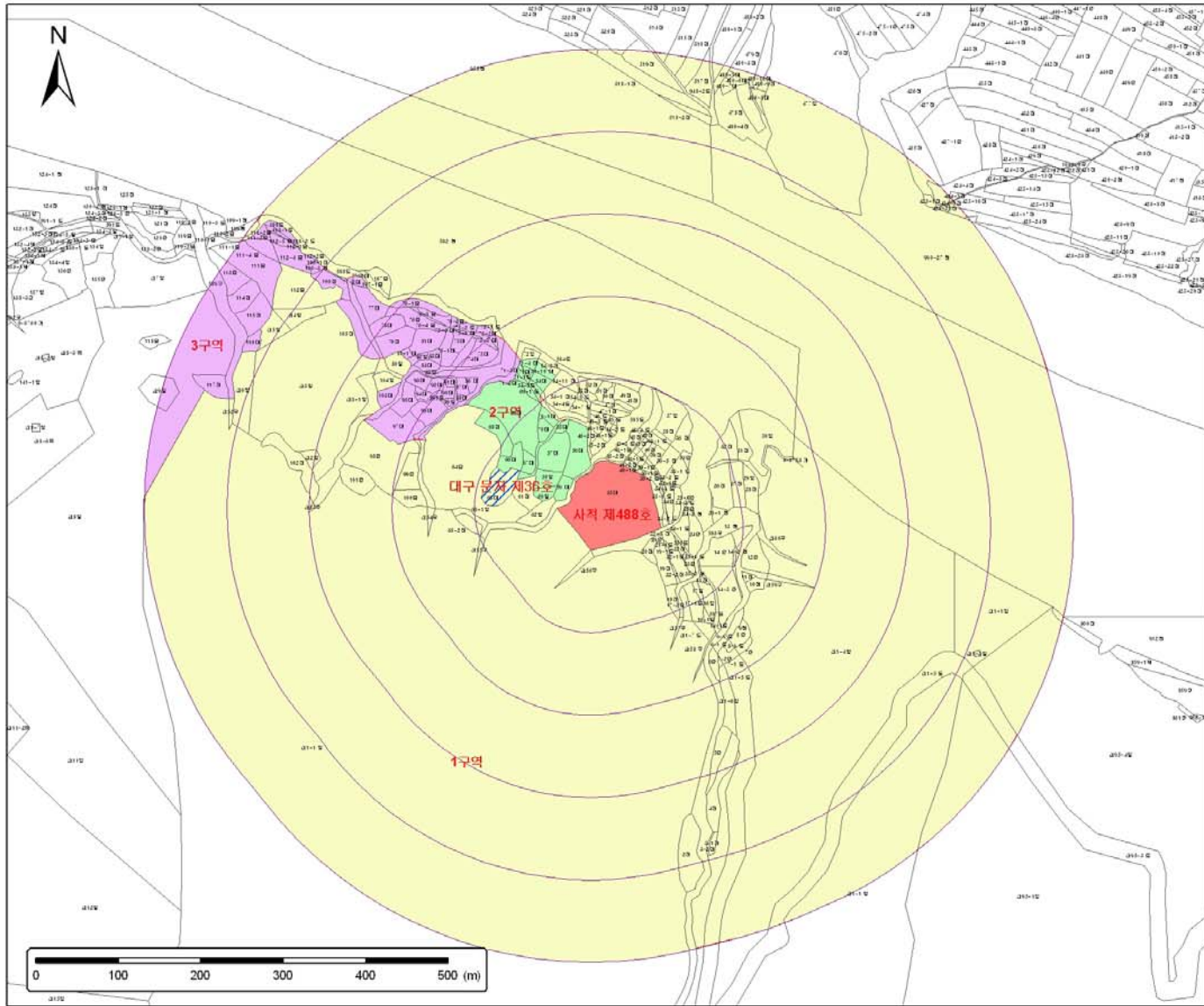
◆ 도동서원 배치도



◆ 도동서원 문화재 지정구역도



◆ 도동서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도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사적 제488호
도동서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동리 35

범례

- 국가지정 문화재
- 시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
- 연속지적
- 100 ~ 500(m)
- [허용기준구역]**
- 1구역
- 2구역
- 3구역

구 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10:3 이상)
1구역	보존구역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공통 사항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축척 1:4,700

■ 돈암서원

◆ 문화재 개요

- 지정별 : 사적 제383호 ('93. 10. 18지정)
- 지정면적 : 42,106㎡(지정구역:5,548㎡, 보호구역:36,558㎡)
- 연혁 및 특징
 - 1634년 창건, 1880년 이건
 - 돈암서원은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을 담당해 많은 학자를 배출한 곳으로, 1868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 때에도 남아 있었던 47개 서원 중 하나로 1599년(효종 10년)과 1660년(현종 1년)에 2차례에 걸쳐 '돈암'이라는 사액을 받음.
 - 김장생과 김집은 부자지간으로 아들인 김집이 김장생의 학풍을 계승·발전시켰으며, 사후 부자가 모두 문묘에 종사되는 영예를 얻었다. 뿐만 아니라 돈암서원에 배향된 인물 모두가 문묘에 종사되어 돈암서원을 선정서원(先正書院)이라 일컫기도 한다.



○ 주변현황

- 돈암서원은 고정산 줄기가 이어지는 중턱에 위치하여 앞으로는 평평한 전답, 과수원이 입지하고 있으며, 멀리 개태사가 있는 천호산이 입지
- 북쪽으로는 대전-논산간 국도와, 호남선 철도가 지나고 있으며, 연산천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며 멀리 계룡산이 조망되고 있음.

○ 건물현황 및 배치형태 : 전학후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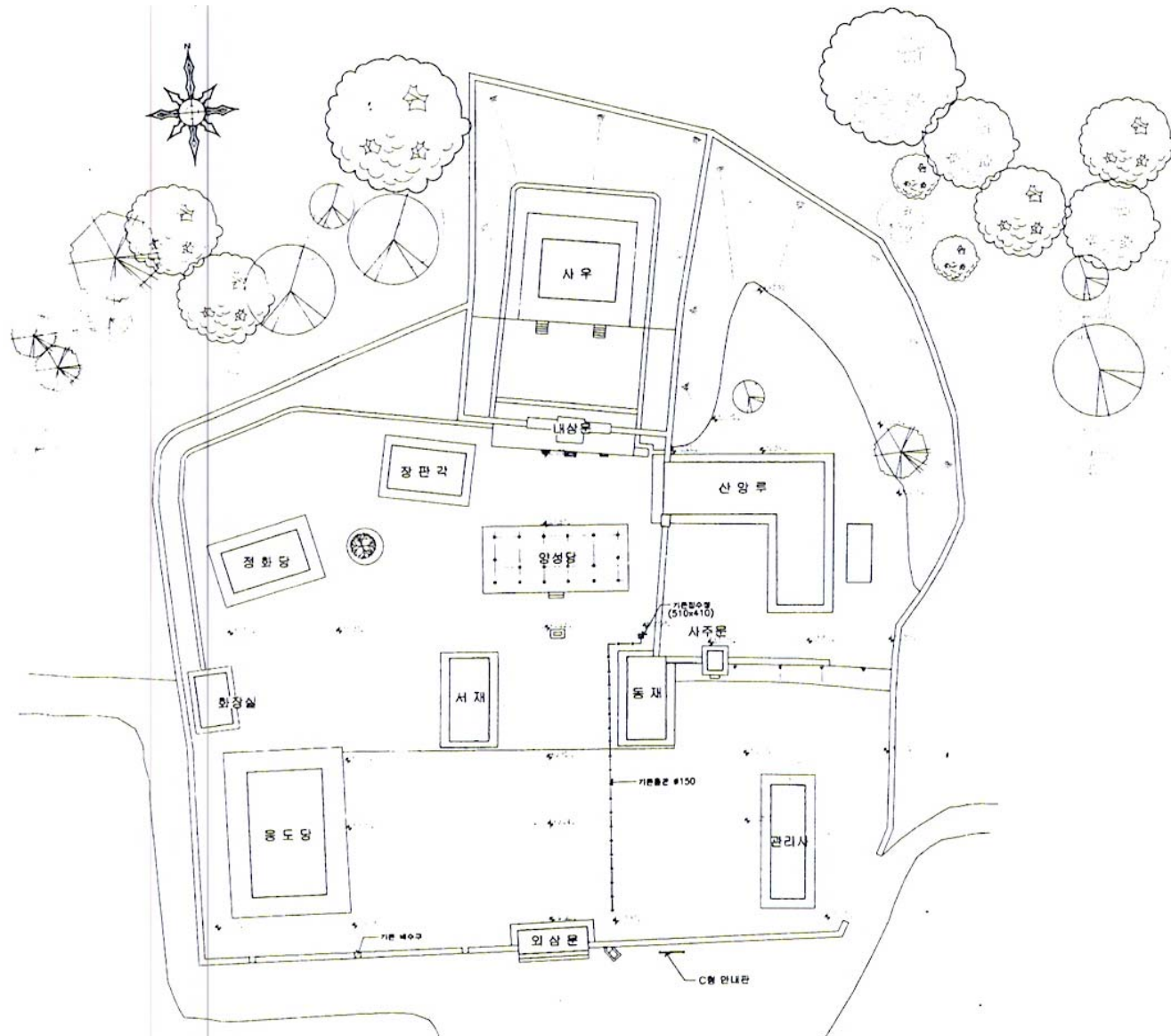
- 응도당(강당), 승례사(사당), 장관각, 정회당, 전사청, 양성당, 경회당, 거경제, 정의재, 입덕문, 산양루

○ 관리단체 : 논산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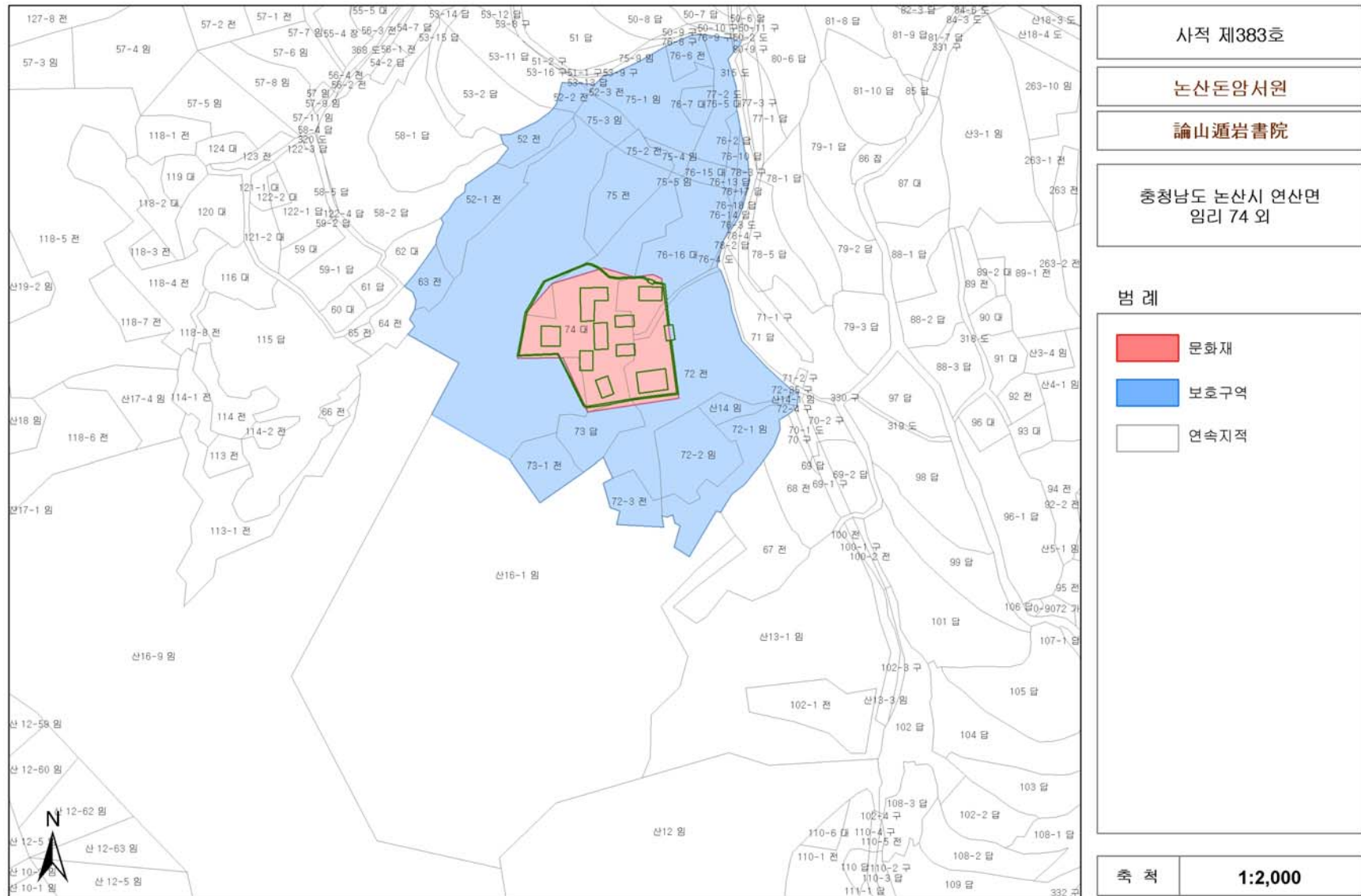
- 배향인물 : 김장생, 김집, 송준길, 송시열
- 서원내 지정문화재 현황 : 돈암서원 응도당(보물 제1569호), 돈암서원 유경사(충남 유형문화재 제155호), 돈암서원원정비(충남 문화재자료 제366호)
- 서원 소장문서 등 : 장판각에 김장생과 김집의 문집 등 2,103판 보관.
- 고유행사(향사) : 배향인물을 받드는 제사로 봄, 가을 2회 시행
- 주요 보수정비 추진실적
-1994~2008 응도당 및 사우 보수, 양성당 및 담장 보수, 장판각 및 외삼문 보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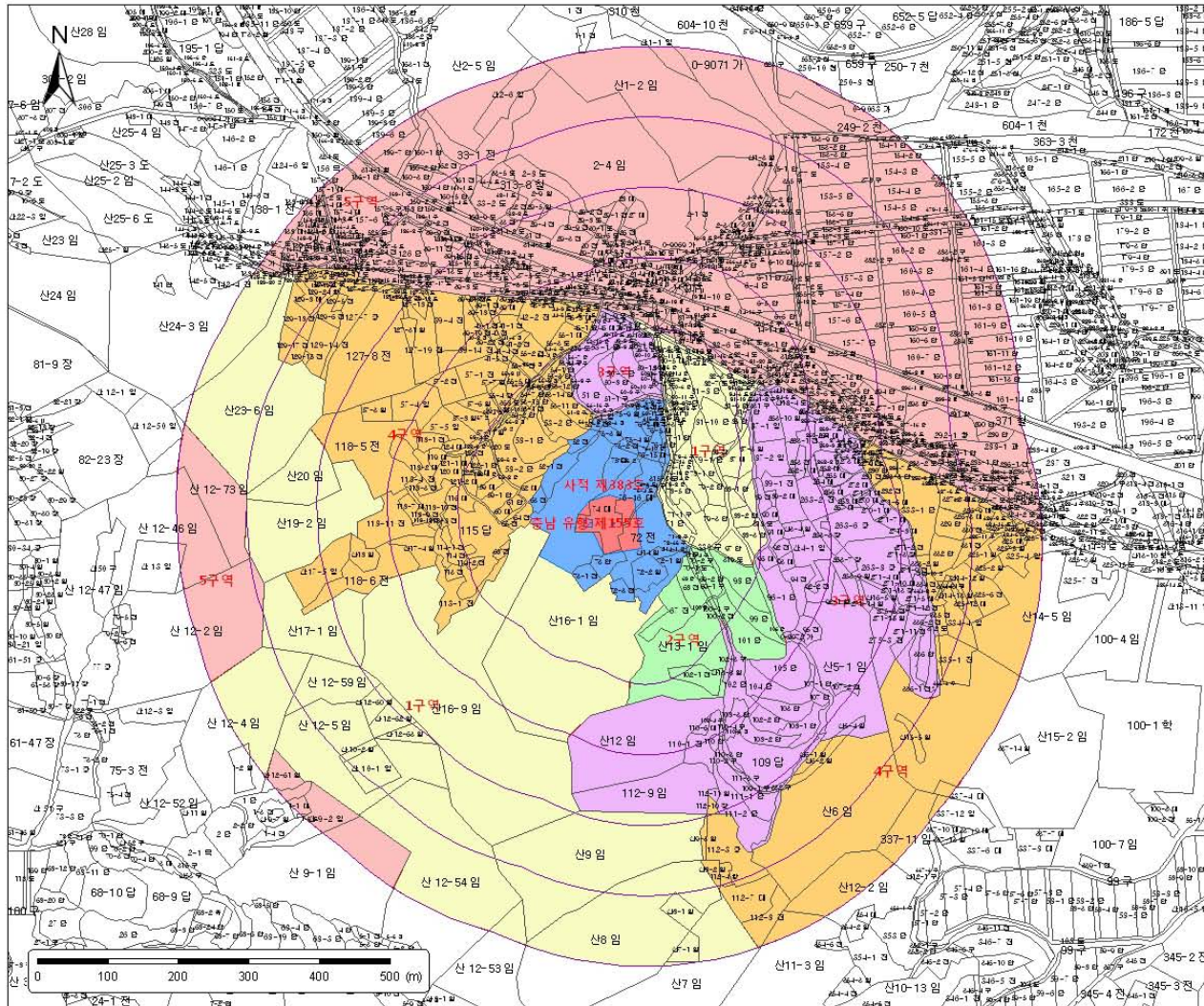
◆ 돈암서원 배치도



◆ 돈암서원 문화재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도



◆ 돈암서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도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사적 제383호
논산돈암서원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임리 74 외

- 범례
- 국가지정 문화재
 - 국가지정 보호구역
 - 시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
 - 연속지적
 - 100 ~ 500(m)

- [허용기준구역]
- 1구역
 - 2구역
 - 3구역
 - 4구역
 - 5구역

구 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10:3 이상)
1구역	○ 신축 불가 ○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최고높이 포함) 10% 범위 내에서 증축 허용 (단 1회에 한함)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4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
5구역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개계측 경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하는 별도 심의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방수,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축척 1

■ 무성서원

◆ 문화재 개요

- 지정별 : 사적 제166호 ('68. 12. 19지정)
- 지정면적 : 5,521㎡ (문화재구역 1,428 보호구역 4,093)
- 소재지 : 전북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 500

○ 연혁 및 특징

- 1584년(성종 15) 고운 최치원의 사당인 태산사 재건
- 1544년(중종 39) 태인현감을 지낸 신잠의 생사당 건립
- 1696년(숙종 22) '무성'이라는 사액을 받음.

-이 서원은 신라말 유학자인 고운 최치원이 태산군수로 재임중 쌓은 치적을 기리고 그를 향사하기 위해 세운 태산사에서 유래되었는데 현 건물은 1844년(헌종 10)에 중수하였고 강당은 1828년(순조 28)에 중창되었음. 이 서원은 1868년 정부의 서원철폐령에도 훼손되지 아니한 전라북도내 유일의 서원으로서 1906년 면암 최익현과 둔헌 임병찬이 일제의 침략에 항거하기 위해 호남의병을 창 의한 역사적 현장임.



○ 주변현황

-무성서원은 성황산을 등지고 앞으로 천이 흐르는 '배산임수'의 형국임.

-마을의 중앙에 위치하여 주변에 민가가 들어서 있으며 전면에는 농경지가 펼쳐져 있으나 입구가 민가로 막혀 있어 시야를 가림.

- 건물현황 및 배치형태 : 전학후묘(경사지 배치)

-태산사(사당), 내삼문, 강당, 현가루(외삼문), 강수재, 전사청, 비각4동

○ 관리단체 : 정읍시

○ 배향인물 : 최치원, 신잠, 정극인, 송세립, 정언충, 김약목, 김관

○ 서원 소장문서 등 : 봉심안, 강안, 원규 등 10여책 소장

○ 고유행사(향사) : 제향인물(7인)을 받드는 제사로 봄 1회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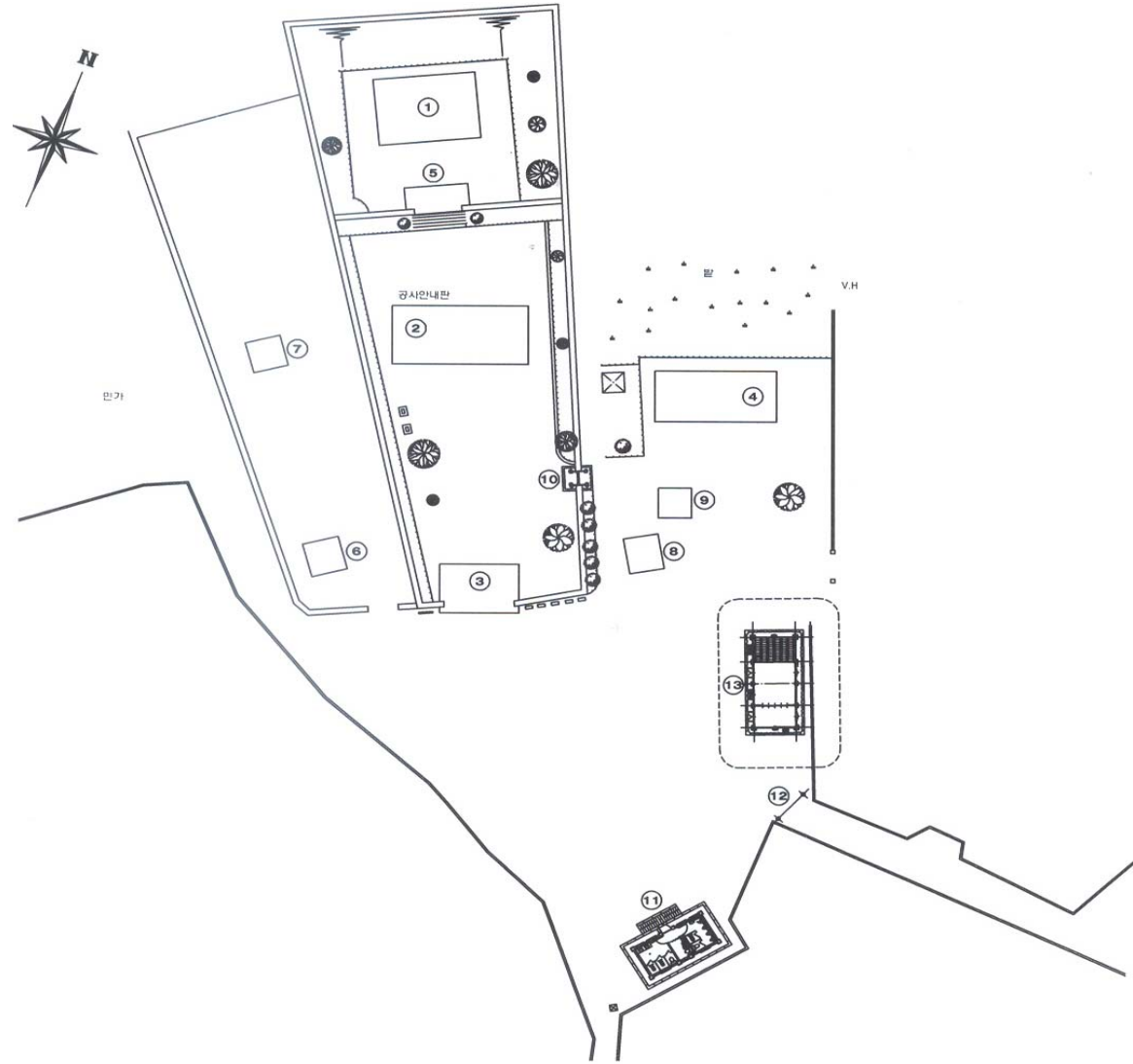
○ 활용 프로그램(교육 등) : 향음주례 재현(년 1회)

○ 주요 보수정비 추진실적

-1975~2008 사당, 강당, 현가루 보수(단청), 담장 보수, 사우 단청, 경내정비(석축, 배수로 설치), 화장실 신축, 전사청 개축, 광장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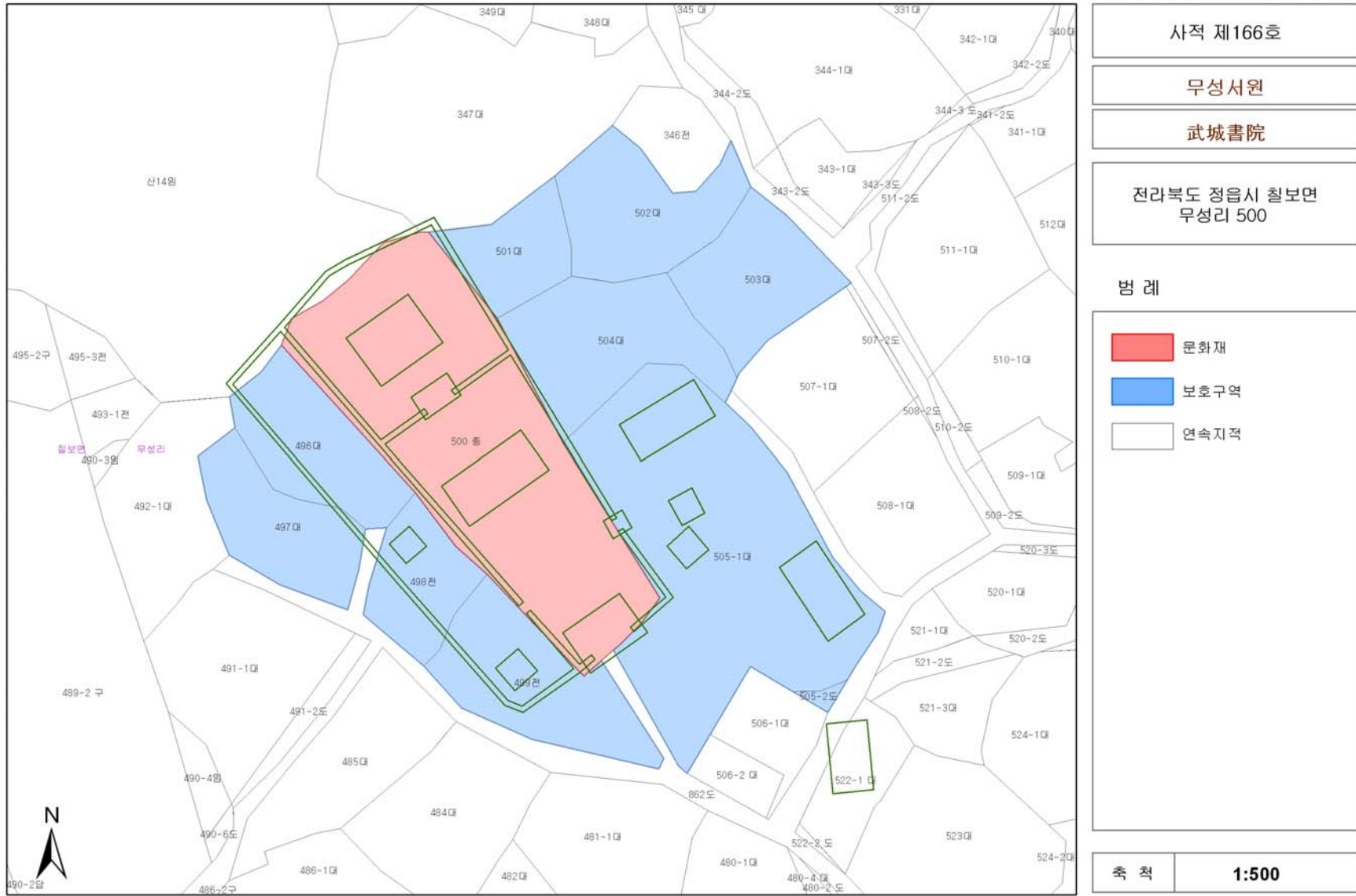


◆ 무성서원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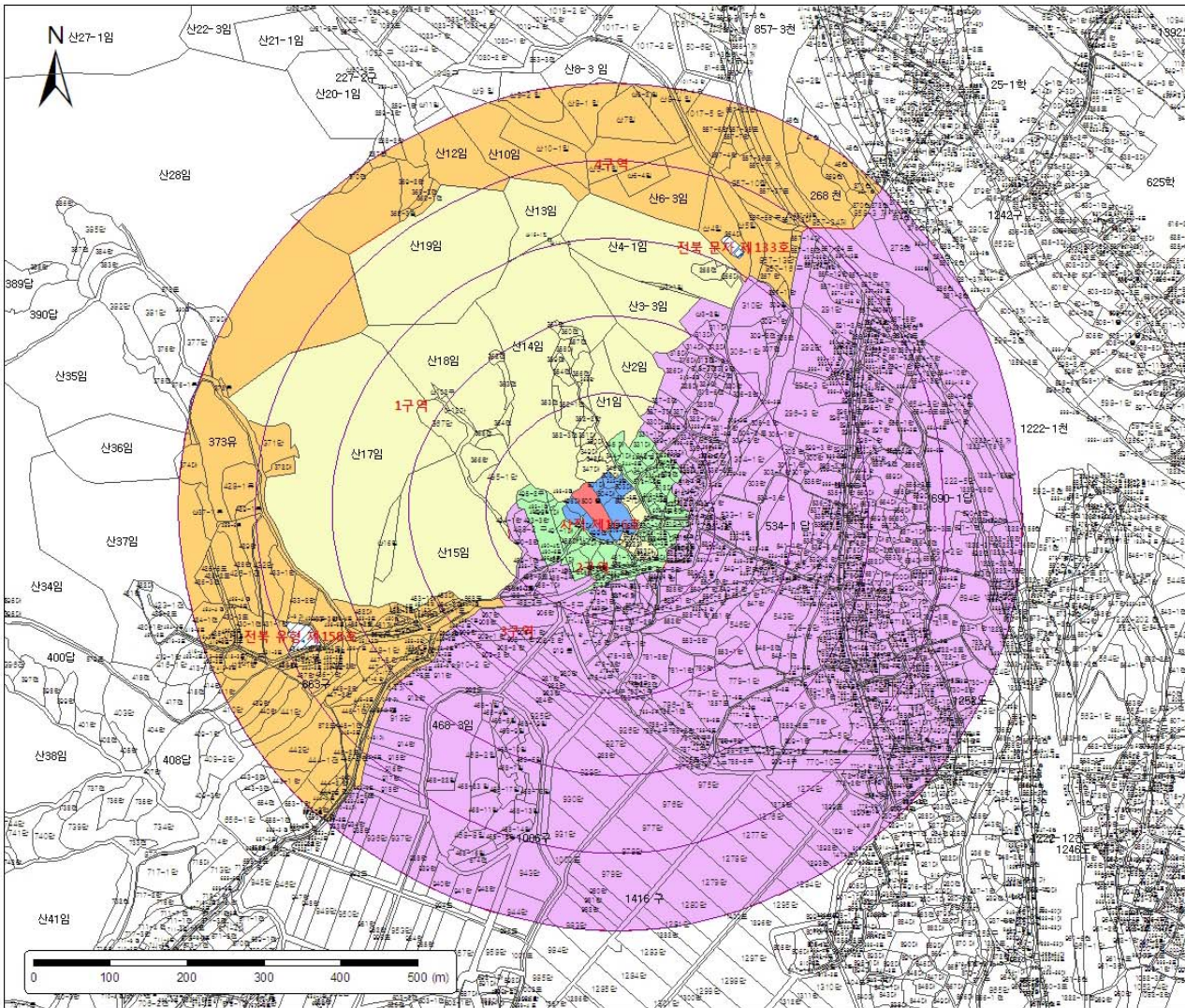


범 례	
①	사 우
②	강 당
③	현가루
④	강수재
⑤	내삼문
⑥	비각 1
⑦	비각 2
⑧	비각 3
⑨	비각 4
⑩	협 문
⑪	화장실
⑫	홍살문
⑬	전사청

◆ 무성서원 문화재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도



◆ 무성서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도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사적 제166호
무성서원

전라북도 정읍시
철보면 무성리 500 외

범례

- 국가지정 문화재
 - 국가지정 보호구역
 - 시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
 - 연속지적
 - 100 ~ 500(m)
- [허용기준구역]**
- 1구역
 - 2구역
 - 3구역
 - 4구역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10:3 이상)
1구역	신축, 증축 불가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4구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개축 허용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단, 계단, 탑, 승강기, 탑, 담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 필암서원

◆ 문화재 개요

- 지정별 : 사적 제242호('75. 4. 23지정)
- 지정면적 : 5,831㎡(지정구역) 48,639㎡(보호구역)
- 소재지 : 전남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377번지
- 연혁 및 특징
 - 선조 23년(1590) 하서 김인후 선생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장성읍 기산리에 사우 창건, 1597년 병화로 소실
 - 인조 2년(1624) 황룡면 필암리 증산마을 복설
 - 현종 3년(1662)사액(필암)
 - 현종 13년(1672) 현 위치로 이건
 - 1786년 고암 양자징 선생 추배



○ 주변현황

- 필암서원은 뒷산을 등지고 앞으로 필암천이 흐르는 '배산임수'의 형국임.
- 물형론으로 봉황이 날아가는 형국에 주둥이 부분에 서원을 배치하여 멀리서 보았을때 특트인 너른 들관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장관을 이루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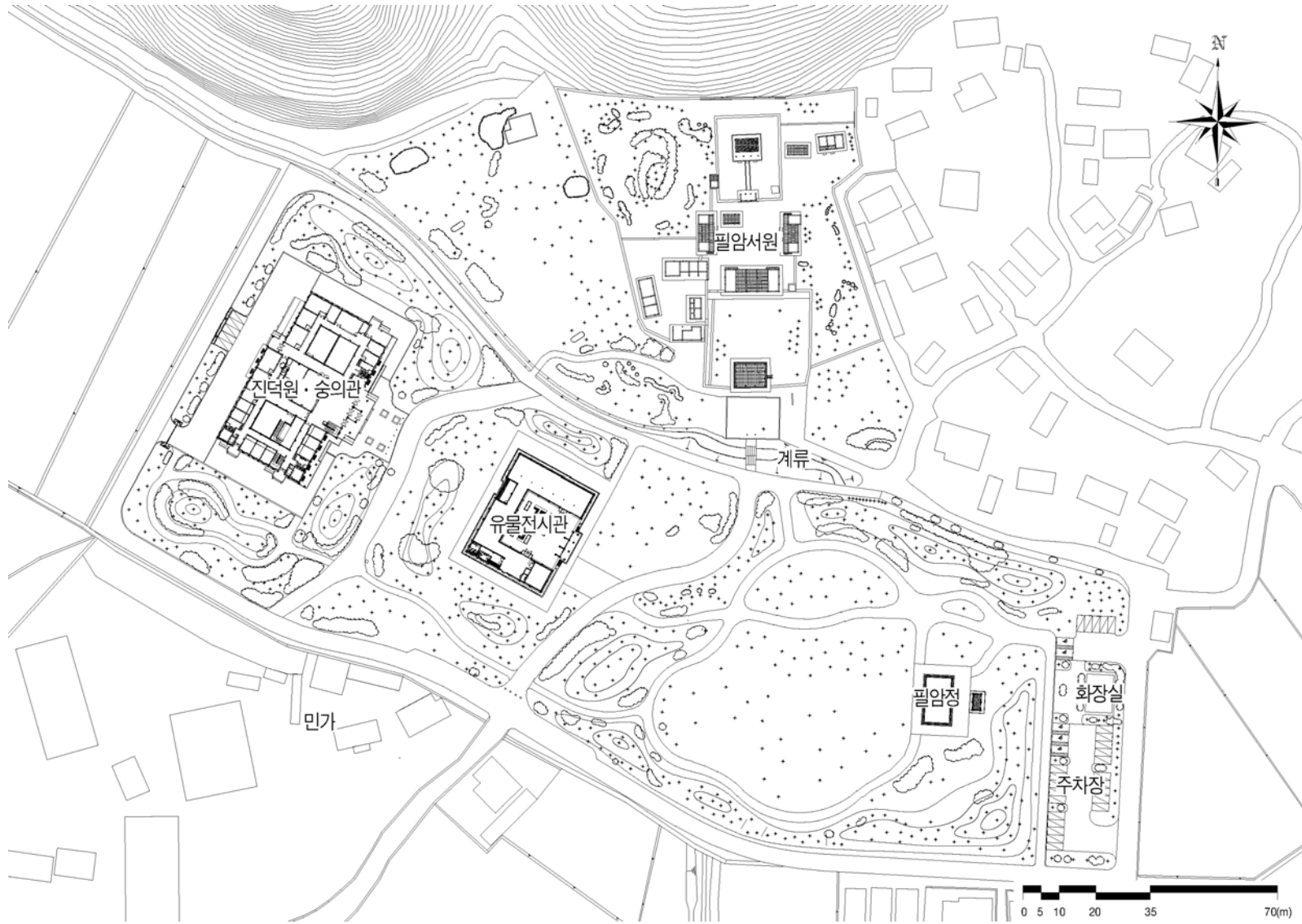
○ 건물현황 및 배치형태 : 전학후묘

- 우동사(사당), 내삼문, 청절당, 동재, 서재, 전사청, 장관각, 확연루, 고직사, 경장각, 한장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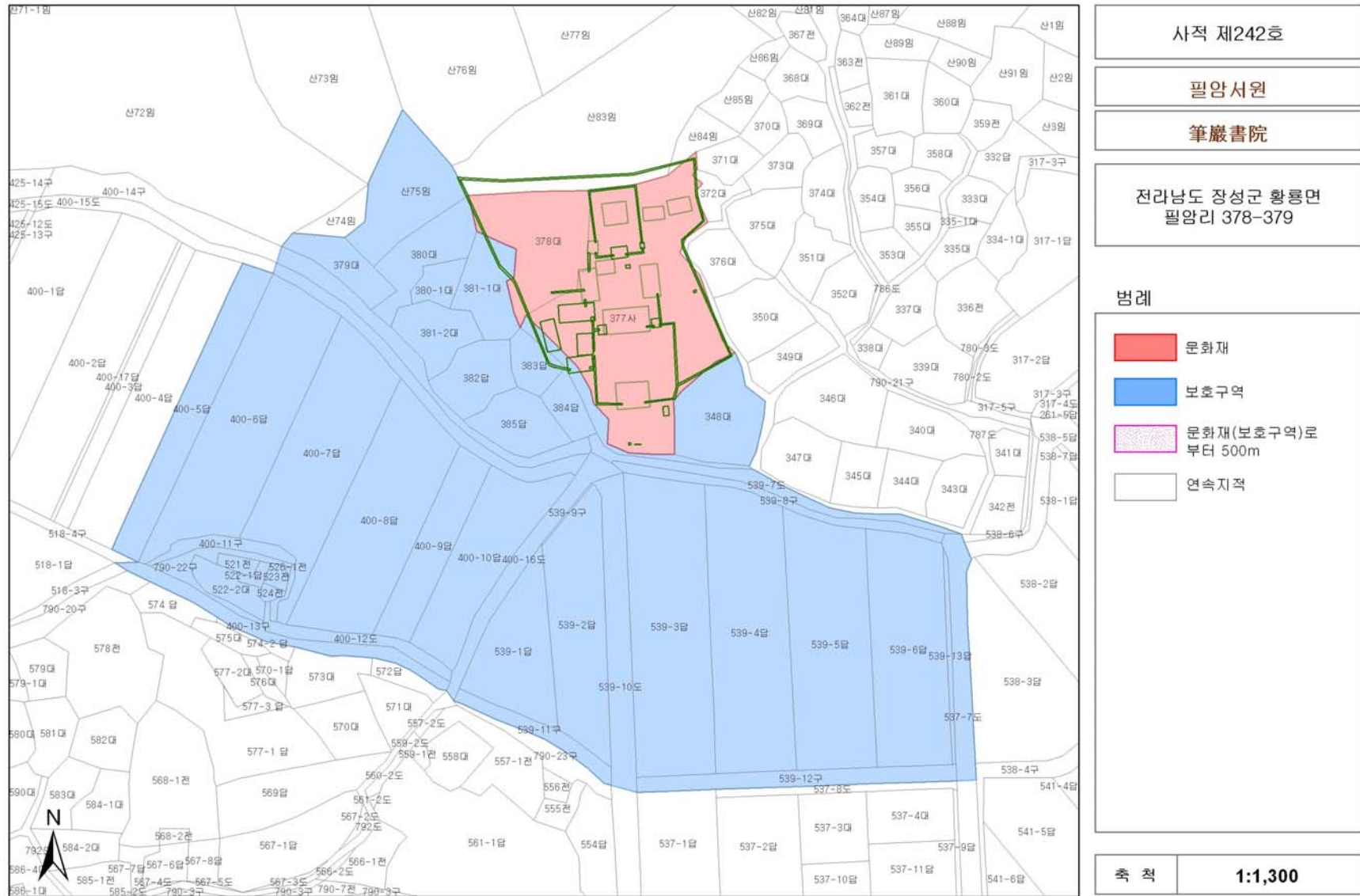
- 관리단체 : 장성군
- 배향인물 : 김인후, 양자징
- 배출인물 : 송강 정철, 양자징, 조희문
- 서원내 지정문화재 현황 : 필암서원 문적 일괄(보물 제587호), 장성필암서원 하서선생문집목판(시도 유형 제215호), 장성필암서원하서유목 목판일괄(시도유형 제216호)
- 고유행사(향사) : 두 제향(김인후,양자징)을 받드는 제사로 봄, 가을 2회 시행
- 활용 프로그램(교육 등) : 선비학당(1주일에 1회 시행)
- 주요 보수정비 추진실적
 - 1990~1997 옥외 소화전 설치, 내삼문·동재·서재·한장사·청절당·확연루 보수, 담장보수, 화장실개축, 고직사,한장사,청절당,장판각,장서각 보수
 - 1998년 - 기념관 건립 공사
 - 2000년-2001년 - 토지매입(12949평),건물17동보수,유물전시관 건립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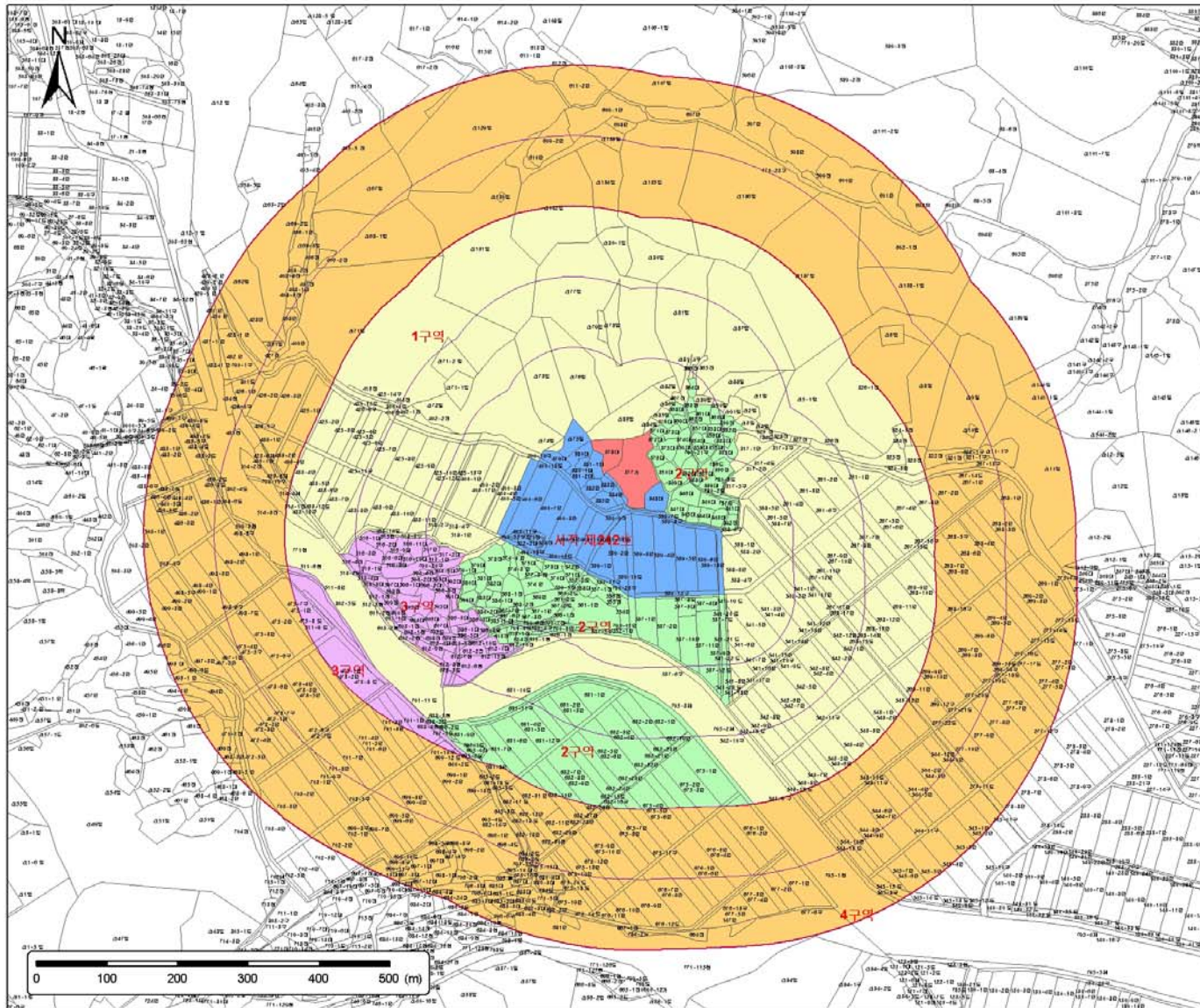
◆ 필암서원 배치도



◆ 필암서원 문화재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도



◆ 필암서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도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사적 제242호
필암서원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378 외

- 범례
- 국가지정 문화재
 - 국가지정 보호구역
 - 연속지적
 - 100 ~ 500(m)
- [허용기준구역]
- 1구역
 - 2구역
 - 3구역
 - 4구역

구 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10:3 이상)
1구역	보존구역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개채축 허용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 소수서원

◆ 문화재 개요

- 지정별 : 사적 제55호 ('63. 1. 21지정)
- 지정면적 : 7,504㎡(보호구역)
- 소재지 : 경북 영주시 내죽리 151-2
- 연혁 및 특징

소수서원은 고려시대의 명신이며, 학자인 회헌 안향을 제향하는 서원이다.

조선 중종 37년(1542) 풍기 군수 주세붕이 안향을 제사지내기 위하여 사묘(祠廟)를 세우고 그 이듬해 안향 선생을 봉안하며 학사를 이건하여 백운동서원이라 하였다. 중종 39년(1544)에는 안축, 안보를 배향하였으며 명종 3년(1548)에 퇴계 이황이 풍기군수로 부임한 후 명종 5년(1550) 소수서원으로 사액을 받아 사액서원의 시초가 되었으며, 그후 인조 11년(1633) 주세붕을 추향하여 향사를 지내고 있다.



○ 주변현황

서원은 옛 숙수사지의 넓은 터에 남향하여 자리잡고 있다. 동쪽의 죽계천을 끼고 정문인 사주문을 들어서면 강학당이 있고, 그 뒤로 동·서재가 한채로 된 직방재와 일신재가 자리잡고 있다. 동·서재 좌측에는 서고와 전사청이 있고, 그 뒤로 영정각이 놓여 있다. 강당 서쪽에 담장으로 별도 구획된 공간에 문성공묘가 있고, 강당 동쪽 모서리에는 학구재와 지락재가 ‘ㄱ자형’을 이루고 있다. 서원 일곽 뒤편에는 별도로 구획된 담장내에 유물관, 관리사, 전시관이 자리잡고 있다. 한편 사주문 입

구에는 경렴정이 있고, 죽계천 건너편 물가에는 취한대가 주위의 송림과 어울려 수려한 경관을 자아내고 있다.

강학당은 정면 4칸, 측면 3칸의 굴도리 초익공 건물이다. 평면구성은 마루방 3칸과 온돌방 1칸이고, 사면에는 폭이 좁은 쪽마루를 돌렸다. 상부가구는 5량가이고, 잘 치목한 대량위에 주두와 초각 보아지를 끼운 동자주를 두어 종량과 중도리를 받쳤다. 중도리는 소로를 끼운 파련대공 위에 올려



져 있다. 마루방부분의 창호는 사분합 들문이고, 온돌방 부분에는 고식의 문틀을 잘 간직하고 있다. 지붕은 팔작지붕에 골기 와를 이었다. 동·서재는 한채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면 6칸, 측면 칸반의 납도리 소로수장집이다. 평면구성은 가운데 2칸 마루방을 중심으로 양측에 온돌방 2칸을 두었고, 온돌방앞에는 뒷마루를 깔고 헌함을 세웠다. 상부가구는 5량가이고,

지붕은 홑처마 팔작지붕이다. 학구재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간결하고 아담한 3량가 납도리집이다.

이 건물은 주세봉의 문인인 송간 황응규(자 : 중문, 1518~1598)가 건립하였다. 평면은 가운데 마루를 중심으로 양측에 온돌방 1칸씩을 두었다. 지붕은 홑처마 맞배지붕에 골기와를 이었다. 지락재는 창석 이준이 광해 5년(1613)에 풍기군수로 부임하여 건립하였다.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3량가 납도리집이다. 평면은 북쪽 끝방의 온돌방에 연달아 개방된 마루 2칸을 두었다.

○ 건물현황 및 배치형태 : 동학서묘

-충효교육관, 강학당, 문성공묘, 사료관, 영정각, 고직사, 일신재, 직방재, 장서각, 학구재, 지락재, 전사정, 겸렴정, 취한대

○ 배향인물 : 안향, 안축, 안보, 주세봉

○ 서원내 지정문화재 현황

-안향초상(국보 제111호), 대성지성문선왕전좌도(보물 제485호), 주세봉초상(보물 제717호), 소수서원 문성공묘(보물 제1402호), 소수서원 강학당(보물 제140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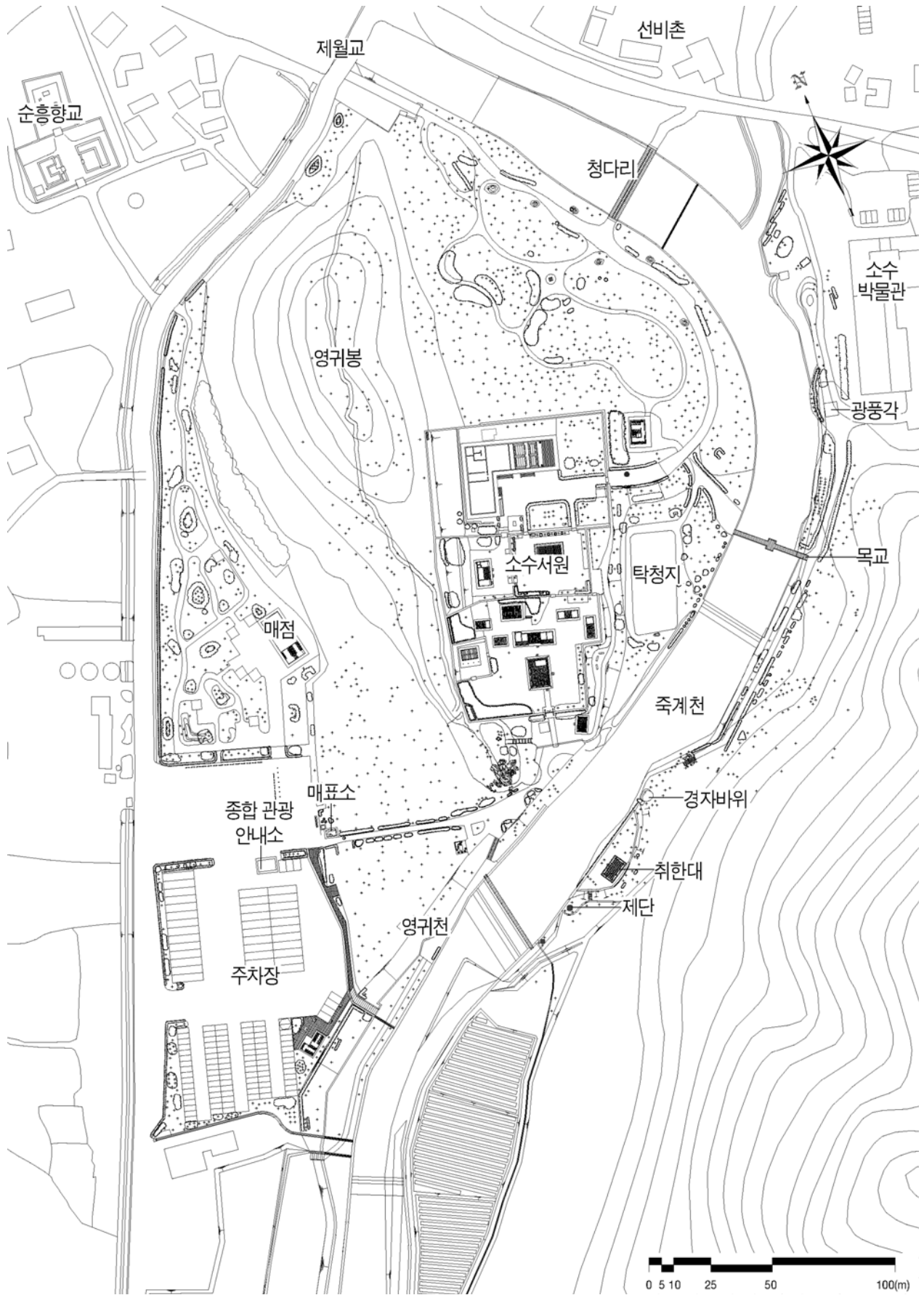
-서충대친림연회도(시도유형 제238호), 명종어필 ‘소수서원’ 현판(시도유형 제330호), 소수서원소장관목(시도유형 제331호)

○ 고유행사(향사) : 봄, 가을 2회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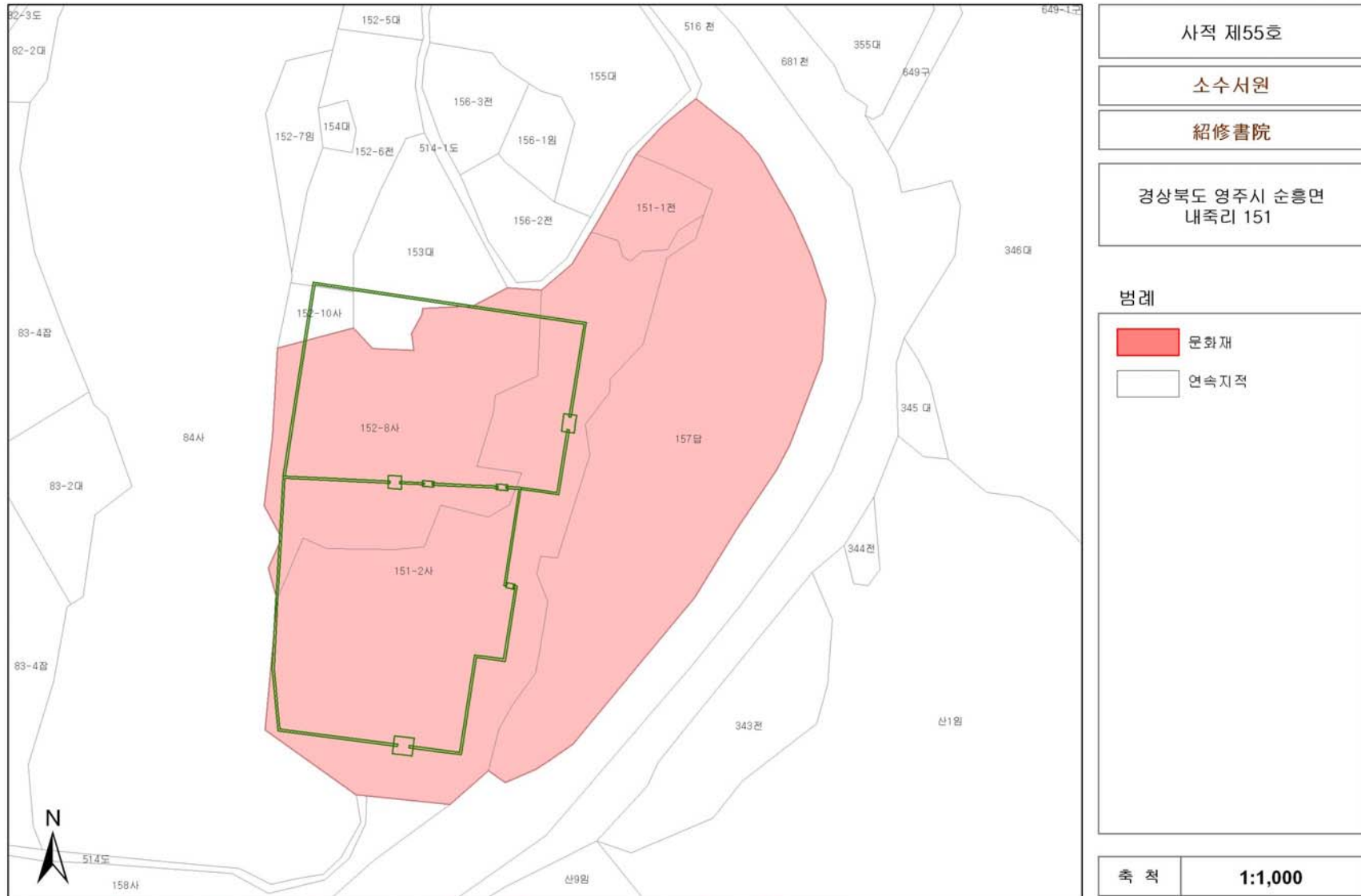
○ 주요 보수정비 추진실적

-2006~2009 강학당, 문성공묘 보수 및 기와변와, 철책보수, 방재시스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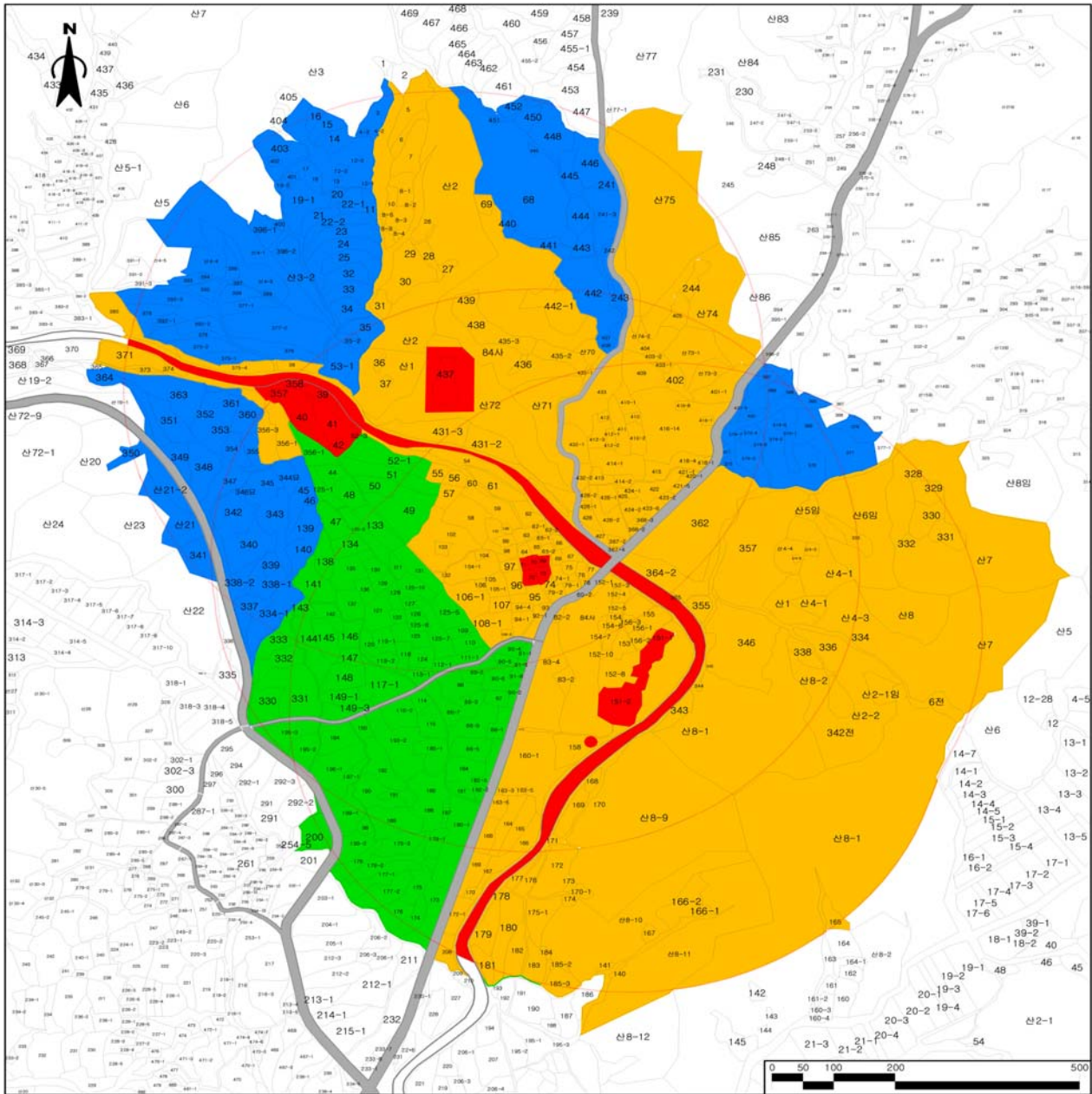
◆ 소수서원 배치도



◆ 소수서원 문화재 지정구역도



◆ 소수서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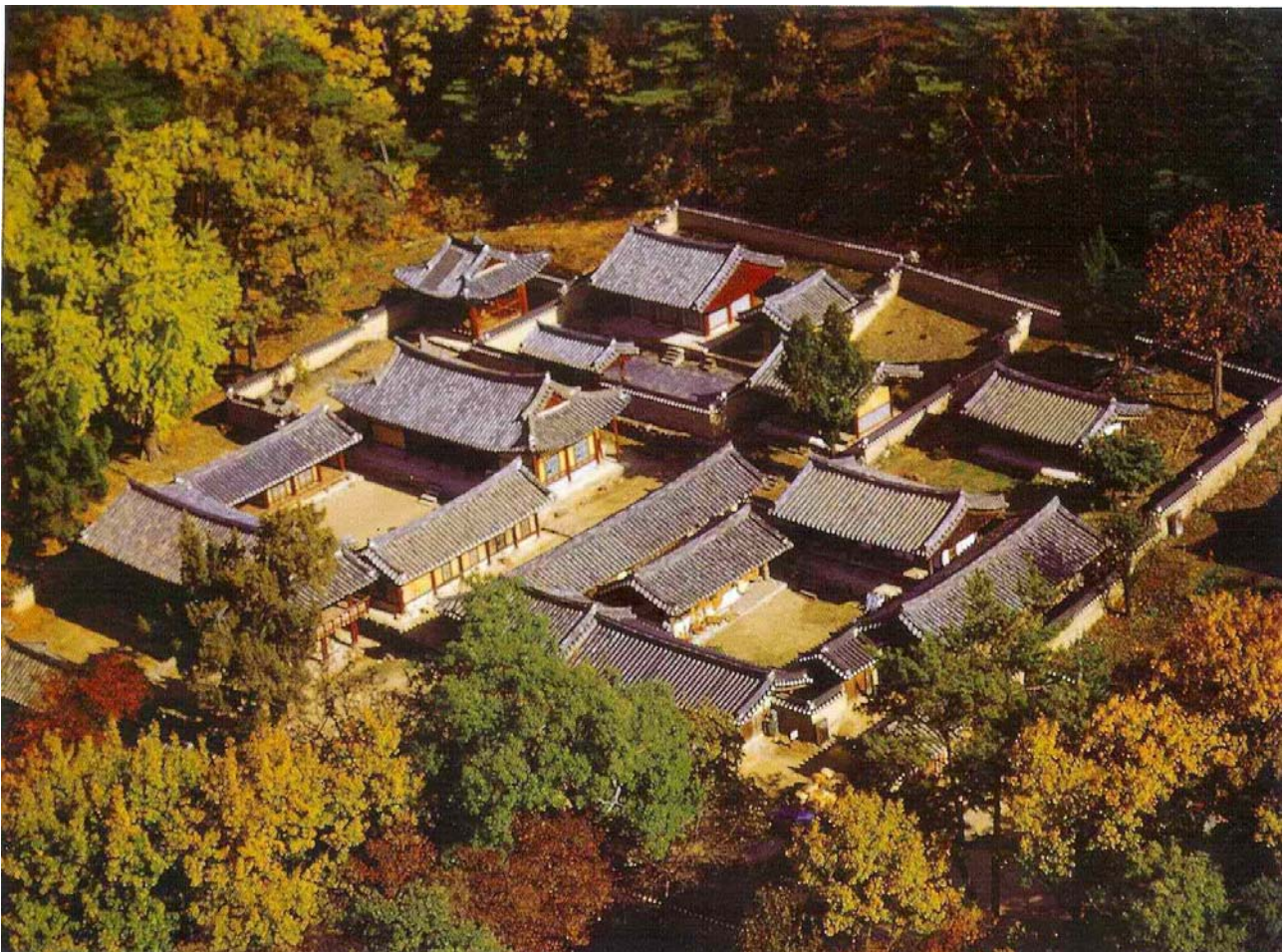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스라브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죽계천)	○ 원지형 보존	
2구역	○ 신축불가(기존건물 범위 내 개축 허용)	○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공통사항	○ 건물신축시 기와지붕 또는 초가지붕 ○ 가설시설물, 옥외광고물 설치 제한 ○ 문화재 경관보호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 제한 ○ 연면적 1,000㎡이상 건물신축 제한 ○ 순흥 읍내리 고분군 일대의 유물산포지 지역은 시· 발굴조사 선행 ○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 옥산서원

◆ 문화재 개요

- 지정별 : 사적 제154호 ('67. 03. 08지정)
- 지정면적 : 26,075㎡(지정구역)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7번지
- 연혁 및 특징

- 이 서원은 경주부윤 이제민이 지방 유림의 뜻에 따라 회재 이언적의 유허에 사당과 동서재, 강당 및 누각을 건립하면서 창건한 옥산서원이다. 그후 1574년(선조 7) 사액서원이 되면서 영남문운의 연총이 되었으며, 임진왜란의 병화에도 피해 없이 보존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공간구성은 무변루가 중심이 되는 진입부, 강당이 중심이 되는 강학 부분, 제향 기능의 사당부 및 부속사 등 4개 영역으로 구분 정문인 연락문을 들어서면 중층 누각인 무변루가 자리한다.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로 하층은 출입공간으로, 상층은 중당협실형 평면을 꾸미고 원주에 계자난간을 세워 한층 단아하다. 문루 뒤의 중앙에는 원주를 쓴 정면 5칸 측면 규모의 중당협실형 평면의 강당인 구인당이 있는데 좌측 온돌방은 해립재라 하고 우측은 양진재라 하였다. 이는 강당 앞 좌측의 민구재, 우측의 암수재라는 동서재의 재명과 더불어 회재학의 요체를 의미하며 그의 귀속이 구인학이었음을 뜻한다. 편액은 무변루와 같이 한석봉의 글씨로 되어 대청뒤에 걸렸으며 처마밑에는 추사의 친필인 옥산서원 편액이 달렸는데 원래의 것은 아계 이산해의 글씨였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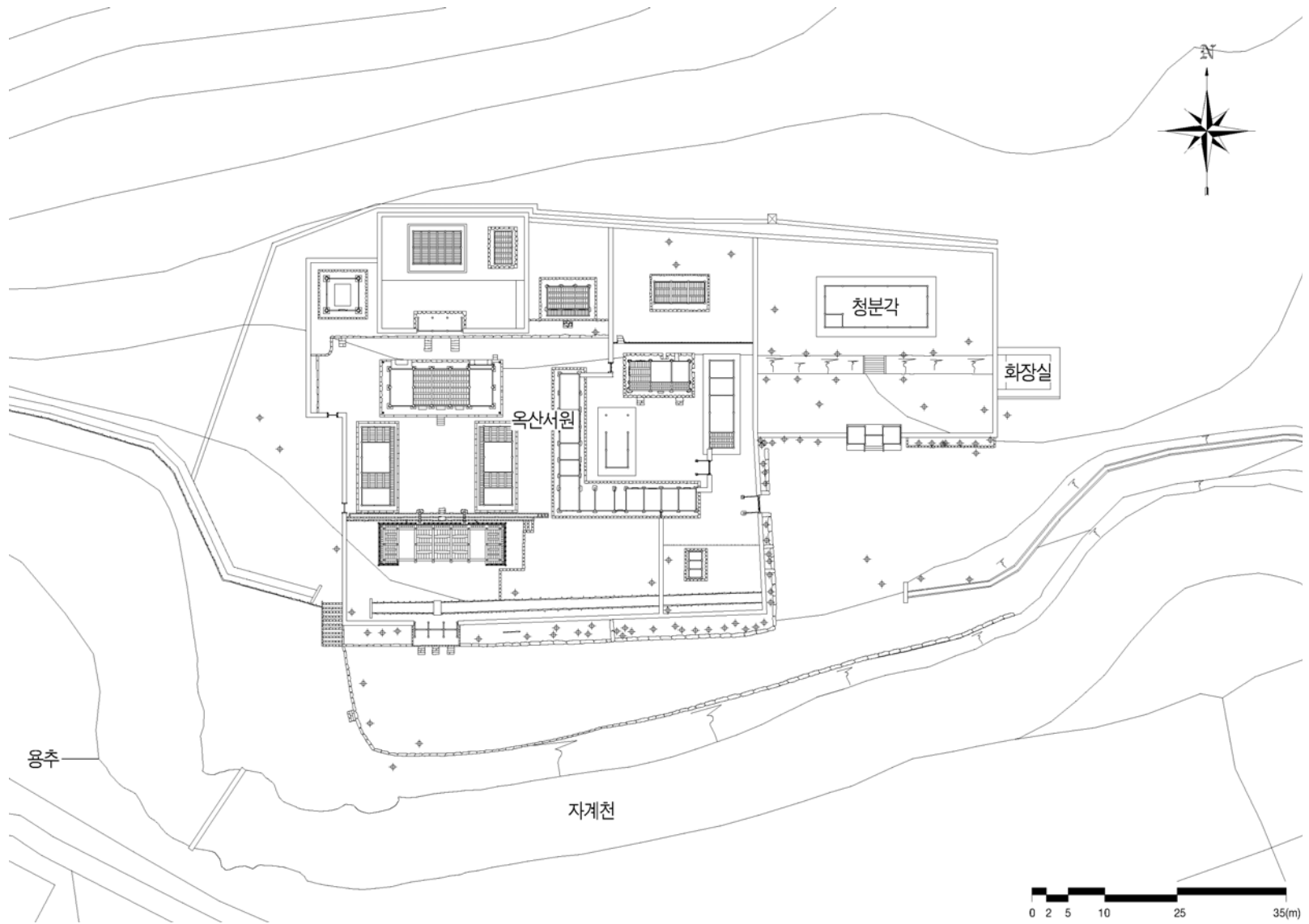


구인당 뒤 서북 모서리에 기대승이 찬한 신도비와 비각이 있고 중앙 뒤편에는 분장된 곳에 사묘인 체인묘가 있으며 내삼문을 통하여 출입하고 있다. 그리고 그 동편에는 경각, 곧 어필각과 문집판각이 있어 내사전적, 회재문집 및 판본 등이 수장되었다. 그러나 여기 수장된 어필, 어서, 회재 수적, 퇴계 수필 및 어서내사본을 비롯한 많은 전적은 1972년에 신축된 청분각에 수장되었는데 이는 태극문으로 출입하게 되어 있다. 각 건물들 자체는 건축적 큰 의미를 가지지는 못하지만 건물군에 의해 형성되는 공간적 처리방법이 돋보이는 서원이다. 이곳에서 서북으로 700m 떨어진 화개산 아래에는 회재의 별장이자 서재였던 독락당이 있다.

- 고유행사(향사) : 제향(회재 이언적)을 받드는 제사로 봄, 가을 2회 시행
- 주요 보수정비 추진실적
 - 2007 사주문 보수
 - 2008 옥산서원 주변정비 (배수로 담장 석축보수)
 - 2009 고직사 보수, 주변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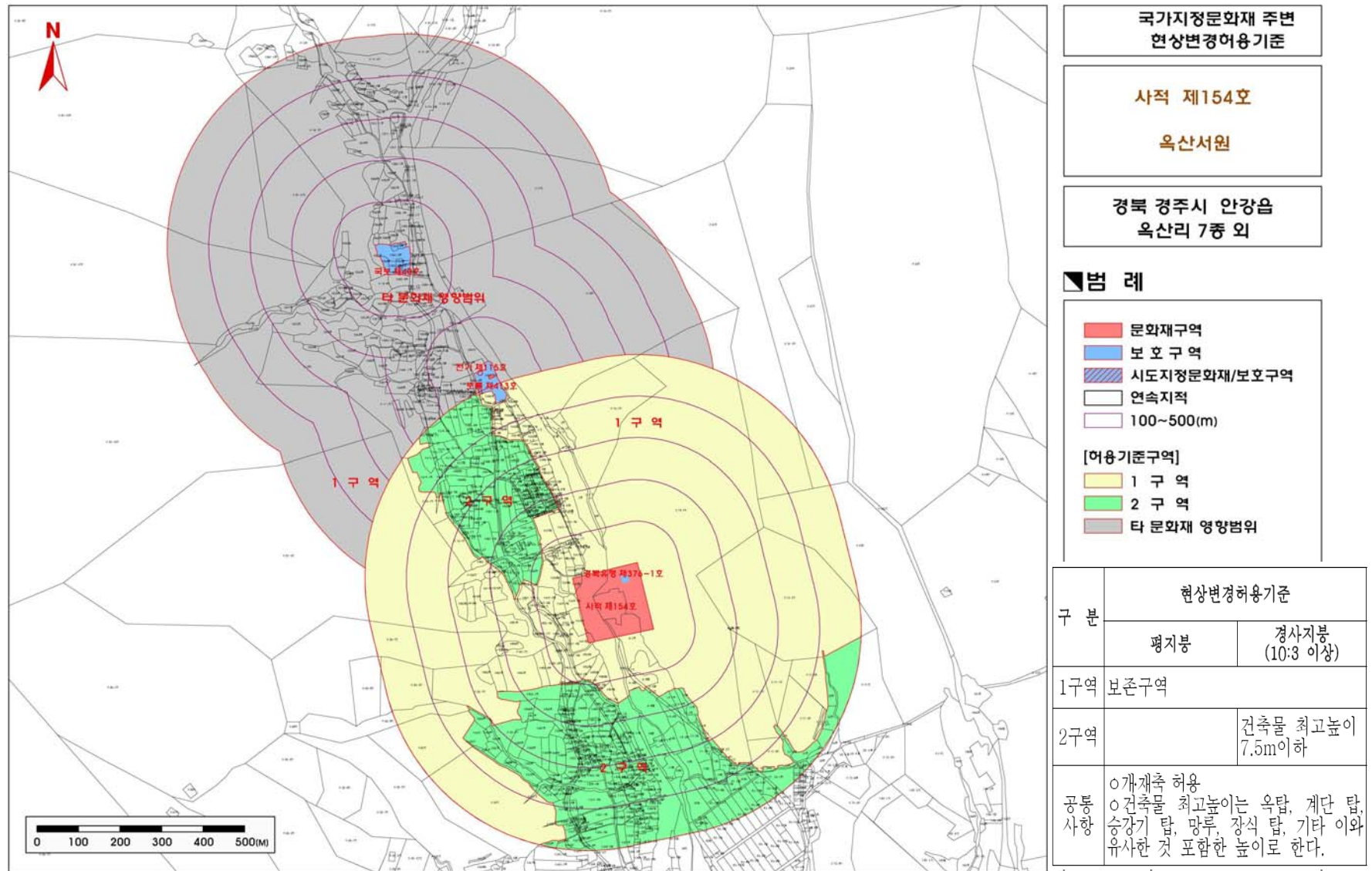
◆ 옥산서원 배치도



◆ 옥산서원 문화재 지정구역도



◆ 옥산서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도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사적 제154호
옥산서원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7종 외

범례

- 문화재구역
- 보호구역
- 시도지정문화재/보호구역
- 연속지적
- 100~500(m)
- [허용기준구역]
- 1 구역
- 2 구역
- 타 문화재 영향범위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10:3 이상)
1구역	보존구역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공통 사항	○개재축 허용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분미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도산서원

◆ 문화재 개요

- 지정별 : 사적 제170호 ('69. 5. 28지정)
- 지정면적 : 332,556㎡(지정구역)
- 소재지 : 경북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산61
- 연혁 및 특징
 - 1561년(명종 16)에 도산서당과 농운정사 건립
 - 도산서원은 퇴계 이황과 월천 조목을 함께 향사하면서 심신을 수양하고 학문을 연마하던 교육시설이다. 오늘날 도산서원은 퇴계가 세운 도산서당과 그 문인들이 세운 도산서원을 통칭하는 것이다. 선조는 도산서원 현판을 사액하였는데 그 편액은 당시의 명필 한호(韓濩)의 글씨이다.
 - 선조 7년(1572) 도산서당 뒤에 사당(상덕사)을 건립하여 퇴계 위패를 봉안
 - 선조 8년(1575)에 선조임금이 석봉 한호가 쓴 편액을 하사함



○ 주변현황

-도산서원은 낙동강변에서 곡구암(谷口巖岾)을 끼고 들어서면 영지산을 배산으로 동쪽은 천연대, 서쪽은 천광운영대이다. 서원은 아늑한 골짜기 안에서 안동호를 바라보며 자리 잡고 있다.

○ 건물현황 및 배치형태 : 전학후묘(경사지 배치)

-상덕사(사당), 내삼문, 전사청, 전교당, 동재, 서재, 상고직사, 장관각, 광명실, 하고직사, 도산서당, 농운정사, 열정(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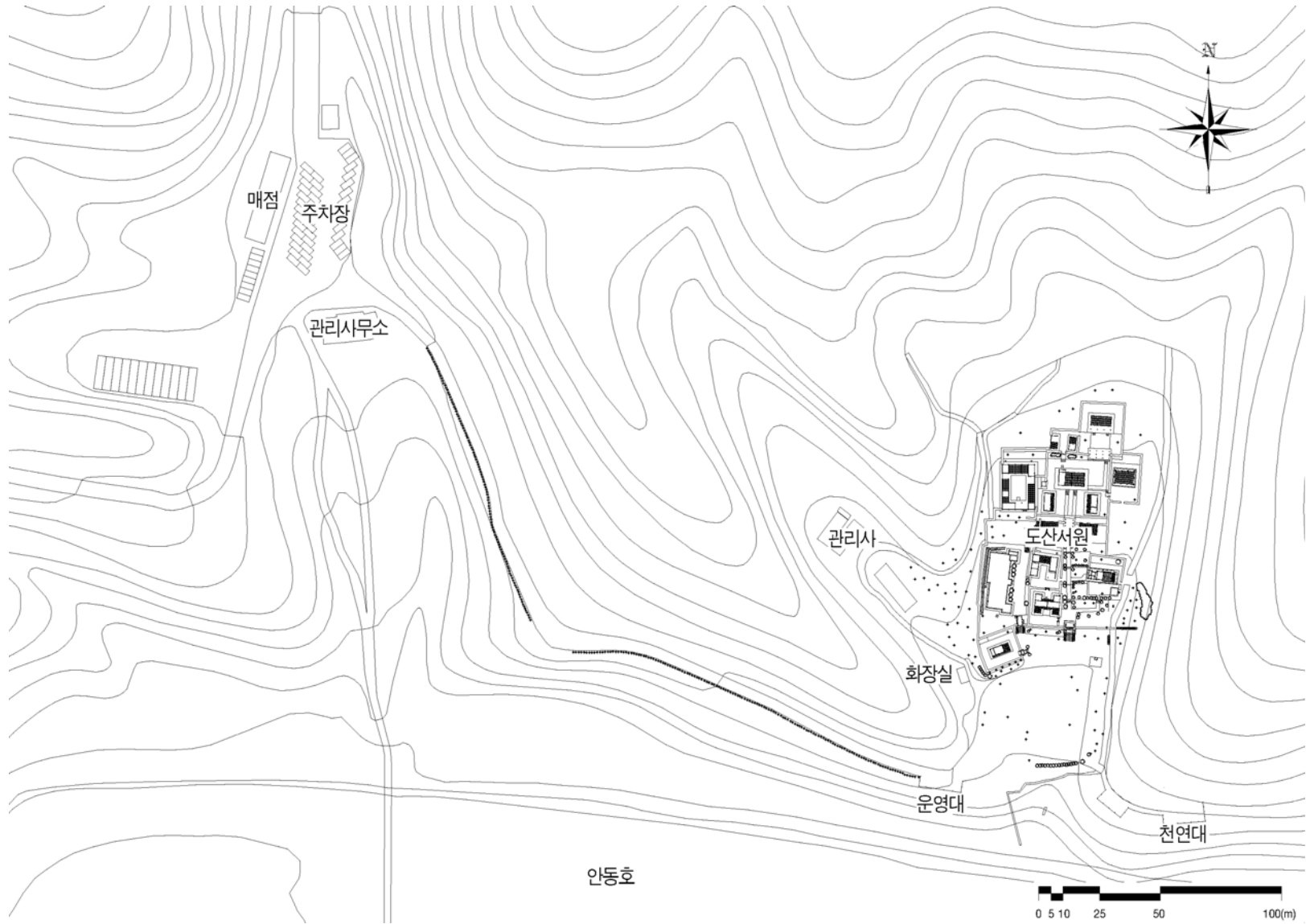
- 관리단체 : 안동시
- 배향인물 : 퇴계 이황, 월천 조목
- 배출인물 : 서애, 학봉, 한강, 조목, 정현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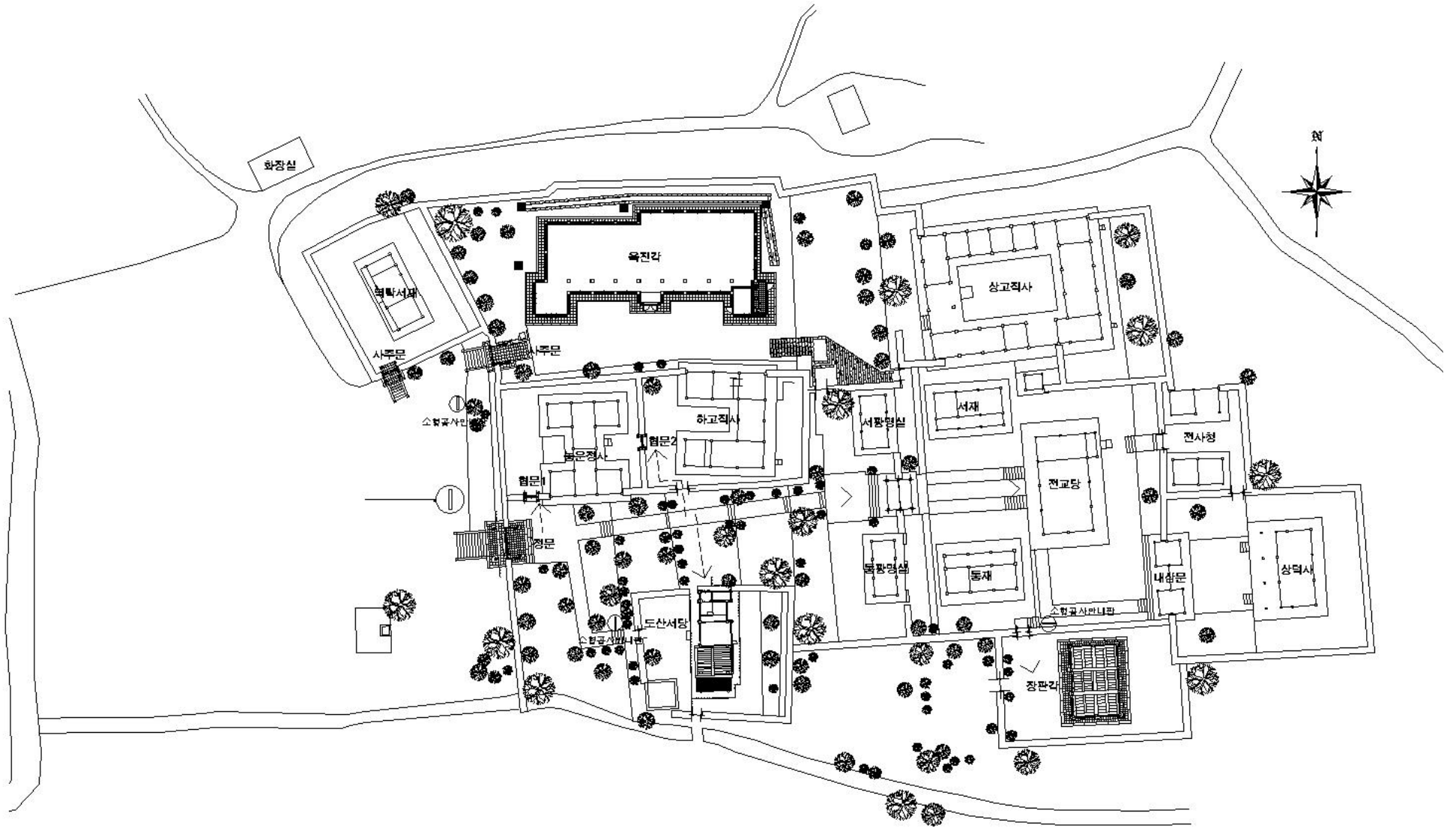
- 서원내 지정문화재 현황
 - 도산서원 전교당(보물 제210호), 상덕사부정문 및 사주토병(보물 제211호), 시사단(유형문화재 제33호)
- 서원 소장문서 등 : 퇴계 문집 등 4,917권, 목판 2,790장 소장
- 고유행사(향사) : 두 제향(이황, 조목)을 받드는 제사로 봄, 가을 2회 시행
- 활용 프로그램(교육 등) : 도산서원 선비문화 체험
- 주요 보수정비 추진실적
 - 1969~1970 정화보수사업
 - 1979~1980 장관각, 동광명실, 서광명실 경보기 및 보안시설 설치
 - 1989 장관각 및 도산서당 보수
 - 1998~1999 전사청, 상고직사, 하교직사, 농운정사, 동광명실 보수
 - 2003 옥진각, 안내판, 주변정비
 - 2007 동서재, 진도문, 협문, 동·서 광명실 보수
 - 2009 도산서당, 장관각, 협문 지붕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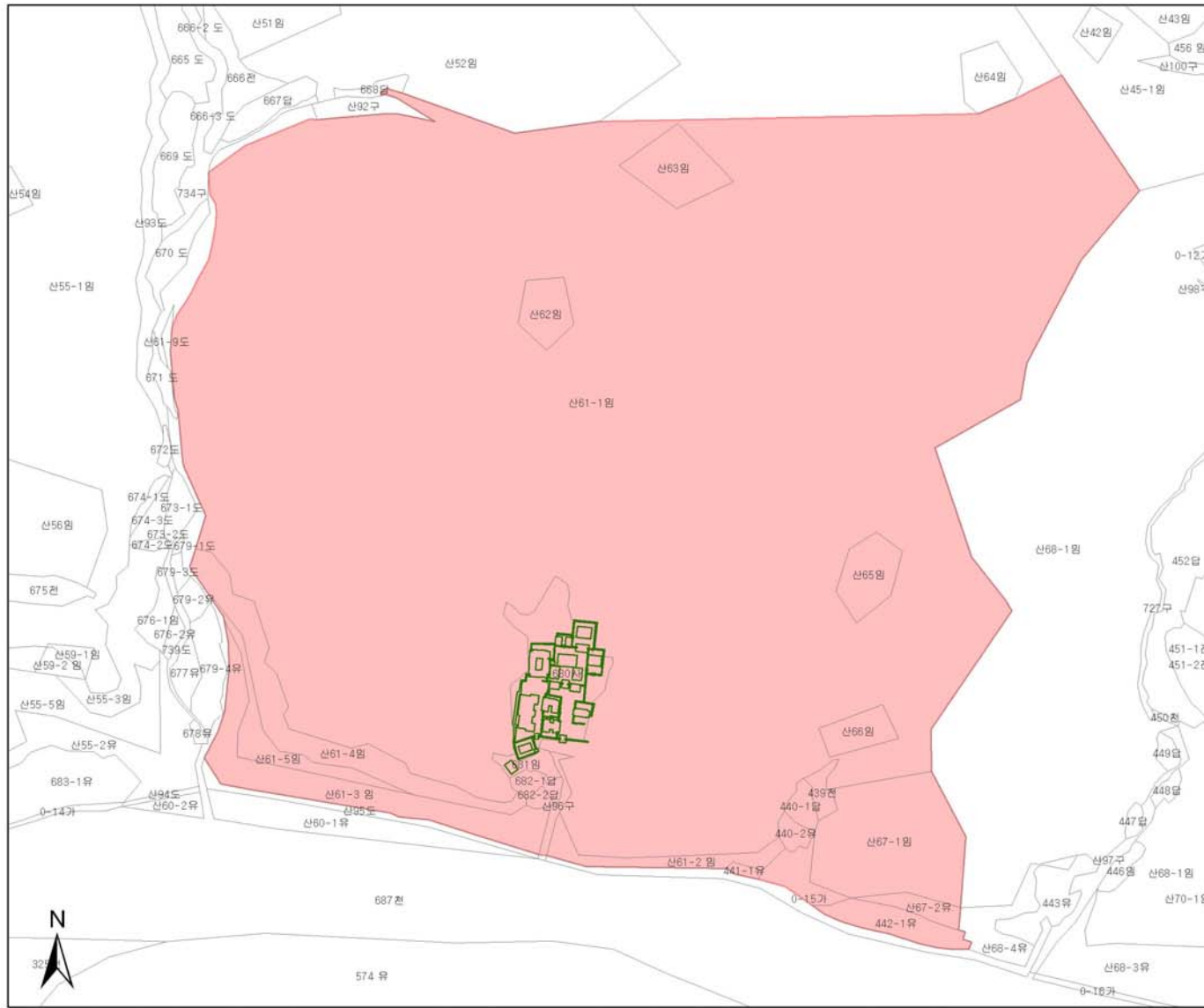
◆ 도산서원 배치도



◆ 도산서원 배치도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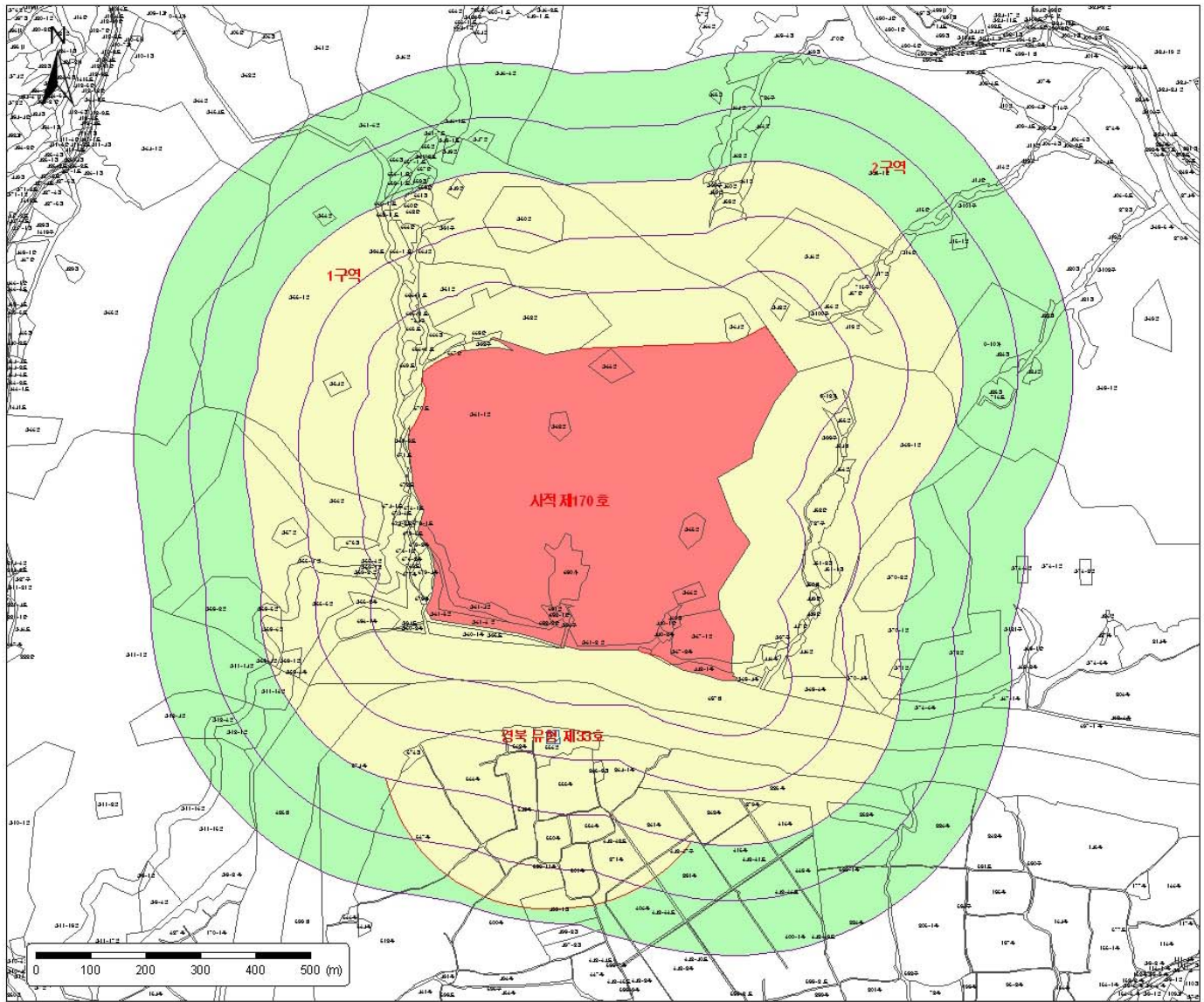


◆ 도산서원 문화재 지정구역도



사적 제170호	
도산서원	
陶山書院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680	
범례	
	문화재
	문화재(보호구역)로 부터 500m
	연속지적
축척	1:2,800

◆ 도산서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도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사적 제170호
도산서원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680 외

범례

- 국가지정 문화재
- 시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
- 연속지적
- 100 ~ 500(m)

[허용기준구역]

- 1구역
- 2구역

구 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10:3 이상)
1구역	보존구역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규모 범위 내 개·보수 허용)	
2구역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개개축 허용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 병산서원

◆ 문화재 개요

- 지정별 : 사적 제260호 ('78. 3. 31지정)
- 지정면적 : 22,620㎡(지정구역)
- 소재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 30
- 연혁 및 특징

-1563년 창건(풍악서당), 1572년 이건

-병산서원은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을 담당해 많은 학자를 배출한 곳으로, 1868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 때에도 남아 있었던 47개 서원 중 하나로 1863년 철종 14년(1863)에 '병산'이라는 사액을 받음.

-이 서원은 본래 풍악서당이라 하여 조선 명종 18년(1563) 구 풍산현 북쪽에 창건되었으나 선조 5년(1572) 류성룡이 이곳으로 옮겼으며, 1613(광해군 5년) 류성룡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존덕사(사당)를 건립하면서 향사의 기능을 갖춘 서원이 됨.

-광해군 12년(1620)에 서애 위패를 여강서원으로 옮겼다가 인조7년(1629)에 다시 병산서원으로 옮겨와 주향(主享)하고 있다.



○ 주변현황

-병산서원은 화산을 등지고 앞으로 낙동강이 흐르는 '배산임수'의 형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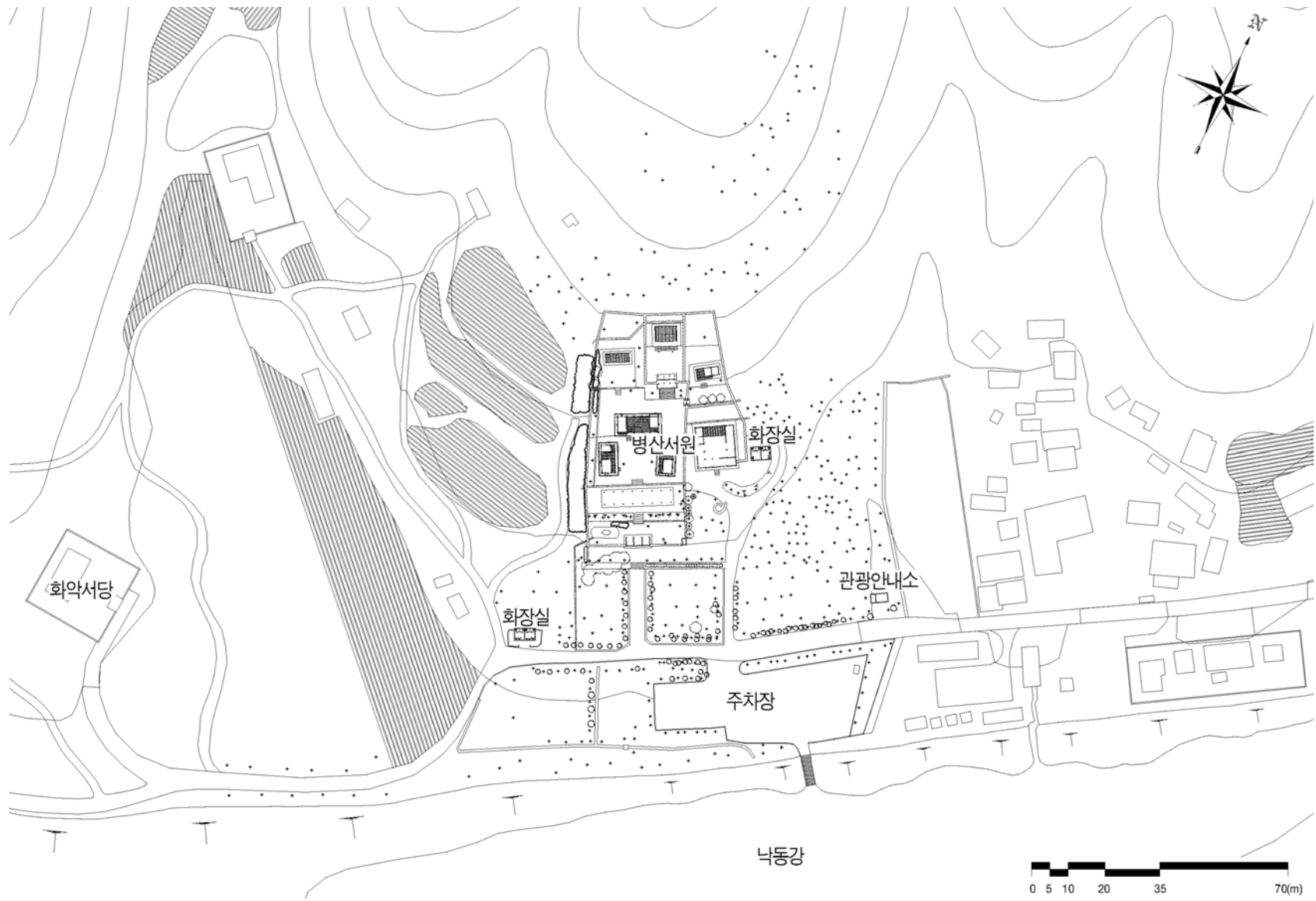
-앞산인 병산이 지나치게 높아 시야가 차단되어 있지만, 병산 아래로 크게 휘도는 낙동강 줄기와 그 앞으로 널찍하게 펼쳐진 백사장이 장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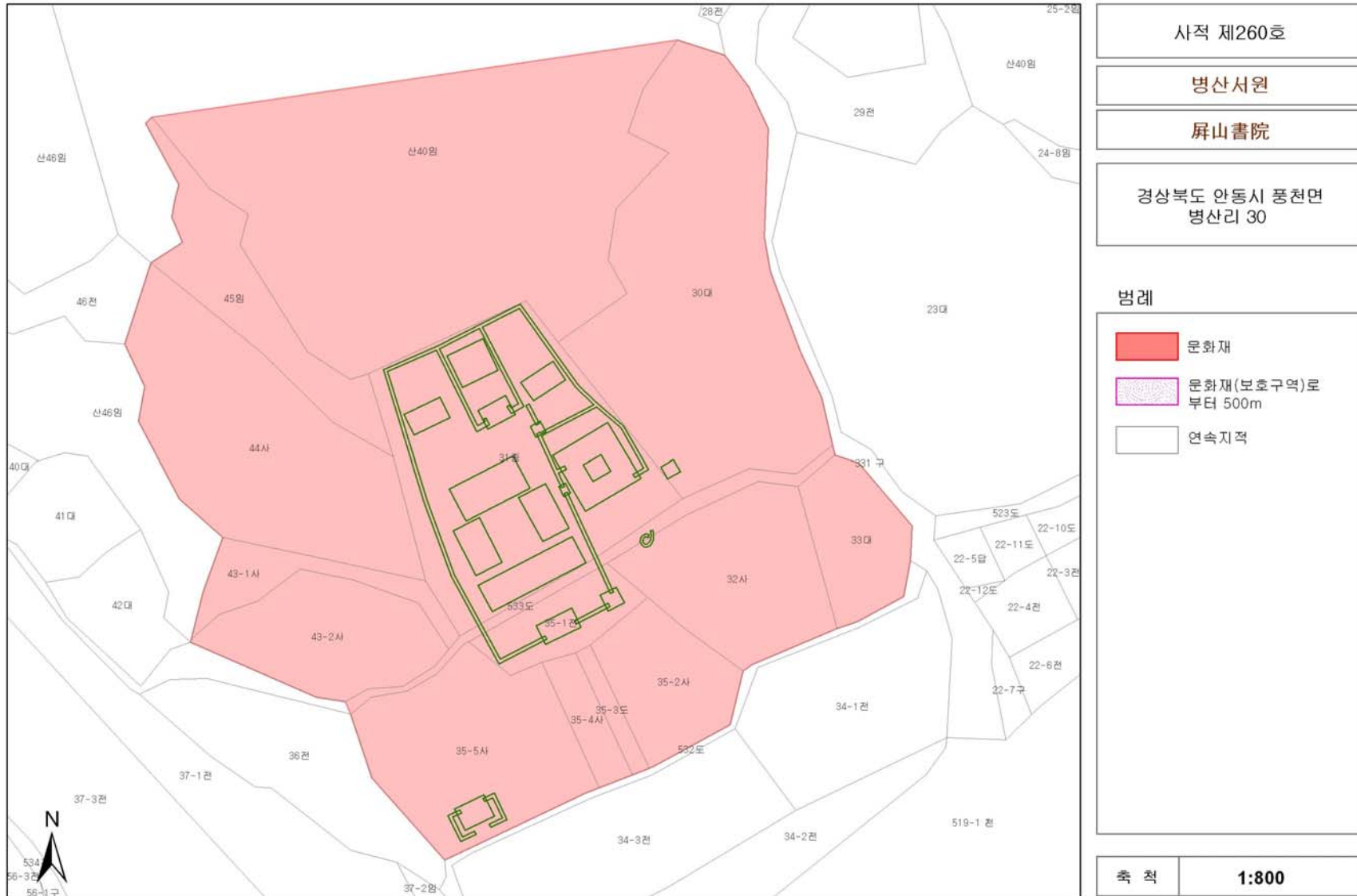
- 건물현황 및 배치형태 : 전학후묘(경사지 배치)
 - 존덕사(사당), 내삼문, 입교당, 동재,서재, 전사청, 장판각, 만대루, 복례문, 고직사, 광영지(연지)
- 관리단체 : 안동시
- 배향인물 : 류성룡, 류진
- 서원내 지정문화재 현황 : 없음
- 서원 소장문서 등 : 유성룡의 문집 등 1,000여 종 3,000여 책 소장
- 고유행사(향사) : 두 제향(류성룡, 류진)을 받드는 제사로 봄, 가을 2회 시행
- 주요 보수정비 추진실적
 - 1971~1979 존덕사 외 10동 보수, 경내 원장 건물 기단 및 계단 보수, 안내관
 - 2001~2007 만대루, 전사청, 사당, 강당, 동서재, 복례문, 장판각, 협문 보수, 주차장조성, 배수로 정비, 조경, 안내관 등 주변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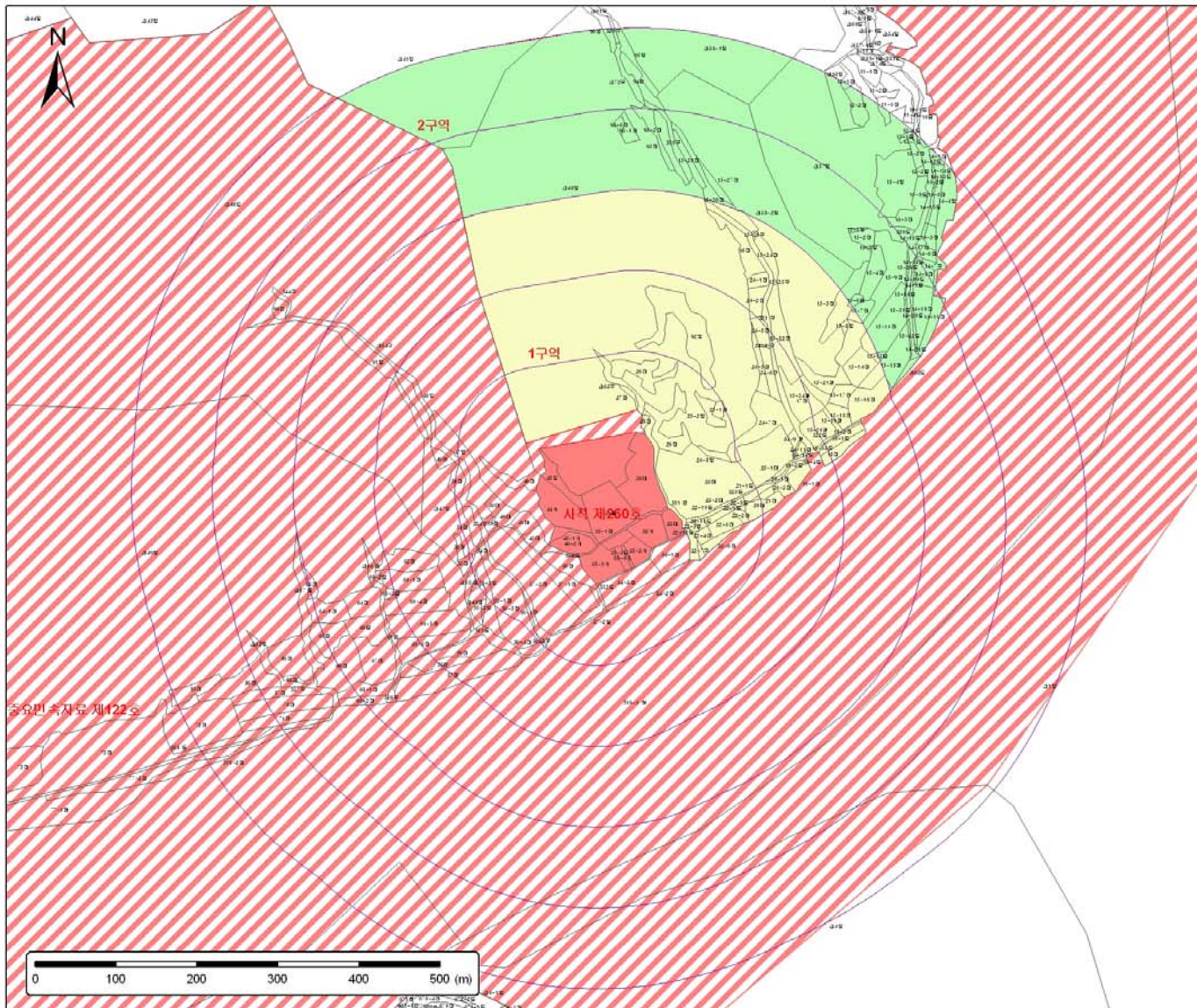
◆ 병산서원 배치도



◆ 병산서원 문화재 지정구역도



◆ 병산서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도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사적 제260호
병산서원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 31 외

범례

- 국가지정 문화재
- 국가지정 문화재/보호구역
- 연속지적
- 100 ~ 500(m)
- [허용기준구역]**
- 1구역
- 2구역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10:3 이상)
1구역	보존구역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규모 범위 내 개·보수 허용)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전통한식지붕에 한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재축 허용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 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 로 한다. 	

■ 함양 남계서원

◆ 문화재 개요

- 지정별 : 사적 제499호 ('09. 5. 26지정)
- 지정면적 : 4,810㎡(지정구역)
- 소재지 : 경남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586-1
- 연혁 및 특징

-조선 명종7년(1552)에 창건

-남계서원은 개암 강익이 조선시대 5현 및 동국 18현 중의 한 분인 일두 정여창을 추모하기 위하여 명종 7년(1552)에 건립, 명종21년(1566)년에 소수서원에 이어 두 번째로 사액을 받은 유서깊은 서원이며, 정유재란때 소실되었으나 광해군 4년(1612)에 옛터인 현재의 자리에 중건하였으며, 1868년과 1871년에 서원 훼손령이 내렸을 적에도 훼손되지 않고 존속하였던 47개 원사(院祠) 가운데 경남지역 유일의 서원이다.



○ 주변현황

-남계서원 우측에 일두 정여창선생과 관포지교한 김일손 선생을 추모하여 세워진 청계서원(문화재자료 제56호)이 있으며 남강의 지류인 위천이 평야를 가로 질러 흐르고 있다.

○ 건물현황 및 배치형태 : 전학후묘(경사지 배치)

-제향공간으로 사당, 동무, 내삼문이 있고 강학공간으로 강당, 동재, 서재, 장관각, 풍영루가 있으며, 동서재 앞에는 방형연지 2개소가 있고 서재 앞에는 신도비와 맞배지붕의 비각이 있으며, 배치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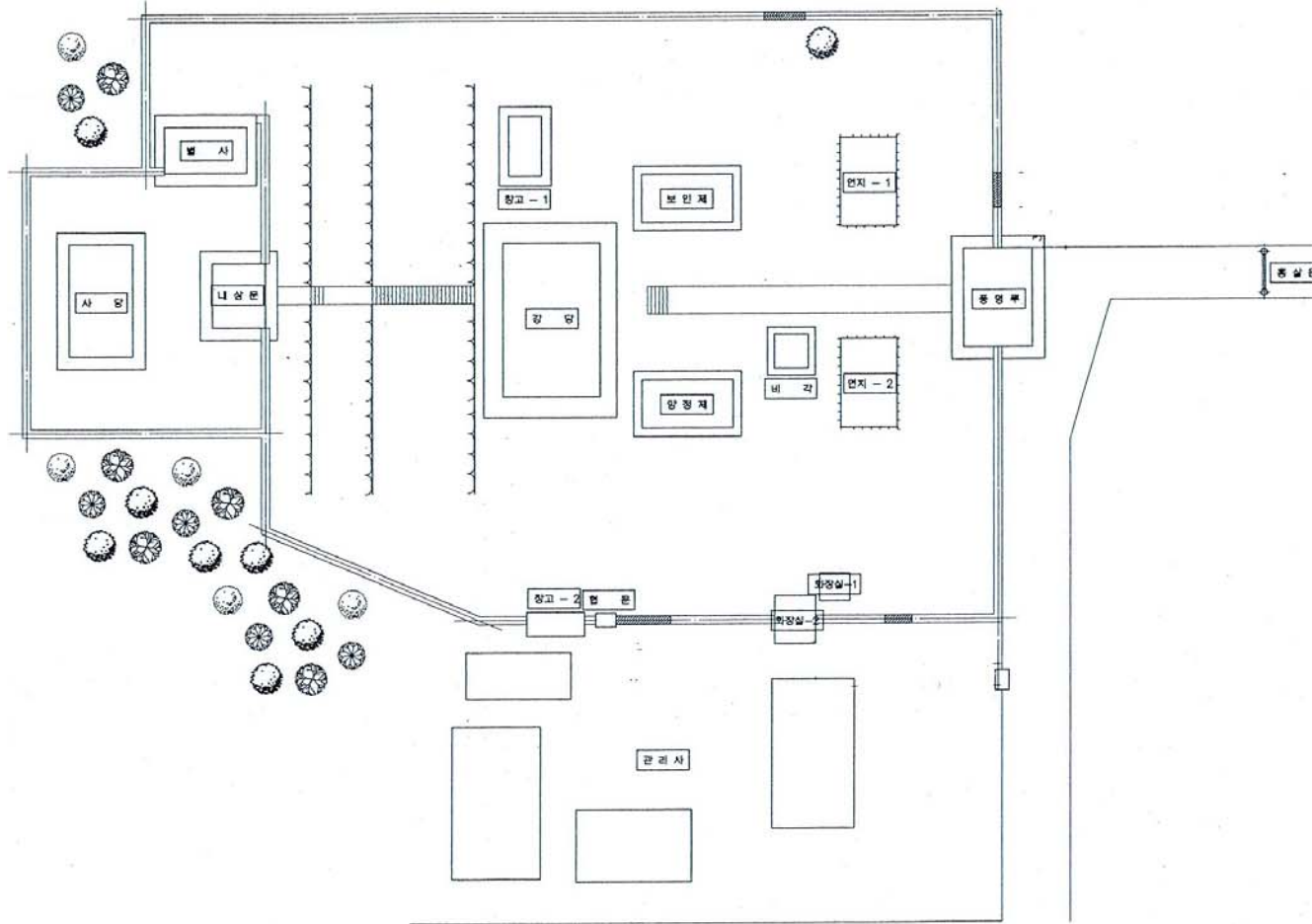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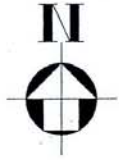
은 전저후고(前低後高) 지형에 전학후묘(前學後廟)의 일축선 배치를 하고 있다. 서원 입구에 홍살문이 있고 그 옆에 하마비 1기가 있다.



- 관리단체 : 함양군
- 배향인물 : 일두 정여창, 개암 강익, 동계 정온
- 서원내 지정문화재 현황 : 일두선생 문집책판(시도유형문화재 제166호), 개암선생 문집책판(시도유형문화재 제167호)
- 서원 소장문서 등 : 왕이 하사한 서적과, 노비, 토지 중 현재까지 『어정오경백편』(御定五經百篇) 5권, 『경서정문』(經書正文) 4권을 비롯하여 다수의 고서들이 온전하게 전수되고 있어 제례양식 등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학술 자료를 다수 소장하고 있음.
- 고유행사(향사) : 제향(정여창)을 받드는 제사로 봄, 가을 2회 시행
- 주요 보수정비 추진실적
-1984~2006 제실 외 11동 보수 및 단청, 홍살문, 안내판, 담장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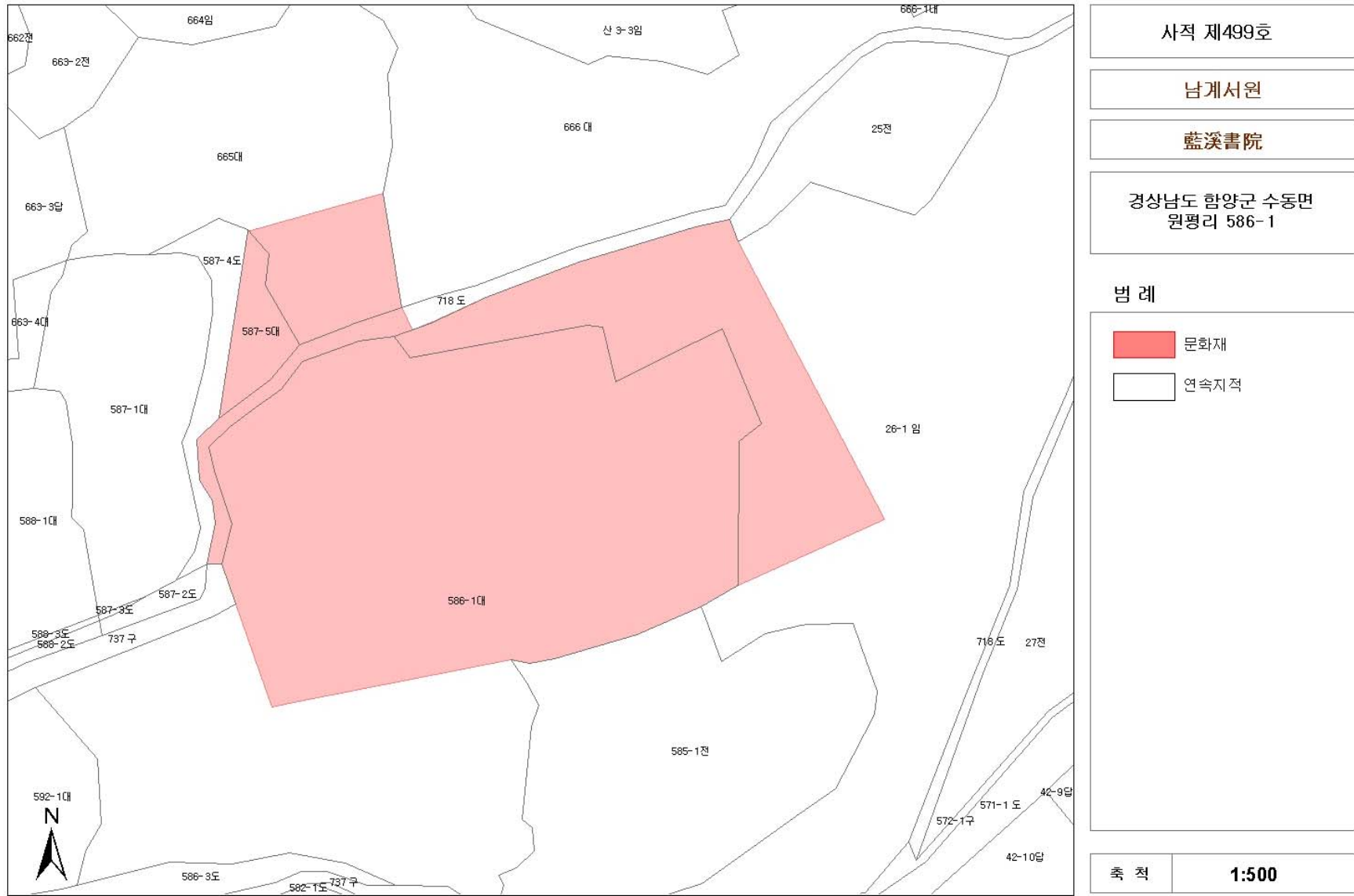
◆ 남계서원 배치도



■ 건물개요

건물명	연계	비고
통영부		기존
연지-1		기존
연지-2		기존
배각		기존
보인재		기존
방정재		기존
관공		기존
장고-1		기존
장고-2		기존
내삼문		기존
별사		기존
사당		기존
관리사		기존
화정실-1		기존
화정실-2		기존
종살문		기존
합문		기존

◆ 남계서원 문화재 지정구역도



2.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서원

시·도	서원명	주소	종별	지정번호
대구	고산서원(孤山書院)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	문자	15
대구	구암서원(龜巖書院)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산79-1	문자	2
대구	이양서원(尼陽書院)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대리 907-3	문자	32
대구	예연서원(禮淵書院)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가대리 539	기념물	11
광주	무양서원(武陽書院)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문자	3
대전	도산서원(道山書院)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220-2	문자	3
울산	석계서원(石溪書院)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석천리	문자	17
경기	기천서원(沂川書院)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이포리 555-5	문자	75
경기	노강서원(鷲江書院)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산146-1	기념물	41
경기	덕봉서원(德峰書院)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덕봉리	유형	8
경기	심곡서원(深谷書院)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상현동 203-2	유형	7
경기	용연서원(龍淵書院)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유형	70
경기	우저서원(牛渚書院)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492	유형	10
경기	운계서원(雲溪書院)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덕촌리 산7	문자	18
경기	자운서원(紫雲書院)	경기도 과천시 법원읍 동문리	기념물	45
경기	충열서원(忠烈書院)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118-4	유형	9
경기	파산서원(坡山書院)	경기도 과천시 파평면 늘노리	문자	10
경기	행주서원(杏洲書院)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의동 162-1	문자	71
경기	화산서원(花山書院)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 산16-1	기념물	46
강원	송담서원(松潭書院)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	유형	44
강원	오봉서원(五峰書院)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오봉리	유형	45
강원	창절서원(彰節書院)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14리	유형	27
충북	상현서원(象賢書院)	충청북도 보은군 외속리면 서원리 304	기념물	43
충북	신항서원(莘巷書院)	충청북도 청주시 용정동 이정골	기념물	42
충북	운곡서원(雲谷書院)	충청북도 상당구 운동동	문자	11
충북	팔봉서원(八峰書院)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팔봉리	기념물	129
충남	금곡서원(金谷書院)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387	문자	78
충남	노강서원(魯岡書院)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오강리	유형	30
충남	동곡서원(東谷書院)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동사리	문자	92
충남	문헌서원(文獻書院)	충청남도 서천군 기산면 영모리	문자	125
충남	반산서원(盤山書院)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만사리	유형	91
충남	성암서원(聖巖書院)	충청남도 서산시 읍내동	문자	205
충남	송곡서원(松谷書院)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애정리 495	문자	207
충남	용강서원(龍江書院)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문자	19
충남	죽림서원(竹林書院)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 101	문자	75
충남	창강서원(滄江書院)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저석3리 73-2	문자	107
충남	충곡서원(忠谷書院)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충곡리	기념물	12
충남	충현서원(忠賢書院)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345	문자	60
충남	칠산서원(七山書院)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칠산2리	문자	102
충남	합호서원(合湖書院)	충청남도 연기군 동면 합강리 105	문자	41
충남	행림서원(杏林書院)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육곡리 349-1	문자	76
충남	화암서원(花巖書院)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장산리 27-1	문자	138
충남	효암서원(孝巖書院)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산노리	문자	87
전북	남고서원(南臯書院)	전라북도 정읍시 북면 보림리	문자	76
전북	도계서원(道溪書院)	전라북도 정읍시 이평면 도계리 464	문자	79
전북	동죽서원(東竹書院)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상학리 13	문자	77
전북	반곡서원(盤谷書院)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문자	11
전북	백산서원(柏山書院)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 현내리	문자	160
전북	백산서원(白山書院)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하서리 379-1	문자	158
전북	분양서원(汾陽書院)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 지성리 733	문자	161

시·도	서원명	주소	종별	지정번호
전북	신안서원(新安書院)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산안금동 777	문자	22
전북	암계서원(鵬溪書院)	전라북도 장수군 산서면 학선리	문자	35
전북	영천서원(寧川書院)	전라북도 임실군 지사면 영천리	문자	20
전북	옥산서원(玉山書院)	전라북도 정읍시 소성면 모촌리	문자	141
전북	용장서원(龍章書院)	전라북도 남원시 주생면 상동리	문자	53
전북	유천서원(楡川書院)	전라북도 남원시 주생면 영천리	문자	52
전북	주암서원(舟巖書院)	전라북도 임실군 지사면 방계리	문자	21
전북	주천서원(朱川書院)	전라북도 진안군 주천면 주양리 139-3	문자	142
전북	창계서원(滄溪書院)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선창리	문자	36
전북	창동서원(滄東書院)	전라북도 정읍시 이평면 창동리	문자	78
전북	창주서원(滄洲書院)	전라북도 남원시 도통동	문자	51
전북	풍계서원(楓溪書院)	전라북도 남원시 대강면 풍산리	문자	54
전북	호암서원(湖巖書院)	전라북도 남원시 덕과면 만도리	문자	55
전북	황강서원(黃岡書院)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295-3	문자	12
전남	강성서원(江城書院)	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문자	70
전남	고산서원(高山書院)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고산리	기념물	63
전남	내산서원(內山書院)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쌍운리	기념물	28
전남	덕양서원(德陽書院)	전라남도 곡성군 옥곡면 덕산리 36	기념물	56
전남	덕양서원(德陽書院)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 668-2	문자	53
전남	미천서원(眉泉書院)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신천리	기념물	29
전남	봉암서원(鳳巖書院)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장안리	기념물	54
전남	설계서원(雪齊書院)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영평리	문자	93
전남	수암서원(秀岩書院)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수양리	기념물	39
전남	연곡서원(淵谷書院)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원도리	기념물	18
전남	옥계서원(玉溪書院)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1097	문자	5
전남	옥천서원(玉川書院)	전라남도 순천시 옥천동 류상	문자	4
전남	용강서원(龍岡書院)	전라남도 순천시 금곡동 356-1	문자	121
전남	죽수서원(竹樹書院)	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모산리	문자	130
전남	해망서원(海望書院)	전라남도 화순군 춘양면 대신리	문자	122
경북	고산서원(高山書院)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기념물	56
경북	고천서원(古川書院)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고천리	기념물	144
경북	구강서원(龜岡書院)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1리	문자	188
경북	구만서원(龜?書院)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화천리	문자	154
경북	금오서원(金烏書院)	경상북도 구미시 전산읍 원1리	기념물	60
경북	금호서원(琴湖書院)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흥선리	문자	308
경북	금호서원(琴湖書院)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	문자	449
경북	낙봉서원(洛峰書院)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낙성리	문자	222
경북	노봉서원(魯峯書院)	경상북도 예천군 호도면 내신리 341	문자	140
경북	덕암서원(德巖書院)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유월리 1291	문자	286
경북	덕양서원(德陽書院)	경상북도 의성군 춘산면 대사리 621	문자	247
경북	도잠서원(道岑書院)	경상북도 영천시 대창면 용호동	문자	100
경북	동강서원(東江書院)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147	기념물	114
경북	묵계서원(默溪書院)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묵계1리	민속자료	19
경북	사보서원(泗寶書院)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226-1	문자	39
경북	삼계서원(三溪書院)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삼계리 152-2	문자	417
경북	서산서원(西山書院)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원리	기념물	43
경북	서악서원(西岳書院)	경상북도 경주시 서악동 615	기념물	19
경북	선암서원(仙巖書院)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신지리 335	유형	79
경북	소양서원(瀟陽書院)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전곡리 769	문자	505
경북	신천서원(新川書院)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왕신리 산8	문자	139
경북	역동서원(易東書院)	경상북도 안동시 송천동 388 안동대 내	기념물	146
경북	오계서원(五溪書院)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천본리 55-1	문자	475

시·도	서원명	주소	종별	지정번호
경북	옥동서원(玉洞書院)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수봉리	기념물	52
경북	용계서원(龍溪書院)	경상북도 영천시 자양면 용산리	유형	55
경북	용산서원(龍山書院)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690	기념물	88
경북	임고서원(臨臯書院)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양항리 494-1	기념물	62
경북	입암서원(立巖書院)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	기념물	70
경북	자계서원(紫溪書院)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서원리 85	유형	83
경북	청성서원(靑城書院)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막곡리 159	문자	33
경북	호계서원(虎溪書院)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유형	35
경북	회연서원(晦淵書院)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신정동	유형	51
경북	흥암서원(興巖書院)	경상북도 상주시 내서면 연원리	기념물	61
경남	갈천서원(葛川書院)	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갈천리	문자	36
경남	광계서원(廣濟書院)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홍지리	문자	223
경남	구계서원(龜溪書院)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산43	문자	40
경남	남계서원(南溪書院)	경상남도 밀양시 청도면 두곡리	문자	229
경남	남악서원(南岳書院)	경상남도 진주시 금곡면 죽곡리	문자	12
경남	대각서원(大覺書院)	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사곡리	문자	344
경남	대포서원(大浦書院)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대포리	문자	198
경남	덕곡서원(德谷書院)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하리	문자	131
경남	덕연서원(德淵書院)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 용정리	문자	67
경남	덕원서원(德源書院)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성태리	문자	138
경남	덕천서원(德川書院)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원리	유형	89
경남	도산서원(道山書院)	경상남도 고성군 구만면 화림리	문자	35
경남	도연서원(道淵書院)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도전리	문자	37
경남	배산서원(培山書院)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 458	문자	51
경남	서계서원(西溪書院)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지리	문자	49
경남	송호서원(松湖書院)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역평리	문자	102
경남	송호서원(松湖書院)	경상남도 함양군 병곡면 송평리	문자	209
경남	수림서원(繡林書院)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화산리	문자	34
경남	영빈서원(溇濱書院)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24	문자	305
경남	예림서원(禮林書院)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후사포리	유형	79
경남	옥계서원(玉溪書院)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술곡리 970	문자	60
경남	옥산서원(玉山書院)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정수리 268	문자	47
경남	옥전서원(玉田書院)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성산리	문자	201
경남	용안서원(龍安書院)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내진리	문자	297
경남	위계서원(葦溪書院)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석마리 543	문자	38
경남	청계서원(淸溪書院)	경상남도 합천군 울곡면 내천리	문자	136
경남	청계서원(靑溪書院)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문자	56
경남	칠탄서원(七灘書院)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미촌리	문자	72
경남	태암서원(泰巖書院)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죽전리	문자	254
경남	표충서원(表忠書院)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유형	52
경남	혜산서원(惠山書院)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다죽리	유형	297

3. 비지정문화재 서원

시·도	서원명	주소
서울	구암서원(龜巖書院)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서울	도봉서원(道峰書院)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부산	안락서원(安樂書院)	부산광역시 동래 안락
대구	구천서원(龜川書院)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	금회서원(琴回書院)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시읍 세천리 169
대구	낙동서원(洛東書院)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1동 880
대구	낙빈서원(洛濱書院)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묘동
대구	녹동서원(鹿洞書院)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우록리
대구	덕산서원(德山書院)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258
대구	독무재서원(獨茂齋書院)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188-1
대구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우록동 1098
대구	백원서원(百源書院)	대구광역시 동구 도동 487
대구	병암서원(屏巖書院)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521
대구	서계서원(西溪書院)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881
대구	소계서원(小溪書院)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기세리 713
대구	송담서원(松潭書院)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2리
대구	송학서원(松鶴書院)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	암곡서원(巖谷書院)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	오천서원(梧川書院)	대구광역시 수성구 과동
대구	용강서원(龍岡書院)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1343-1
대구	용호서원(龍湖書院)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시읍 서재리 693
대구	운양서원(雲陽書院)	대구광역시
대구	인흥서원(仁興書院)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730
대구	청호서원(靑湖書院)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7914
대구	포산서원(苞山書院)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지리
대구	한천서원(寒泉書院)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행정1리 870
대구	화산서원(花山書院)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화산리 898
대구	화암서원(華巖書院)	대구광역시 북구 노곡동 산79-1
광주	운암서원(雲巖書院)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광주	월봉서원(月峯書院)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광주	유애서원(遺愛書院)	광주광역시 광산구 흑석동 260
광주	임계서원(臨溪書院)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울산	구강서원(鷗江書院)	울산광역시 중 반구2동171-1
울산	반구서원(盤龜書院)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울산	용연서원(龍淵書院)	울산광역시 남 신정1동1412-13
울산	원강서원(圓岡書院)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
울산	자암서원(紫巖書院)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통천리
울산	치산서원(?!山書院)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
울산	태화서원(太和書院)	울산광역시 중구 옥교동239-1
울산	학산서원(鶴山書院)	울산광역시 중 옥교동239-2
강원	광암서원(廣巖書院)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경기	대포서원(大浦書院)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대포리 산32
경기	덕양서원(德陽書院)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433
경기	매산서원(梅山書院)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번도리 산321
경기	문봉서원(文峯書院)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경기	문헌서원(文憲書院)	경기도 오산시 내삼머동 753-2
경기	미강서원(眉江書院)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737-2
경기	미원서원(美原書院)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선촌1리 산70
경기	사천서원(沙川書院)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봉암리24
경기	사충서원(四忠書院)	경기도 하남시 상산곡동 100-2
경기	서봉서원(서봉書院)	경기도 여주군 흥천면 하다리
경기	소산서원(蘇山書院)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산12
경기	수곡서원(水谷書院)	경기도 양평군 지제면 수곡631

시·도	서원명	주소
경기	안곡서원(安谷書院)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 586
경기	옥병서원(玉屏書院)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주원리 산210
경기	용강서원(龍江書院)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경기	용주서원(龍洲書院)	경기도 과천시 월릉면 덕은리 291
경기	운봉서원(雲峯書院)	경기도 이천시
경기	임장서원(臨章書院)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동막리
경기	잠곡서원(潛谷書院)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140-17
강원	노동서원(魯東書院)	강원도 홍천군 서면 어유포리
강원	도천서원(陶川書院)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도천마을
강원	동명서원(東溟書院)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강원	산양서원(山陽書院)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축천리
강원	용산서원(龍山書院)	강원도 동해시 채운동 201-1
강원	취병서원(翠屏書院)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건동리 1100-1
강원	치양서원(雉壤書院)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용암리
강원	칠봉서원(七峰書院)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산현리
강원	한천서원(寒泉書院)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충북	검암서원(儉巖書院)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병암리
충북	계담서원(桂潭書院)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이담리
충북	고산서원(孤山書院)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 300-1
충북	구계서원(龜溪書院)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충북	국계서원(菊溪書院)	충청북도 내수읍 비중리
충북	기암서원(機岩書院)	충청북도 남성면 갈산리
충북	금화서원(金華書院)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선곡리 산23-1
충북	덕천서원(德川書院)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노동리
충북	묵정서원(墨井書院)	충청북도 청원군 낭성면 관정리 묵정마을
충북	백록서원(白鹿書院)	충청북도 옥산면 환희리
충북	백원서원(白源書院)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노원리
충북	송계서원(松溪書院)	충청북도 흥덕구 내곡동
충북	송천서원(松泉書院)	충청북도 오창면 양지리
충북	약계서원(約溪書院)	충청북도 청원군 북일면 비중리
충북	옥화서원(玉華書院)	충청북도 미원면 옥화리
충북	우록서원(友鹿書院)	충청북도 현도면 우록리
충북	운곡서원(雲谷書院)	충청북도 음성군 남일면 운동리
충북	죽계서원(竹溪書院)	충청북도 북이면 용계리
충북	지천서원(知川書院)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팔성리
충북	제화서원(?華書院)	충청북도 남일면 신송리
충북	하강서원(荷江書院)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하담리
충북	화암서원(花巖書院)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송동리
충남	간곡서원(良谷書院)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구교리 114
충남	검계서원(儉溪書院)	충청남도 천안시 풍세면 삼태리 1구
충남	고노서원(古老書院)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호계리
충남	낭산서원(朗山書院)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수교1리
충남	덕성서원(德星書院)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방축리 48
충남	도산서원(道山書院)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도산리
충남	독성서원(獨醒書院)	충청남도 아산시
충남	명탄서원(鳴灘書院)	충청남도 공주시 월송동
충남	봉곡서원(鳳谷書院)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고내리
충남	부산서원(浮山書院)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진변리 산3-1
충남	성곡서원(星谷書院)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성곡리
충남	안양서원(安陽書院)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마금리 135
충남	용문서원(龍門書院)	충청남도 공주시 상왕동
충남	유곡서원(柳谷書院)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흑암리 664
충남	창렬서원(彰烈書院)	충청남도 부여군 구룡면 금사리
충남	청풍서원(淸風書院)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불이리
충남	화산서원(華山書院)	충청남도 서천군 기산면 화산리

시·도	서원명	주소
충남	휴정서원(休亭書院)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신평리
전북	계산서원(溪山書院)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 검산리 400
전북	계양서원(繼陽書院)	전라북도 부안군 계화면 계화리 69
전북	고암서원(考巖書院)	전라북도 정읍시 하모동 모촌
전북	관곡서원(館谷書院)	전라북도 임실군 지사면 관기리 207
전북	구산서원(龜山書院)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강정리 628
전북	구암서원(龜巖書院)	전라북도 김제시 용지면 구암리
전북	구양서원(臼陽書院)	전라북도 정읍시 영월면 은서리 100
전북	구호서원(龜湖書院)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구미리0
전북	남산서원(南山書院)	전라북도 김제시 성덕면 묘라리 440-1
전북	남산서원(南山書院)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가남리
전북	노양서원(魯陽書院)	전라북도 정주시 흑암동 215-1
전북	대승서원(大勝書院)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대승리
전북	덕암서원(德巖書院)	전라북도 임실군 지사면 원산리
전북	덕천서원(德川書院)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450-1
전북	도산서원(道山書院)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사전리 711
전북	도암서원(道岩書院)	전라북도 고창군 공음면 칠암리 갑촌 819
전북	도암서원(道巖書院)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송천리
전북	동산서원(銅山書院)	전라북도 익산시 동산동
전북	두곡서원(杜谷書院)	전라북도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명동마을
전북	두암서원(斗巖書院)	전라북도 정읍시 소성면 애당리 두암
전북	만화서원(萬化書院)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 무림리
전북	매계서원(梅溪書院)	전라북도 남원시 사매면 오리정
전북	무양서원(武陽書院)	전라북도 순창군 입덕면 용산리
전북	무제서원(武弟書院)	전라북도 순창군 팔덕면 청계리
전북	문창서원(文昌書院)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상평리 626
전북	반곡서원(泮谷書院)	전라북도 완주군 비봉면 수전리
전북	백산서원(柏山書院)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동
전북	백석서원(白石書院)	전라북도 김제시 갈공동
전북	백현서원(栢峴書院)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삼기리
전북	벽성서원(碧城書院)	전라북도 김제시 교동 35
전북	벽제서원(碧堤書院)	전라북도 김제시 입석동 남산마을
전북	보광서원(보광書院)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평촌리
전북	보영서원(保寧書院)	전라북도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전북	봉강서원(鳳岡書院)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구만리 529
전북	봉양서원(鳳陽書院)	전라북도 완주군 비봉면 내월리 464
전북	사동서원(社洞書院)	전라북도 장수군 산서면 사상리
전북	사산서원(土山書院)	전라북도 부안군 주산면 사산리 산59
전북	산양서원(山仰書院)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아산리
전북	삼계서원(三賢書院)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주천리
전북	삼현서원(三賢書院)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하정리
전북	숭모서원(崇慕書院)	전라북도 부안군 보안면 상림리
전북	승방서원(承芳書院)	전라북도 김제시 홍사동
전북	염의서원(廉義書院)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723
전북	영계서원(靈溪書院)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강정리
전북	영산서원(靈山書院)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강정리
전북	예산서원(禮山書院)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삼상리 산14-5
전북	오강서원(五岡書院)	전라북도 익산시 석암동
전북	옥산서원(玉山書院)	전라북도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전북	옥산서원(玉山書院)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상평리 510-9
전북	옥산서원(玉山書院)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전북	완산서원(完山書院)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전북	용강서원(龍岡書院)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조촌동(원동) 회룡마을
전북	용계서원(龍溪書院)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전북	용암서원(龍岩書院)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춘송리

시·도	서원명	주소
전북	용암서원(龍巖書院)	전라북도 김제시 교동
전북	용호서원(龍湖書院)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호경리
전북	운곡서원(雲谷書院)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운곡리
전북	월강서원(月崗書院)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월강리
전북	월암서원(月巖書院)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월암리
전북	유천서원(柳川書院)	전라북도 부안군 보안면 영천리 216
전북	육송사서원(六松祠書院)	전라북도 김제시 금사면 삼봉리 거야마을
전북	울산서원(栗山書院)	전라북도 김제시 명덕동
전북	이산서원(尼山書院)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성두리
전북	저산서원(楮山書院)	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회용리 24
전북	정충서원(旌忠書院)	전라북도 남원시 주생면 정송리
전북	죽계서원(竹溪書院)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1
전북	지계서원(芝溪書院)	전라북도 순창군 적성면 지북리
전북	지음서원(芝陰書院)	전라북도 김제시 하동
전북	천곡서원(泉谷書院)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종리 968
전북	청곡서원(靑谷書院)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석교리
전북	청하서원(淸河書院)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전북	채산서원(萃山書院)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화읍리 화산
전북	치동서원(淄東書院)	전라북도 옥구읍 오곡리 168
전북	학당서원(學堂書院)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상정리 183
전북	학천서원(鶴川書院)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상학마을
전북	현주서원(玄洲書院)	전라북도 임실군 지사면 계산리
전북	호산서원(湖山書院)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전북	화강서원(華岡書院)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주곡리
전북	화동서원(華東書院)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매산리 교동
전북	화동서원(華東書院)	전라북도 김제시 장화동
전북	화산서원(華山書院)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전북	화산서원(華山書院)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신용리
전북	화산서원(華山書院)	전라북도 진안군 안천면 백화리 906
전북	화암서원(華巖書院)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전북	효충서원(孝忠書院)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정월리 561
전북	효충서원(效忠書院)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청호리 473
전남	가산서원(佳山書院)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흥정리
전남	강덕서원(康德書院)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시목리
전남	겸천서원(謙川書院)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죽림리 401
전남	경현서원(景賢書院)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영평리
전남	계송서원(桂松書院)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계송리
전남	곡수서원(曲水書院)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산355
전남	구암서원(龜巖書院)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세월리 130
전남	남강서원(南康書院)	전라남도 강진구 강진읍 교촌리
전남	녹동서원(鹿洞書院)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교동리
전남	대계서원(大溪書院)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우산리
전남	덕계서원(德溪書院)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464
전남	덕산서원(德山書院)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덕산리
전남	도동서원(道東書院)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466
전남	도원서원(道源書院)	전라남도 화순군 동북면 연월리
전남	둔덕서원(屯德書院)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덕서리
전남	명곡서원(明谷書院)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신기리
전남	무령서원(武靈書院)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월평리
전남	묘장서원(敝長書院)	전라남도 영광군 묘량면 운당리
전남	미강서원(美岡書院)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1318
전남	미산서원(眉山書院)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해리 577-7
전남	박산서원(博山書院)	전라남도 강진군 작천면 박산리
전남	방산서원(方山書院)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이평리
전남	방춘서원(芳春書院)	전라남도 해남군 계낙면 방춘리

시·도	서원명	주소
전남	병산서원(炳山書院)	전라남도 무안군
전남	백록서원(白鹿書院)	전라남도 화순군 남면 대곡리
전남	보촌서원(甫村書院)	전라남도 영광군 군남면 동간리
전남	봉산서원(蓬山書院)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서산리
전남	송천서원(松川書院)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동송리
전남	영귀서원(詠歸書院)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현정리 391
전남	예양서원(汭陽書院)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예양리 83-1
전남	용산서원(龍山書院)	전라남도 보성군 미력면 덕림리
전남	월정서원(月井書院)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금안리
전남	위봉서원(胃峰書院)	전라남도 강진군 읍천면 영산리 568
전남	울봉서원(栗峯書院)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우산리
전남	이천서원(伊川書院)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동백
전남	이흥서원(이흥書院)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학정리
전남	자산서원(紫山書院)	전라남도 함평군 입다면 제리
전남	장연서원(長淵書院)	전라남도 나주군 남평읍 풍림리 720
전남	제동서원(齋洞書院)	전라남도 고흥군 대서면 화산리
전남	죽림서원(竹林書院)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부동
전남	죽정서원(竹亭書院)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서구림리
전남	지곡서원(芝谷書院)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다지리
전남	창계서원(滄溪書院)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가운리
전남	충경서원(忠敬書院)	전라남도 나주시 삼영동 250
전남	칠송서원(七松書院)	전라남도 화순군 춘양면 회송리 37
전남	해촌서원(海村書院)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해리
전남	호암서원(虎岩書院)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옥곡리
경북	경광서원(鏡光書院)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금계리
경북	고산서원(孤山書院)	경상북도 울진군 행곡4리
경북	곤산서원(崑山書院)	경상북도
경북	관란서원(觀瀾書院)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미산리 863
경북	광남서원(廣南書院)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성동3리
경북	구계서원(龜溪書院)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화천리
경북	구계서원(龜溪書院)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민속원내
경북	구계서원(龜溪書院)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노좌리
경북	구봉서원(九峯書院)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원구리
경북	구산서원(龜山書院)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2리
경북	구암서원(龜巖書院)	경상북도 북구 산격1동 산79-1
경북	구양서원(龜陽書院)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거촌리 구동
경북	구천서원(龜川書院)	경상북도 영천시 신영면 치산2리
경북	근성서원(芹城書院)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조탑동
경북	근암서원(近?書院)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서중리 191
경북	금곡서원(金谷書院)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동
경북	금산서원(琴山書院)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금곡리 390
경북	금산서원(錦山書院)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귀미리
경북	기천서원(箕川書院)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월오리 246
경북	나곡서원(螺谷書院)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경북	낙암서원(洛巖書院)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죽암리
경북	남강서원(南岡書院)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 남산동 525
경북	남계서원(南溪書院)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봉한리
경북	남계서원(南溪書院)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대북2리
경북	남곡서원(南谷書院)	경상북도 군위군 우보면 미성리 1053
경북	남천서원(南川書院)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덕천리 231-1
경북	노강서원(老江書院)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 94
경북	노계서원(魯溪書院)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노좌리 223
경북	노동서원(魯東書院)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황보리
경북	단구서원(丹邱書院)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단구2리 1068
경북	단구서원(丹邱書院)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분토리 457

시·도	서원명	주소
경북	대천서원(大川書院)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대천리
경북	덕강서원(德崗書院)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화산리
경북	덕림서원(德林書院)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임중1리
경북	덕림서원(德林書院)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초곡동
경북	덕산서원(德山書院)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상석리 143
경북	도계서원(道溪書院)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도촌리
경북	도계서원(道溪書院)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도촌리
경북	도계서원(道溪書院)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도천리
경북	도남서원(道南書院)	경상북도 상주시 도남동
경북	도암서원(道巖書院)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옥산동
경북	도연서원(道淵書院)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용계동
경북	도정서원(道正書院)	경상북도 예천군 호도면 황지리 447
경북	동낙서원(東洛書院)	경상북도 구미시 입수동 373-4
경북	동명서원(東溟書院)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동양리
경북	동산서원(東山書院)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경북	량천서원(良川書院)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외량2리
경북	류암서원(流巖書院)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주하리 266
경북	매림서원(梅林書院)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송림리
경북	명계서원(明溪書院)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경북	명곡서원(明谷書院)	경상북도 의성군 가읍면 양지리 447
경북	명호서원(明湖書院)	경상북도 안동시 강남동
경북	몽천서원(蒙泉書院)	경상북도 울진군 원남면 금매리
경북	무원서원(武原書院)	경상북도 영천시 신영면 왕산리 산1
경북	문계서원(文溪書院)	경상북도 봉화군 상운면 문촌리
경북	문계서원(汶谷書院)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월곡1동
경북	문산서원(文山書院)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동양리
경북	문암서원(文巖書院)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창평리
경북	문양서원(文陽書院)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창평리
경북	문양서원(文陽書院)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1520
경북	반계서원(磐溪書院)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장기리 925
경북	방산서원(方山書院)	경상북도 영주시 하망1동
경북	백곡서원(柏谷書院)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곡리 481
경북	백산서원(白山書院)	경상북도 영주시 단산면 사천리
경북	벽계서원(碧溪書院)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장기리
경북	병암서원(屏巖書院)	경상북도 청송군 부남면 홍원리
경북	봉강서원(鳳岡書院)	경상북도 군위군 소보면 달산리
경북	봉강서원(鳳岡書院)	경상북도 상주시 신봉동
경북	봉덕서원(奉德書院)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방산리
경북	봉산서원(鳳山書院)	경상북도 상주시 화서면 금산리
경북	봉암서원(鳳巖書院)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매곡리 559
경북	봉양서원(鳳陽書院)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봉기리
경북	봉양서원(鳳陽書院)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봉산리
경북	북산서원(北山書院)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대북1리
경북	분강서원(汾江書院)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운곡리
경북	사양서원(泗陽書院)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중평리
경북	사양서원(泗陽書院)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신리
경북	삼명서원(三明書院)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마현리
경북	서산서원(西山書院)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산서리 455
경북	석강서원(石岡書院)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흑석리 380-1
경북	섬계서원(剡溪書院)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조용리
경북	소천서원(蘇川書院)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무지리
경북	속수서원(涑水書院)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속암리
경북	송곡서원(松谷書院)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애련리
경북	송록서원(松麓書院)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송내
경북	송천서원(松川書院)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송내

시·도	서원명	주소
경북	송학서원(松鶴書院)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장전리
경북	송호서원(松湖書院)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외량1리
경북	수성서원(首城書院)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공당3리 726
경북	신계서원(新溪書院)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호월 2리
경북	아산서원(鵝山書院)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명도2리
경북	안산서원(安山書院)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방산리 720
경북	양산서원(陽山書院)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남산리
경북	여남서원(汝南書院)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동부동
경북	연계서원(蓮溪書院)	경상북도 영천시 신영면 연정1리 190
경북	연악서원(淵岳書院)	경상북도 상주시 지천동
경북	영계서원(永溪書院)	경상북도 의성군 촌산면 빙계리 산73-1
경북	오계서원(汚溪書院)	경상북도 안동시 녹전면 원천리 911
경북	오천서원(梧川書院)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오록리
경북	오천서원(烏川書院)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동리
경북	옥계서원(玉溪書院)	경상북도 구미시 인의동 575
경북	옥계서원(玉溪書院)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고목리
경북	옥성서원(玉城書院)	경상북도 상주시 외남면 신상리
경북	옥천서원(玉川書院)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덕맥 산158-3
경북	옥천서원(玉川書院)	경상북도 성주군 용암면 대방동
경북	옥천서원(玉川書院)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덕포리
경북	완담서원(澗潭書院)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마산리 629-2
경북	요강서원(要崗書院)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 삼평2리 546-1
경북	용강서원(龍岡書院)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산 63-1
경북	용강서원(龍岡書院)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학산1리
경북	용계서원(龍溪書院)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원당리 243
경북	용계서원(龍溪書院)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산야리 1186
경북	오계서원(汚溪書院)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천본리
경북	우곡서원(愚谷書院)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업리 1132
경북	옥양서원(郁陽書院)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옥금동
경북	운곡서원(雲谷書院)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 310
경북	운계서원(雲溪書院)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거무역동
경북	운암서원(雲巖書院)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
경북	운양서원(雲陽書院)	경상북도 성진군 벽진면 운정리
경북	원계서원(遠溪書院)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계전리
경북	월계서원(月溪書院)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고성리
경북	유암서원(流巖書院)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주하동
경북	율리서원(栗里書院)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경북	율산서원(栗山書院)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시문리 221
경북	이산서원(伊山書院)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내림리
경북	인계서원(仁溪書院)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현동리
경북	임천서원(臨川書院)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740
경북	임호서원(林湖書院)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임당1리 773
경북	임호서원(臨湖書院)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은호1리
경북	임호서원(臨湖書院)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신흥리
경북	임호서원(臨鎬書院)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경북	자동서원(紫東書院)	경상북도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경북	장대서원(藏待書院)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장대리 산38
경북	장산서원(章山書院)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경북	제동서원(濟東書院)	경상북도 군위군 효령면 장군리
경북	조곡서원(早谷書院)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조곡리 3494
경북	중앙서원(中陽書院)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중산리 184-2
경북	지산서원(芝山書院)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신촌리
경북	직천서원(稷川書院)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대동리 345
경북	차산서원(車山書院)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신촌리
경북	창대서원(昌臺書院)	경상북도 영천시 과전동 10

시·도	서원명	주소
경북	창열서원(彰烈書院)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교리 267
경북	청암서원(淸巖書院)	경상북도 상주시 공검면 예주리
경북	타양서원(?陽書院)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조탑동
경북	학남서원(鶴南書院)	경상북도 청도군 각남면 일곡동
경북	학삼서원(鶴三書院)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학곡리 418
경북	행계서원(杏溪書院)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수식리 720-2
경북	현암서원(賢巖書院)	경상북도 구미시 황상동 446-4
경북	화계서원(華溪書院)	경상북도 군위군 의흥면 금양리
경북	화산서원(禾山書院)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하화1리 350
경북	화천서원(花川書院)	경상북도 안동시 광덕1리 18
경북	황강서원(皇岡書院)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갈지리 763
경북	회계서원(晦溪書院)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구호리
경북	횡계서원(橫溪書院)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횡계리
경북	효곡서원(孝谷書院)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용신리
경남	가호서원(佳湖書院)	경상남도 진주시 귀곡동
경남	경백서원(景白書院)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온정리
경남	경산서원(景山書院)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송산리
경남	경현서원(景顯書院)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당동리
경남	관산서원(冠山書院)	경상남도 창녕군 고암면 우천리 월미
경남	광천서원(廣川書院)	경상남도 밀양시 전사포리
경남	구니서원(求尼書院)	경상남도 창원군 고암면 칠월동
경남	구산서원(龜山書院)	경상남도 합천군 가회면 구평리
경남	구암서원(龜巖書院)	경상남도 마산시 회원구 구암동 284-19
경남	구연서원(龜淵書院)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769
경남	구천서원(龜川書院)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동
경남	구천서원(龜川書院)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우명리
경남	국산서원(菊山書院)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외곡리
경남	금릉서원(金陵書院)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본촌리
경남	기강서원(岐江書院)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유곡리
경남	기동서원(基洞書院)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기리 444
경남	낙산서원(洛山書院)	경상남도 의령군 부림면 경산리
경남	남강서원(南岡書院)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소포동
경남	노봉서원(魯峰書院)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가산리
경남	대덕서원(大德書院)	경남 함양군 안의면 당본리 5-26
경남	대동서원(大東書院)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창동 812-16
경남	덕남서원(德南書院)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신호리
경남	덕연서원(德淵書院)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연상리 상당동
경남	덕천서원(德泉書院)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919
경남	도곡서원(道谷書院)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
경남	도남서원(道南書院)	경상남도 창원시 동읍 곡림리 457
경남	도봉서원(道峰書院)	경상남도 창원시 동읍 석산리 443
경남	도양서원(道陽書院)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평지리 물산
경남	도천서원(道川書院)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신안리 74-1
경남	두곡서원(斗谷書院)	경상남도 마산시 회성동 두곡리
경남	물계서원(勿溪書院)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왕산리
경남	미양서원(薇陽書院)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용덕리
경남	미연서원(峴淵書院)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중촌리
경남	반계서원(盤溪書院)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봉산리 입내 423
경남	반곡서원(盤谷書院)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동상리 365
경남	봉남서원(鳳南書院)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경남	봉산서원(鳳山書院)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삼덕리
경남	봉산서원(鳳山書院)	경상남도 산청군 생비량면 도전
경남	삼강서원(三江書院)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리
경남	상봉서원(祥鳳書院)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 유원리
경남	서산서원(西山書院)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원북리 537-2

시·도	서원명	주소
경남	서산서원(西山書院)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서산리 842
경남	성천서원(星川書院)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월계리
경남	소계서원(蘇溪書院)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 331
경남	소로서원(小魯書院)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
경남	송담서원(松潭書院)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신안리
경남	송담서원(松潭書院)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707-18
경남	송원서원(松原書院)	경상남도 합천군 창덕면 하회리
경남	신계서원(新溪書院)	경상남도 의령군 부림면 감압리
경남	신계서원(新溪書院)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문대리 726
경남	신남서원(莘南書院)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정곡리 75
경남	신산서원(新山書院)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주동리
경남	신암서원(新巖書院)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신읍리
경남	어강서원(漁江書院)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정동리
경남	영승서원(迎勝書院)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 1223-2
경남	예동서원(禮東書院)	경상남도 의령군 유곡면 마장리
경남	예암서원(禮巖書院)	경상남도 김해시 안동
경남	오봉서원(五峰書院)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오방리
경남	오예서원(梧禮書院)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오예
경남	옥동서원(玉東書院)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북방리 571-1
경남	완계서원(浣溪書院)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단계리
경남	용산서원(龍山書院)	경상남도 밀양시 가곡4동 1740
경남	용연서원(龍淵書院)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손목리
경남	용원서원(龍源書院)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원천리
경남	용천서원(龍泉書院)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죽동마을
경남	우계서원(愚溪書院)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전리 서원동
경남	운강서원(雲岡書院)	경상남도 진주시 금곡면 가봉리
경남	운암서원(雲巖書院)	경상남도 창원시 사하동 303
경남	의산서원(宜山書院)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중동
경남	인천서원(仁川書院)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서황리 954
경남	임천서원(臨川書院)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가방리
경남	저산서원(楮山書院)	경상남도 창원시 대산면 유동리 422
경남	정강서원(鼎岡書院)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옥산리 정동
경남	정산서원(井山書院)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보산리
경남	종천서원(宗川書院)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안계리 776
경남	중동서원(中洞書院)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정대동
경남	증산서원(甞山書院)	경상남도 마산시 내서면 원계리
경남	첨두서원(瞻斗書院)	경상남도 마산시 내서읍 삼계리
경남	청계서원(淸溪書院)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천계리
경남	청곡서원(淸谷書院)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청현리
경남	태양서원(泰陽書院)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영동리
경남	평천서원(平川書院)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평촌리
경남	학림서원(鶴林書院)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대정리
경남	홍포서원(鴻浦書院)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경남	화산서원(華山書院)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내동
경남	화산서원(華山書院)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산 76
경남	회원서원(檜原書院)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교방동
경남	효산서원(孝山書院)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철수273-1

4. 미철서원(47개) 일람표

서원명(書院名)	지정별	주향인(主享人)	소재지(所在地)	건립연대	사액연대
금오서원(金烏書院)	시도기념물60	충절공 길 재(忠節公 吉 再)	경북 선산(善山)	1570(선조 3)	1566(명종21)
남계서원(藍溪書院)	사적499	문헌공 정여창(文獻公 鄭汝昌)	경남 함양(咸陽)	1552(영종 7)	1575(선조 8)
노강서원(鷺江書院)	시도기념물41	문열공 박태보(文烈公 朴太輔)	경기의정부(議政府)	1695(숙종21)	1697(숙종23)
노강서원(魯岡書院)	시도유형30	문정공 윤 황(文正公 尹 煌)	충남 논산(論山)	1687(숙종13)	1742(영조18)
노덕서원(老德書院)	-	문충공 이항복(文忠公 李恒福)	함남 북청(北靑)	1627(인조 3)	1687(숙종13)
덕봉서원(德峰書院)	시도유형8	문정공 오두인(文貞公 吳斗寅)	경기 안성(安城)	1695(숙종21)	1700(숙종26)
도동서원(道東書院)	사적488	문경공 김굉필(文敬公 金宏弼)	대구 달성(達城)	1605(선조38)	1607(선조40)
도산서원(陶山書院)	사적170	문순공 이 황(文純公 李 滉)	경북 안동(安東)	1574(선조 7)	1575(선조 8)
돈암서원(豚巖書院)	사적383	문원공 김장생(文元公 金長生)	충남 논산(論山)	1634(인조12)	1660(현종 1)
무성서원(武城書院)	사적166	문창후 최치원(文昌侯 崔致遠)	전북 정읍(井邑)	1615(광해 7)	1696(숙종22)
문회서원(文會書院)	-	문성공 이 이(文成公 李 珥)	황해 연백(延白)	1599(선조27)	1628(인조 6)
병산서원(屏山書院)	사적260	문충공 류성룡(文忠公 柳成龍)	경북 안동(安東)	1613(광해 5)	1863(철종14)
봉양서원(鳳陽書院)	-	문순공 박세채(文純公 朴世采)	황해 은율(殷栗)	1695(숙종21)	1696(숙종22)
사충서원(四忠書院)	-	충헌공 김창집(忠獻公 金昌集)	경기 하남(하남)	1725(영조 1)	1726(영조 2)
서악서원(西岳書院)	시도기념물19	홍유후 설 충(弘儒侯 薛 聰)	경북 경주(慶州)	1561(명종16)	1623(인조 1)
소수서원(紹修書院)	사적55	문성공 안 향(文成公 安 昉)	경북 영주(榮州)	1543(중종38)	1550(명종 5)
송양서원(崧陽書院)	-	문충공 정몽주(文忠公 鄭夢周)	경기 개성(開城)	1573(선조 6)	1575(선조 8)
심곡서원(深谷書院)	-	문정공 조광조(文正公 趙光祖)	경기 개성(開城)	1650(효종 1)	1650(효종 1)
옥동서원(玉洞書院)	시도기념물52	익성공 황 희(翼成公 黃 喜)	경북 상주(尙州)	1714(숙종40)	1789(정조13)
옥산서원(玉山書院)	사적154	문원공 이연적(文元公 李彦迪)	경북 경주(慶州)	1573(선조 6)	1574(선조 7)
용연서원(龍淵書院)	시도유형70	문익공 이덕형(文翼公 李德馨)	경기 포천(抱川)	1691(숙종17)	1752(영조28)
우저서원(牛渚書院)	시도유형10	문열공 조 헌(文烈公 趙 憲)	경기 김포(金浦)	1648(명종 3)	1675(숙종 1)
창절서원(彰節書院)	시도유형27	충정공 박팽년(忠正公 朴彭年)	강원 영월(寧越)	1685(숙종11)	1699(숙종25)
충렬서원(忠烈書院)	-	충렬공 홍명구(忠烈公 洪命耆)	강원 김화(金化)	1650(효종 1)	1652(효종 3)
파산서원(坡山書院)	문화재자료10	문간공 성 혼(文簡公 成 渾)	경기 파주(坡州)	1568(선조 1)	1650(효종 1)
필암서원(筆巖書院)	사적242	문정공 김인후(文正公 金麟厚)	전남 장성(長城)	1590(선조23)	1662(현종 3)
흥암서원(興巖書院)	시도기념물61	문정공 송준길(文正公 宋浚吉)	경북 상주(尙州)	1702(숙종28)	1705(숙종31)
강한사(江漢祠)	-	문정공 송시열(文正公 宋時烈)	경기 여주(驪州)	1785(정조 9)	1785(영조 9)
기공사(紀功祠)	-	장렬공 권 율(莊烈公 權 慄)	경기 고양(高陽)	1841(현종 7)	1841(현종 7)
무열사(武烈祠)	-	상 서 석 성(尙 書 石 星)	평남 평양(平壤)	1603(선조36)	1709(숙종35)
삼충사(三忠祠)	-	무향후 제갈량(武鄉侯 諸葛亮)	평남 영유(永柔)	?	?
수충사(酬忠祠)	-	서산대사 휴정(西山大師 休靜)	평북 영변(寧邊)	?	?
창렬사(彰烈祠)	-	문열공 김천일(文烈公 金千鎰)	경남 진주(晉州)	1595(선조28)	1607(선조40)
창렬사(彰烈祠)	-	문정공 윤 집(文貞公 尹 集)	충남 부여(夫餘)	1717(숙종43)	1721(경종 1)
충렬사(忠烈祠)	-	문충공 김상용(文忠公 金常容)	인천 강화(江華)	1642(인조20)	1658(효종 9)
충렬사(忠烈祠)	-	충렬공 송상현(忠烈公 宋象賢)	부산 동래(東萊)	1606(선조38)	1624(인조 2)
충렬사(忠烈祠)	-	충무공 이순신(忠武公 李舜臣)	경남 통영(統營)	1614(광해 6)	1723(경종 3)
충렬사(忠烈祠)	-	충민공 임경업(忠愍公 林慶業)	충북 충주(忠州)	1697(숙종23)	1727(영조 3)
충민사(忠敏祠)	-	충장공 남이흥(忠莊公 南以興)	평남 안주(安州)	1681(숙종7)	1682(숙종 8)
태사사(太師祠)	-	장절공 신승겸(壯節公 申崇謙)	황해 평산(平山)	고 려(高 麗)	조선정조
포충사(褒忠祠)	-	충렬공 고경명(忠烈公 高敬命)	전남 광주(光州)	1601(선조34)	1603(선조36)
포충사(褒忠祠)	-	충강공 이술원(忠武公 李述原)	강원 철원(鐵原)	1665(현종6)	1668(현종 9)
포충사(褒忠祠)	-	충무공 김응하(忠武公 金應河)	경남 거창(居昌)	1738(영조14)	1738(영조14)
표절사(表節祠)	-	충렬공 정 시(忠烈公 鄭 蓍)	평북 정주(定州)	?	?
표충사(表忠祠)	-	충민공 이봉상(忠愍公 李鳳詳)	충북 청주(淸州)	1731(영조 7)	1736(영조12)
현절사(賢節祠)	-	문정공 김상헌(文正公 金常憲)	경기 광주(廣州)	1688(숙종14)	1693(숙종19)
청성묘(淸聖廟)	-	청혜후 백 이(淸惠侯 伯 夷)	황해 해주(海州)	1691(숙종17)	1701(숙종27)